

2018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2018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

예산안분석시리즈 I

2018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

【 기획재정위원회 】

2017. 10.

이 보고서는 「국회법」 제22조의2 및 「국회에산정책처법」 제3조에 따라 국회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국회예산정책처 「보고서발간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발간되었습니다.

발 간 사



정부는 소득주도 성장과 일자리 창출, 그리고 혁신성장 동력 확충 등 사람중심 지속 성장 경제를 구현하기 위하여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하다고 보고, 전년도 본예산보다 28.4조원(7.1%) 증가한 총지출 429.0조원 규모의 예산안을 편성하여 국회에 제출하였습니다.

새 정부의 국정과제가 반영된 이번 예산안 심사에서는 우리 사회가 겪고 있는 저성장과 양극화, 저출산·고령화 등의 현안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국가 재정의 바람직한 역할, 재원조달 방법과 분야별 재원배분 방향, 재정건전성, 재정사업의 타당성과 효과성 등에 대하여 진지하고 심층적인 논의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국회의 예산안 심사를 지원하기 위하여 「2018년도 예산안 분석 시리즈」를 발간하였습니다. 「2018년도 예산안 분석시리즈」는 「총괄 분석」을 비롯하여 「위원회별 분석」, 「성인지 예산서 분석」, 「공공기관 예산안 분석」, 「예산안 분석 종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총괄 분석」에서는 예산안의 주요 특징과 재정총량에 대하여 분석하고,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등 정부의 주요 정책과제와 현금급여 재정사업과 같은 유형별 분석을 확대 함으로써 거시적이고 다양한 관점에서 예산안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위원회별 분석」에서는 소관부처 예산안의 개요를 설명하고, 부처의 정책·사업들을 단위·세부사업 등 다양한 수준에서 접근하여 사업의 필요성과 예산규모의 적정성, 사전계획 수립과 절차 준수 여부, 그리고 집행가능성과 기대효과 등을 면밀하게 분석하였습니다.

그리고 「공공기관 예산안 분석」에서는 공공기관에 대한 정부 재정지원 사업의 타당성과 적정성을 살펴봄으로써 예산안 분석의 틀을 유기적·통합적으로 확장하려고 노력하였으며, 「성인지 예산서 분석」에서는 재정사업들이 성인지적 관점에서 적정하게 편성·관리되고 있는지 검토하여 개선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

이번 예산안 분석시리즈가 예산안 심사 과정에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기를 바라며, 국회예산정책처는 앞으로도 국회의 예·결산 심사에 도움이 되도록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2017년 10월

국회예산정책처장 김 춘 순

기획재정위원회

[기획재정부]

I. 예산안 개요 / 3

1. 현 황	3
2. 신규사업 및 증액사업	9
3. 예산안 주요 특징	13

II. 주요 현안 분석 / 14

1. 국민참여예산제도 도입을 위한 과제	14
2. 국가재정운용계획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사후점검 강화 필요	18
3. 외국환평형기금 국공채 발행 필요성 및 적정성 검토 필요	22
4. 조세지출 성과평가제도의 실효성 제고 필요	25
5. 대외경제협력기금 수입자원 확보를 위한 준비사항 검토	29
6. 복권기금 법정배분제도 개선 필요	32
7. 공적연금 및 사회보험의 지속가능성 확보방안 마련 시급	35
8. 공공자금관리기금 특별회계·기금 예수금 개선과제	39
9. 공공자금관리기금 신규 국채발행금리 적정성 검토 필요	43
10. 통합재정사업평가제도의 실효성 제고 필요	45
11. 국유재산관리기금 운용 개선과제	49
12. 연금복권 상품구조 개편 등 판매율 제고 노력 필요	56



III. 개별 사업 분석 / 57

1. 북방경제협력위원회의 바람직한 운영 방향 검토	57
2. 경제구조개혁전략 기획 및 이행기반 구축 사업의 개선과제	61
3. 청소년창업비전센터의 향후 운영과제	65
4. 국민경제자문회의 운영방향 검토	68
5. 재난적 의료비 지원대상 확대정책 검토	71
6. 복권기금 소송적립금의 조속한 활용방안 마련 필요 등	74
7. 녹색기후기금 출연을 위한 국고채무부담행위의 문제점	76
8.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dBrain) 수출 실적 제고를 위한 다각적인 방안 검토 필요	79
9. 재정교육 사업의 개선과제	81
10. 재정정보 분석 사업 연구과제 세부 계획 마련 필요	84
11. 국가경쟁력 분석의 투명성 및 실효성 강화	87
12. 일시차입금 이자상환 사업의 적정 규모 논의 필요	90
13. 한국감정원의 적립금 용도상실 등을 고려한 배당 확대 필요	92

[국 세 청]

I. 예산안 개요 / 99

1. 현 황	99
2. 신규사업 및 증액사업	100
3. 예산안 주요 특징	101

II. 주요 현안 분석 / 102

1. 납세자보호위원회 공정성 확보 노력 필요	102
--------------------------------	-----



CONTENTS

III. 개별 사업 분석 / 105

- 1. 납세조합 법정교부금 제도 개선 필요 105
- 2. 부가가치세 대리납부제 도입 관련 국세청의 적절한 대책 필요 108
- 3. 홈택스상담센터 운영 사업의 예산 편성 부적정 111
- 4. 국세공무원교육원 부지의 조속한 매각 필요 113
- 5. 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도 홍보 예산 이관 필요 115
- 6. 고지서 발송사업 통합 편성 필요 117

[관 세 청]

I. 예산안 개요 / 121

- 1. 현 황 121
- 2. 신규사업 및 증액사업 122
- 3. 예산안 주요 특징 123

II. 주요 현안 분석 / 124

- 1. 적정 세입 편성 필요 124
- 2. 국제원산지정보원에 대한 원산지 업무 위탁 집중 등 130
- 3. 적극적 성과목표 설정 필요 136

III. 개별 사업 분석 / 139

- 1. 우범여행자 추적 강화를 위한 사업관리 필요 139
- 2. 개도국 업무재설계 예산 편성 기준 마련 필요 144
- 3. 관세행정운영지원 사업의 기본경비 이관 검토 필요 147
- 4. 실험보조요원의 활용을 통한 관세분석 소요기간 단축 필요 149
- 5. 해상 특송화물 인프라 구축 사업 관리 필요 152



[조 달 청]

I. 예산안 개요 / 157

- 1. 현 황 157
- 2. 예산안 주요 특징 160

II. 주요 현안 분석 / 161

- 1. 조달물자 계약 및 관리의 문제점과 개선과제 161
 - 1-1. 종합쇼핑몰 운영 다양성 및 적정성 확보 필요 161
 - 1-2. 불공정조달행위 조사 및 관리 강화 필요 등 165

III. 개별 사업 분석 / 168

- 1. 설계적정성검토 수수료 반영 필요 168
- 2. 통합재정사업평가에 따른 지출구조조정 미흡 171

[통 계 청]

I. 예산안 개요 / 177

- 1. 현 황 177
- 2. 신규사업 및 증액사업 178
- 3. 예산안 주요 특징 179

II. 주요 현안 분석 / 18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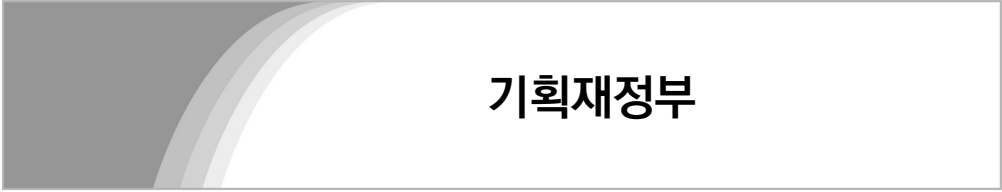
- 1. 통계 현행화율 개선 필요 180



CONTENTS

III. 개별 사업 분석 / 184

- 1. OECD 세계포럼 예산 조정 필요 등 184
- 2. 통계데이터센터 개소 계획 변경 필요 등 189
- 3. 통계생산대행 수입대체경비 과소편성 193



기획재정부

1

현 황

가. 총수입·총지출

2018년도 기획재정부 소관 예산안은 일반회계, 지역발전특별회계 및 6개 기금(복권기금, 공공자금관리기금, 대외경제협력기금,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 외국환평형기금, 국유재산관리기금)으로 구성된다.

2018년도 기획재정부 소관 총수입은 273조 7,037억원으로 전년 대비 17조 1,550억원(6.7%) 증가하였다. 회계·기금별로는 일반회계 264조 422억원, 지역발전특별회계 3조 4,941억원, 복권기금 4조 4,798억원, 공공자금관리기금 5,865억원, 대외경제협력기금 1,678억원, 국유재산관리기금 9,333억원이다.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과 외국환평형기금은 총수입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제외되었다.

[2018년도 기획재정부 소관 총수입]

(단위: 백만원, %)

	2016 결산	2017		2018 예산안(B)	증감	
		본예산	추경(A)		B-A	(B-A)/A
예 산	241,660,649	241,675,264	250,490,064	267,536,261	17,046,197	6.8
- 일반회계	238,451,902	238,341,464	247,156,264	264,042,161	16,885,897	6.8
- 지역발전특별회계	3,208,747	3,333,800	3,333,800	3,494,100	160,300	4.8
기 금	6,053,455	6,058,697	6,058,697	6,167,460	108,763	1.8
- 복권기금	3,912,367	4,047,017	4,047,017	4,479,818	432,801	10.7
- 공공자금관리기금	928,303	809,726	809,726	586,516	△223,210	△27.6
- 대외경제협력기금	132,641	139,770	139,770	167,801	28,031	20.1
- 국유재산관리기금	1,080,144	1,062,184	1,062,184	933,325	△128,859	△12.1
합 계	247,714,104	247,733,961	256,548,761	273,703,721	17,154,960	6.7

주: 총수입 기준

자료: 기획재정부

2018년도 기획재정부 소관 총지출은 21조 4,614억원으로 전년 대비 1조 1,509억원 (5.7%) 증가하였다. 회계·기금별로는 일반회계 3조 4,431억원,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 9억원, 복권기금 3조 2,009억원, 공공자금관리기금 12조 8,228억원, 대외경제협력기금 1조 898억원, 국유재산관리기금 9,039억원이다.

[2018년도 기획재정부 소관 총지출]

(단위: 백만원, %)

	2016 결산	2017		2018 예산안(B)	증감	
		본예산	추경(A)		B-A	(B-A)/A
예 산	2,106,827	3,438,706	3,438,706	3,444,036	5,330	0.2
- 일반회계	2,106,640	3,437,716	3,437,716	3,443,095	5,379	0.2
-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	184	990	990	941	△49	△4.9
- 환경개선특별회계	2	0	0	0	0	0.0
기 금	17,025,524	16,871,775	16,871,775	18,017,377	1,145,602	6.8
- 복권기금	2,789,390	2,894,064	2,894,064	3,200,945	306,881	10.6
- 공공자금관리기금	12,618,478	11,981,264	11,981,264	12,822,767	841,503	7.0
- 대외경제협력기금	768,825	987,108	987,108	1,089,794	102,686	10.4
- 국유재산관리기금	848,831	1,009,339	1,009,339	903,871	△105,468	△10.4
합 계	19,132,350	20,310,481	20,310,481	21,461,413	1,150,932	5.7

주: 총지출 기준
자료: 기획재정부

나. 세입·세출

2018년도 기획재정부 소관 세입예산안은 302조 2,850억원으로 전년 대비 15조 6,176억원(5.4%) 증가하였다. 일반회계는 2017년 277조 5,249억원에서 2018년 293조 2,568억원으로 5.7% 증가하였으며, 지역발전특별회계는 9조 1,425억원에서 9조 282억원으로 1.3% 감소하였다.

[2018년도 기획재정부 소관 세입예산안]

(단위: 백만원, %)

	2016 결산	2017		2018 예산안(B)	증감	
		본예산	추경(A)		B-A	(B-A)/A
일반회계	271,980,136	267,591,495	277,524,926	293,256,791	15,731,865	5.7
지역발전특별회계	9,894,412	9,132,714	9,142,514	9,028,210	△114,304	△1.3
합 계	281,874,548	276,724,209	286,667,440	302,285,001	15,617,561	5.4

주: 총계 기준

자료: 기획재정부

2018년도 기획재정부 소관 세출예산안은 14조 5,567억원으로 전년 대비 4조 469억원 (21.8%) 감소하였다. 일반회계는 2017년 18조 6,036억원에서 2018년 14조 5,567억원으로 21.8% 감소하였으며,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는 10억원에서 9억원으로 4.9% 감소하였다.

[2018년도 기획재정부 소관 세출예산안]

(단위: 백만원, %)

	2016 결산	2017		2018 예산안(B)	증감	
		본예산	추경(A)		B-A	(B-A)/A
일반회계	22,583,667	15,942,295	18,603,557	14,556,676	△4,046,881	△21.8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	184	990	990	941	△49	△4.9
환경개선특별회계	2	0	0	0	0	0.0
합 계	22,583,853	15,943,285	18,604,547	14,557,617	△4,046,930	△21.8

주: 총계 기준

자료: 기획재정부

다. 기금운용계획안

2018년도 기획재정부 소관 6개 기금의 수입계획안은 256조 6,684억원으로 전년 대비 30조 6,398억원(10.7%) 감소하였다. 주요 기금별 변동내역을 살펴보면, 공공자금관리기금은 189조 5,729억원에서 166조 2,909억원으로 12.3% 감소하였고, 외국환평형기금은 90조 464억원에서 82조 3,433억원으로 8.6% 감소하였으며, 복권기금은 5조 649억원에서 5조 3,976억원으로 6.6% 증가하였다.

[2018년도 기획재정부 기금수입계획안]

(단위: 백만원, %)

	2016 결산	2017		2018 계획안(B)	증감	
		당초	수정(A)		B-A	(B-A)/A
복권기금	4,740,279	4,874,063	5,064,884	5,397,624	332,740	6.6
공공자금관리기금	195,978,068	187,138,249	189,572,876	166,290,851	△23,282,025	△12.3
대외경제협력기금	908,766	1,019,436	1,019,436	1,122,931	103,495	10.2
국유재산관리기금	1,111,471	1,227,962	1,227,962	1,111,812	△116,150	△9.5
외국환평형기금	125,880,661	90,046,415	90,046,415	82,343,289	△7,703,126	△8.6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	471,444	376,629	376,629	401,884	25,255	6.7
합 계	329,090,689	284,682,754	287,308,202	256,668,391	△30,639,811	△10.7

주: 총계 기준

자료: 기획재정부

2018년도 기획재정부 소관 6개 기금의 지출계획안은 256조 6,684억원으로 전년 대비 30조 6,398억원(10.7%) 감소하였다. 주요 기금별 변동내역을 살펴보면, 공공자금관리기금은 189조 5,729억원에서 166조 2,909억원으로 12.3% 감소하였고, 외국환평형기금은 90조 464억원에서 82조 3,433억원으로 8.6% 감소하였으며, 복권기금은 5조 649억원에서 5조 3,976억원으로 6.6% 증가하였다.

[2018년도 기획재정부 기금지출계획안]

(단위: 백만원, %)

	2016 결산	2017		2018 계획안(B)	증감	
		당초	수정(A)		B-A	(B-A)/A
복권기금	4,740,279	4,874,063	5,064,884	5,397,624	332,740	6.6
공공자금관리기금	195,978,068	187,138,249	189,572,876	166,290,851	△23,282,025	△12.3
대외경제협력기금	908,766	1,019,436	1,019,436	1,122,931	103,495	10.2
국유재산관리기금	1,111,471	1,227,962	1,227,962	1,111,812	△116,150	△9.5
외국환평형기금	125,880,661	90,046,415	90,046,415	82,343,289	△7,703,126	△8.6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	471,444	376,629	376,629	401,884	25,255	6.7
합 계	329,090,689	284,682,754	287,308,202	256,668,391	△30,639,811	△10.7

주: 총계 기준

자료: 기획재정부

라. 재정구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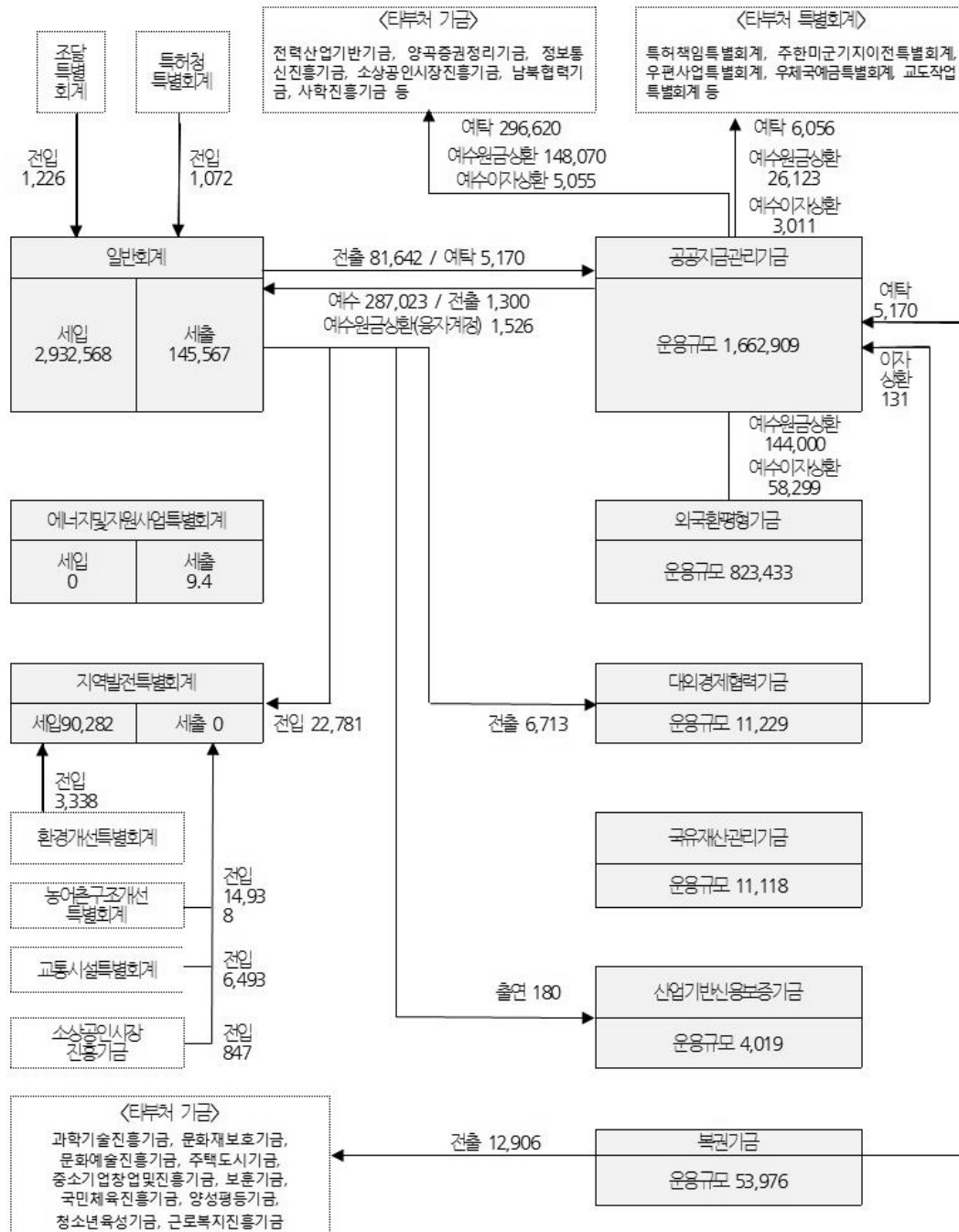
2018년도 기획재정부의 회계·기금 간 주요 재원이전 현황은 다음과 같다.

회계 간, 회계·기금 간 거래를 먼저 살펴보면, 일반회계에서 지역발전특별회계로 2조 2,781억원, 대외경제협력기금으로 6,713억원 전출되고, 공공자금관리기금에서 일반회계로 28조 7,023억원이 예탁될 계획이다.

다음으로 기금 간 거래를 살펴보면, 공공자금관리기금에서 타부처 기금으로 29조 6,620억원이 예탁되고, 복권기금으로부터 타부처 기금으로 1조 2,906억원이 전출되며, 복권기금으로부터 공공자금관리기금에 5,170억원이 예탁될 계획이다.

[2018년도 기획재정부 소관 회계·기금 간 재원이전 현황]

(단위: 억원)



주: 총계기준

자료: 기획재정부

2 신규사업 및 증액사업

기획재정부의 2018년도 신규사업은 총 21개 사업, 270억원 규모이다. 일반회계의 북방경제협력위원회 운영 사업은 신북방 경제협력을 총괄하기 위한 북방경제협력위원회의 운영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며, 국민참여예산제도 운영 사업은 국민이 예산사업의 제안·심사·결정에 참여하는 제도를 도입하려는 것이다. 복권기금의 청소년창업비전센터 건립 사업은 소년원 출원생, 보호관찰대상자, 지역사회 위기청소년 등을 대상으로 직업훈련, 인성교육, 취업·창업 등을 지원하는 청소년창업비전센터를 건립하기 위한 것이며, 국유재산관리기금에서는 청사 등의 건립을 위한 16개 신규사업을 편성하였다.

[기획재정부 2018년도 예산안 신규사업]

(단위: 백만원)

	세부사업명	2018 예산안
일반회계 (4개)	경제구조개혁전략 기획 및 이행기반 구축	484
	북방경제협력위원회 운영	3,172
	국민참여예산제도 운영	2,348
	재정정보분석	800
복권기금 (1개)	청소년창업비전센터 건립	3,834
국유재산관리기금 (16개)	대구법원종합청사 신축	2,000
	광주법원종합청사 별관 신축	1,042
	주그리스(대)청사 신축 사업	2,000
	남북출입사무소 부지 매입	558
	법무부 치료감호소 중증환자 집중치료병동 신축	1,451
	법무부 광주 솔로몬로파크 신축	457
	법무부 기록관 신축	665
	법무부 창원교도소 신축	1,987
	국립해양측위정보원 청사 신축	1,236
	남해어업관리단 청사시설 신축	301
	국세청 강동세무서 청사 신축	1,333
	경찰청 인천남동경찰서 신축	200
	경찰청 별관동 증축	626
	경찰청 서울중부경찰서 신축	1,310
	경찰청 서대문경찰서 신축	732
	익산통합청사 신축	446
합 계		26,982

자료: 기획재정부

2018년도 주요 증액사업을 살펴보면 ① 재난적의료비 지원 ② 중동-CIS 차관 ③ 한국 재정정보원 운영 등이 전년 대비 증액되었다. 재난적의료비 지원 사업은 지원대상을 4대 중증질환에서 모든 질환으로 확대함에 따라 증액되었고, 중동-CIS 차관은 중동-CIS 지역의 차관수요 증대에 따라 사업규모가 확대되었으며, 한국재정정보원 운영 사업은 인건비 및 운영비 증액 소요에 따라 예산이 증액되었다.

[기획재정부 2018년도 예산안 주요 증액사업]

(단위: 백만원, %)

	세부사업	2017		2018	증 감	
		본예산	추경(A)	예산안(B)	B-A	(B-A)/A
일반회계 (7개)	한국재정정보원 운영	15,770	15,770	21,963	6,193	39.3
	국민경제자문회의 지원단 운영	1,943	1,943	3,047	1,104	56.8
	국내조세협력	584	584	763	179	30.7
	ASEAN+3금융협력사업	2,690	2,690	3,879	1,189	44.2
	국제금융외교 및 G20협력	1,935	1,935	2,626	691	35.7
	통일기반조성	494	494	669	175	35.4
	기획재정 행정효율성 증진 및 능력개발	758	758	1,291	533	70.3
복권기금 (2개)	재난적의료비 지원	17,751	17,751	35,662	17,911	100.9
	산림환경기능증진자금지원	33,853	33,853	46,293	12,440	36.7
대외경제 협력기금 (2개)	중동-CIS차관(용자)	100,526	100,526	213,648	113,122	112.5
	중남미차관(용자)	36,211	36,211	59,652	23,441	64.7
국유재산 관리기금 (49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청사시설 취득	3,938	3,938	7,877	3,939	100.0
	국세청 안산세무서 청사 신축	2,064	2,064	7,639	5,575	270.1
	대전지방국세청 청사 신축	1,022	1,022	6,000	4,978	487.1
	국세청 관사시설 취득	1,286	1,286	2,604	1,318	102.5
	광주 통합청사 신축	3,000	3,000	10,800	7,800	260.0
	행정안전부 부산지방합동청사 신축	852	852	1,291	439	51.5
	행정안전부 인천지방합동청사 신축	18,000	18,000	32,000	14,000	77.8
	행정안전부 경북지방합동청사 신축	382	382	1,835	1,453	380.4

(단위: 백만원, %)

	세부사업	2017		2018	증 감	
		본예산	추경(A)	예산안(B)	B-A	(B-A)/A
	행정안전부 충남지방합동청사 신축	351	351	1,378	1,027	292.6
	대법원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청사 신축	2,638	2,638	18,000	15,362	582.3
	대법원전주지법남원지원신축	1,145	1,145	2,845	1,700	148.5
	헌법재판소 청사시설 취득	1,092	1,092	8,000	6,908	632.6
	법무부 의정부지검 남양주지청 신축	2,546	2,546	15,818	13,272	521.3
	법무부 전주지검 남원지청 신축	1,510	1,510	2,272	762	50.5
	법무부 검찰청 관사시설 취득	100	100	300	200	200.0
	법무부 기타 교정시설 취득	2,052	2,052	2,870	818	39.9
	법무부 속초교도소 신축	6,352	6,352	16,187	9,835	154.8
	법무부 대구교도소 이전신축	14,000	14,000	30,000	16,000	114.3
	행정안전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법의학시설 신축	2,519	2,519	5,789	3,270	129.8
	경찰청 고속도로순찰대 청사시설 취득	1,022	1,022	1,642	620	60.7
	경찰청 훈련시설 취득	7,768	7,768	14,415	6,647	85.6
	경찰청 경상북도지방경찰청 신축	12,000	12,000	18,521	6,521	54.3
	경찰청 남양주북부서 신축	1,459	1,459	4,038	2,579	176.8
	경찰청 방배경찰서 신축	2,509	2,509	7,000	4,491	179.0
	경찰청 부산중부경찰서 신축	2,767	2,767	4,400	1,633	59.0
	경찰청 구미경찰서 신축	1,995	1,995	5,048	3,053	153.0
	경찰청 서울강서경찰서 신축	2,984	2,984	4,457	1,473	49.4
	경찰청 광명경찰서 신축	440	440	661	221	50.2
	경찰청 정읍경찰서 신축	1,000	1,000	6,318	5,318	531.8
	경찰청 서울 서부경찰서 신축	5,723	5,723	10,000	4,277	74.7
	경찰청 화성동탄경찰서 청사시설 신축	8,919	8,919	13,271	4,352	48.8
	경찰청경남지방경찰청 신관증축	540	540	809	269	49.8
	경찰청경기북부지방 경찰청 별관동 증축	374	374	573	199	53.2

(단위: 백만원, %)

	세부사업	2017		2018	증 감	
		본예산	추경(A)	예산안(B)	B-A	(B-A)/A
	경찰청 서울청 광역수사대 신축	2,191	2,191	7,000	4,809	219.5
	경찰청 수원팔달경찰서 신축	3,000	3,000	4,342	1,342	44.7
	경찰청 관사시설 취득	569	569	2,227	1,658	291.4
	경찰청 제천수련원 신축	4,000	4,000	9,000	5,000	125.0
	해양경찰청 파출장소 청사 취득	621	621	1,025	404	65.1
	해양경찰청 훈련시설 취득	2,291	2,291	4,231	1,940	84.7
	행정안전부 소방방재교육연구단지 신축	56,000	56,000	86,650	30,650	54.7
	통일부 하나원시설 취득	256	256	2,250	1,994	778.9
	통일부 전방사무소 청사신축	450	450	3,179	2,729	606.4
	병무청 인천지방병무청 모병센터 신축	351	351	1,000	649	184.9
	고용노동부 지방고용노동청 청사 취득	3,915	3,915	7,177	3,262	83.3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 본부동 증축	3,170	3,170	4,755	1,585	50.0
	농림축산식품부 영남검역계류장 신축	18,000	18,000	25,152	7,152	39.7
	농림축산식품부 영남검역탐지견센터 신축	28	28	489	461	1,646.4
	농림축산검역본부 직장어린이집 신축	100	100	2,148	2,048	2,048.0
	산림청 관사시설 취득	180	180	584	404	224.4
	합 계	421,986	421,986	815,360	393,374	93.2

주: 주요 증액사업은 2017년도 추경예산 대비 30% 이상 또는 100억원 이상 증액된 사업

자료: 기획재정부

2018년도 기획재정부 예산안의 주요 특징을 살펴보면, ① 국민참여예산제도 도입, 국민경제자문회의 내 국민소통 프로젝트 신설 등 재정운용 과정에서 국민과의 참여와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노력하였고, ② 재난적 의료비 지원 사업을 확대하여 저소득층에 대한 복지를 강화하였으며, ③ 북방경제협력위원회 운영 사업 신설, 경제구조개혁전략 기획 및 이행 기반 구축 사업 신설 등 새 정부의 정책과제를 이행하기 위한 신규예산을 반영하였다.

2018년도 기획재정부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분석 결과 예산안의 심의 및 향후 집행에 있어서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한 고려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첫째, 국민참여예산제도는 조속한 시일 내에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제도 도입 시 대표성·전문성·공정성을 고려하여 국민참여예산위원회를 구성하며, 대표위원들이 지역·업종 등 개별 이해관계가 아닌 공익 목적에 충실할 수 있도록 제도를 설계할 필요가 있다.

둘째, 북방경제협력위원회 운영 사업은 과거 유사한 목적의 협력 사업의 실적이 저조했던 사실을 감안할 때, 실질적인 사업성과를 창출하여 국가경제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관리할 필요가 있다.

셋째, 국가재정운용계획 상 중기 목표가 대부분 달성되지 못하고 있어 중기 차원에서 재정건전성을 관리하고자 하는 도입목적이 효과적으로 달성되지 못하고 있으므로, 중기 목표 달성여부에 대한 사후점검을 강화하는 등 계획의 실효성을 제고할 수 있는 제도개선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넷째, 조세지출 성과평가 제도는 주요 평가대상 항목의 일몰연장 비율이 높고 효과성 분석결과가 미흡함에도 지속적으로 연장되고 있어 비과세·감면 제도의 정비원칙이 준수될 필요가 있으며, 300억원 미만의 조세지출 성과평가 개선방안 및 모든 조세지출항목에 일몰 규정을 도입하는 방안 등 조세지출 평가대상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II

주요 현안 분석

1

국민참여예산제도 도입을 위한 과제

가. 현 황

국민참여예산제도 운영 사업¹⁾은 국민이 예산사업의 제안·심사·결정에 참여하는 제도를 도입하여 재정운용의 민주성과 투명성을 제고하려는 것으로, 2018년도 신규사업으로 23억 4,800만원이 편성되었다.

[2018년도 국민참여예산제도 운영 사업 예산안 현황]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16 결산	2017		2018 예산안(B)	증감	
		본예산	추경(A)		B-A	(B-A)/A
국민참여예산제도 운영	0	0	0	2,348	2,348	순증

자료: 기획재정부

기획재정부는 국민이 직접 결정하는 참여예산을 2017년 중 시범 도입하여 2018년도 예산안에 6개 사업 422억원을 편성하였으며²⁾, 2018년에는 공식적인 신규사업으로 국민참여예산제도를 도입하여 참여예산 규모를 확대할 계획이다.

동 사업의 주요 구성내역으로는 ① 국민제안 예산사업을 심사·선별할 국민참여예산위원회 운영(14억 3,300만원), ② 국민제안 예산사업에 대한 대국민 설문조사(4억원), ③ 제도 홍보 및 관리 비용(3억 7,600만원) 등이 있다.

동 사업의 절차를 살펴보면, 국민참여예산위원회가 국민제안 예산사업을 심사하여 선별한 후 대국민 설문조사를 통하여 정책 우선순위를 확정하고, 이를 정부 예산안에 반영하여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심지현 예산분석관(sjh0125@assembly.go.kr, 788-4625)

1) 코드: 일반회계 1235-351

2) 여성안심용 임대주택 지원(356억원), 농촌지역 일손부족 해소(24억원), 재택·원격근무 인프라 지원(20억원), 365일 일자리 상담서비스 운영(14.5억원), 어린이집 등·하원 자동알림 서비스(7억원), 농어촌 폐형광등 및 폐건전지 수거함(0.5억원)

나. 분석의견

국가의 예산은 헌법에 따라 정부가 예산편성 권한을 지니고 있으나, 정부의 예산편성 절차의 폐쇄성에 대한 비판과 행정의 투명성을 제고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이러한 의미에서 볼 때, 국민참여예산제도의 도입은 국민의 참여를 통해 직접 민주주의의 가치를 높이고, 국가예산 편성과정의 투명성을 제고하는데 일정 부분 기여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참여예산제도는 2004년 광주시 북구, 울산 동구, 안산시 등을 시작으로 다수의 지방자치단체들이 참여예산조례를 제정하여 도입하였으며, 2012년에는 인구 1,000만명 이상 초거대도시 중에서 최초로 서울시가 참여예산제도를 도입하였다.

다만, 국가예산 편성절차에 참여예산제도를 도입한 사례는 현재까지 없다는 점에서³⁾ 향후 제도 설계 및 운영방향에 대하여 신중한 논의가 필요하며, 다음과 같은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첫째, 국민참여예산제도 운영방향에 대한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현재까지 마련되어 있지 않으므로, 조속한 시일 내에 사업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국민참여예산위원회는 국민제안 예산사업을 심사하고 선별하는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나, 동 위원회를 어떻게 구성하여 운영할 것인지 등에 대한 사업계획은 10월 현재까지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다. 동 사업 각목명세서에 따르면, 국민참여예산위원회 운영을 위한 예산(14억 3,300만원)은 총액으로 일반용역비로 편성되어 있으며, 구성인원 및 단가 등 구체적인 예산의 산출근거는 명시되어 있지 않다.⁴⁾

또한, 전체 국가예산 중 국민제안 예산사업 규모의 비중을 어느 정도 수준으로 책정할 지에 대해서도 아직까지 결정된 바 없다.

3) 캐나다, 스웨덴, 유럽 등 일부 국가에서는 의회 본예산 심의 전 국민의견을 수렴해 우선순위를 정한 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하는 사전예산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나, 국민이 예산 사업 제안, 심사, 투표 등 전 과정에 참여하여 예산을 결정하는 것은 아니다.

4) 기획재정부는 약 500명 규모로 위원회를 구성할 가정 하에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현재까지 위원회 구성 규모는 확정되지 않았다.

중앙정부 차원의 참여예산제도는 최초로 도입되는 만큼, 면밀하고 신중한 사업설계 및 이에 대한 깊이 있는 심의가 요구된다는 점을 감안할 때, 기획재정부는 국회의 예산안 심의 전까지 조속히 사업계획을 마련하여 제출하여야 할 것이다.

둘째, 국민참여예산제도를 도입할 경우 대표성·전문성·공정성을 고려하여 국민참여예산위원회를 구성할 필요가 있으며, 대표위원들이 지역·업종 등 개별 이해관계가 아닌 공익 목적에 충실할 수 있도록 제도를 설계할 필요가 있다.

국민참여예산위원회는 국민을 대표하여 예산편성 과정에 참여하게 될 것이므로, 지역·소득수준·직업 등 다양한 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대표성을 갖추도록 선정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또한, 장기간 거주하여 지역현안에 익숙한 지역주민이 전문성을 갖는 지역사회 정책과 달리 국가정책은 광범위하고 다양한 분야로 구성되어 있으며 예산편성을 위한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위원회 구성 시 이에 대한 고려도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선정 기준 및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함으로써 위원들이 공정한 기준에 의해 선정되도록 뒷받침하여야 할 것이다.

한편, 국가의 예산편성은 공익실현의 가치에 최우선적으로 중점을 두어야 할 것이므로, 위원들이 개별 이해관계가 아닌 공익 목적에 충실할 수 있도록 제안사업 공모방식 및 선정방법 등을 신중히 설계할 필요가 있다.

참고로, 서울시는 2014년까지 시와 자치구 사업의 구분 없이 시민제안을 받아 참여예산 사업을 선정하였으나, 자치구별 과다한 경쟁이 발생하고 서울시 전체 사업에 대한 선호도가 하락하는 문제가 발생하자 2015년부터 시 전체사업과 구 지역사업을 구분하여 공모하는 방식으로 변경한 바 있다.⁵⁾

셋째, 참여를 통한 직접민주주의 실현의 가치가 현행 대의민주주의 제도를 조화롭게 보완할 수 있도록 국민참여예산의 대상과 범위를 균형 있게 설정할 필요가 있다.

국민참여예산제도는 국민의 직접적인 참여를 통해 예산편성절차의 민주성과 투명성을 보완하기 위해 도입된 것이며, 헌법 상 정부 예산편성권에 대한 통제는 국회의 예산안 심의라는 대의민주주의를 통하여 실현되고 있다.

5) 손종필·김대진, “예산과정에 있어서 참여민주주의의 한계와 발전과제: 서울시 참여예산제도 사례를 중심으로”, 예산정책연구 제6권제1호, 국회예산정책처

국민참여예산의 대상 및 범위가 지나치게 클 경우 대의민주주의를 통한 현행 예산통제와 일정 부분 중복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반대로 그 범위가 과소할 경우에는 국민참여를 통한 직접민주주의 실현이라는 대의민주주의 보완의 취지가 명목적인 수준에 그쳤다는 지적이 있을 수 있다.

따라서 직접민주주의 가치 도입을 통하여 대의민주주의를 통한 예산통제가 균형 있게 보완될 수 있도록 국민참여예산의 대상과 범위를 신중히 결정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참고로 서울시는 약 500억원 한도 내에서 주민참여예산을 편성하고 있으며, 이는 서울시 전체 예산 규모의 약 0.2%에 해당한다.

가. 현 황

국가재정운용계획수립 사업¹⁾은 단년도 위주 예산편성의 한계를 극복하고 중·장기적 시계에서 국가재원을 보다 거시적·전략적으로 배분하기 위하여 국가재정운용계획을 수립하려는 사업으로, 2018년도 예산안은 전년 대비 1억 1,000만원 증액된 9억 8,100만원이 편성되었다.

[2018년도 국가재정운용계획수립 사업 예산안 현황]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16 결산	2017		2018 예산안(B)	증감	
		본예산	추경(A)		B-A	(B-A)/A
국가재정운용계획수립	760	871	871	981	110	12.6

자료: 기획재정부

기획재정부는 매년 한국개발연구원(KDI)에 국가재정운용계획 작성을 위탁하고 있으며, 2018년부터는 예산을 일부 증액하여 KDI 작업반의 활동기한을 연장(8개월→12개월, 연중 상시 운영)함으로써 국가재정운용계획 작성 업무 외에 지출구조조정 계획 수립 업무도 병행할 계획이다. KDI 작업반은 KDI 소속 직원 뿐 아니라, 다른 국책연구기관 및 민간대학 교수 등 다양한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다.

심지현 예산분석관(sjh0125@assembly.go.kr, 788-4625)

1) 코드: 일반회계 2711-300

나. 분석의견

국가재정운용계획의 중기 목표 달성 여부에 대한 사후점검이 이루어지지 않아 중기 차원에서 재정건전성을 관리하고자 하는 도입목적이 효과적으로 달성되지 못하고 있다.

국가재정운용계획을 도입한 목적은 단년도가 아닌 중기 차원에서 재정건전성을 관리하려는 것이므로, 중기(5년 후) 재정건전성 목표 달성 여부에 대한 평가가 중요하다. 예컨대, 2018년도 예산안 편성 시에는 2017~2021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을 수립하게 되며, 2021년 재정수지 및 국가채무 목표를 달성하였는지 여부를 사후적으로 점검하고, 이를 달성하지 못하였다면 그 원인을 분석하여 재정건전화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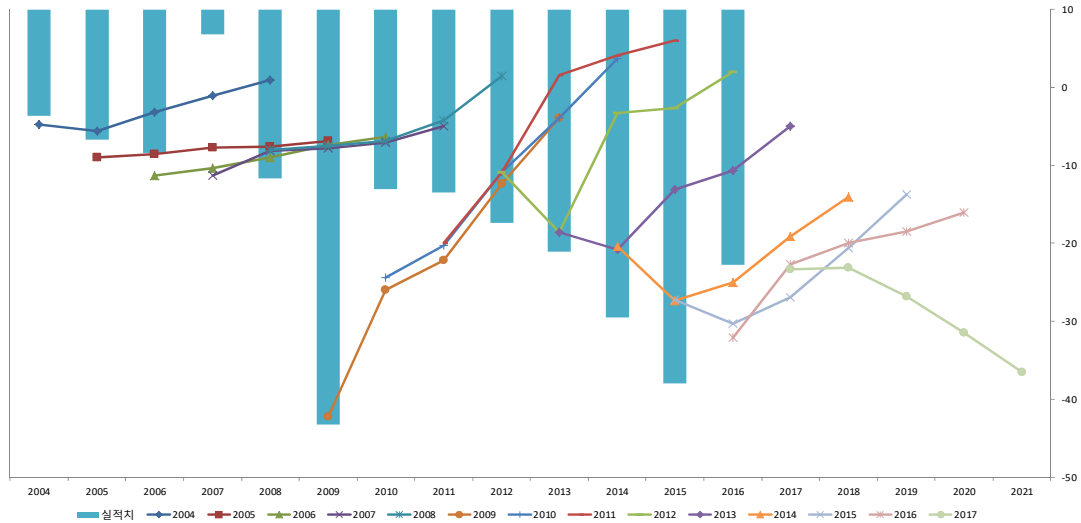
그런데 매년 국가재정운용계획 상 마지막 연도의 목표 달성 여부를 살펴보면, 대부분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고 있다. 예컨대, 2012~2016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은 2016년 재정수지가 0.7조원 흑자로 전환될 것으로 계획하였으나 실제 2016년 재정수지는 22.7조원 적자를 시현하였고, 2016년 국가채무를 524.3조원으로 관리할 것으로 계획하였으나 실제 국가채무는 이를 훨씬 초과한 627.1조원에 이르렀다.

물론 재정환경은 계속적으로 변화하므로, 중기 목표를 준수하기 어려운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그러나 중기 목표 미달성 사례가 반복적으로 나타나고 있음을 감안할 때, 현행 국가재정운용계획은 중기 목표를 낙관적으로 설정함으로써 향후 정부가 달성하고자 하는 바람직한 중기 재정운용의 청사진을 제시하는 역할에 머무르는 측면이 있다.

그래프를 통해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의 꺾은선그래프는 연도별 국가재정운용계획 상 목표를 나타내며, 막대그래프는 당해연도에 실제 발생한 관리재정수지 및 국가채무 실적을 의미한다. 그래프를 살펴보면, 대부분의 경우 국가재정운용계획 상 마지막 연도의 목표보다 실제 발생한 관리재정수지 적자 및 국가채무 규모가 더 큰 것으로 나타나, 국가재정운용계획 상 목표가 달성되지 못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국가재정운용계획의 관리재정수지 전망 및 실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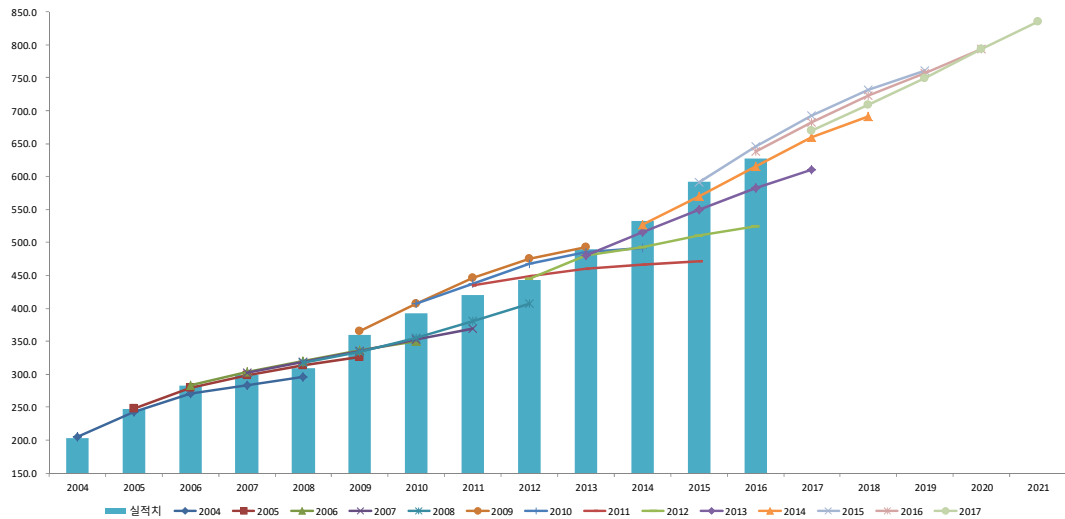
(단위: 조원)



주: 꺾은선그래프는 국가재정운용계획 상 연도별 목표(전망), 막대그래프는 관리재정수지 실적
자료: 대한민국 정부, 「국가재정운용계획」, 각 연도.

[국가재정운용계획의 국가채무 전망 및 실적]

(단위: 조원)



주: 꺾은선그래프는 국가재정운용계획 상 연도별 목표(전망), 막대그래프는 국가채무 실적
자료: 대한민국 정부, 「국가재정운용계획」, 각 연도.

이처럼 국가재정운용계획이 실효성 있는 중기 재정건전성 관리 역할을 수행하지 못하는 것은 목표를 준수하지 못한 경우에도 그 원인을 분석해야 할 사후점검 의무가 부과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또한, 국가재정운용계획은 매년 새롭게 수립되어 갱신되므로, 과거에 수립된 계획의 준수 여부는 사실상 논의되기 어려운 상황이다. 예컨대, 22.7조원의 관리재정수지 적자가 발생한 2016년의 경우, 2012~2016년 계획상 2016년 목표(+0.7조원)는 달성하지 못하였으나, 2014~2018년 계획 상 2016년 목표(Δ 24.0조원) 및 2015~2019년 계획 상 2016년 목표(Δ 30.9조원)는 각각 달성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러므로 중기 재정건전성을 보다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국가재정운용계획 상 목표 달성여부에 대한 사후점검을 강화하는 등 계획의 실효성을 제고할 수 있는 제도 개선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가. 현 황

외국환평형기금(이하 “외평기금”) 국공채수입¹⁾은 외국환평형채권(이하 “외평채”) 발행 등으로 얻어지는 수입이다. 2018년 예산안은 전년과 같은 10억 달러(1조 1,300억원)로 이 중 상환예정인 30억 위안(5억달러)에 대한 차환규모 외에 신규발행이 5억 달러(5억 달러*1,130원/달러=5,650억원) 규모이다.

[2018년도 국공채수입 계획안 현황]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16 결산	2017		2018 계획안(B)	증감	
		당초	수정(A)		B-A	(B-A)/A
국공채수입	0	1,150,000	1,150,000	1,130,000	△20,000	△1.7

자료: 기획재정부

나. 분석의견

외평채 신규 발행은 국회 심의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기대효과와 고려사항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필요 여부를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

우선 긍정적 기대효과는 다음과 같은 점을 들 수 있다.

- ① 외평기금(외환보유액)은 대외리스크에 대응하기 위한 최후의 보루로서, 외환시장의 안정과 대외건전성에 기여하고 있다.
- ② 안정적인 외환보유고는 국제 신용평가회사 무디스(Moody's)와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가 우리나라의 신용등급을 각각 2015년 12월 'Aa2'와 2016년 8월 'AA'로 상향한 이후 북한 핵 관련 이슈, 중국과의 사드 배치 관련 이슈 등 대외적 위험요인에도 불구하고 국가신용등급을 유지시키고 있다.
- ③ 정부가 저렴한 금리로 외평채를 발행하는 경우, 해당 금리가 기준(벤치마크)이 되어 기업들의 외화조달 비용이 절감되는 편익이 있다.

이강구 예산분석관(klee@assembly.go.kr, 788-4626)

1) 코드: 외국환평형기금 81-811

그러나 이와 같은 긍정적인 기대효과와 함께, 외평채 신규발행 필요성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사항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첫째, 외환보유액 대비 단기외채비율이 낮고, 국책은행의 발행채권이 벤치마크 역할을 수행하는 점을 감안하여 외평채 신규 발행의 효과와 비용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외환보유액 대비 단기외채비율이 높을수록 대외적 유동성 위험이 높다고 할 수 있다. 2011년 이후 단기외채비율은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추세에 있어 안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연도별 외환보유액 대비 단기외채비율]

(단위: %)

연도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비율	45.6	39.1	32.3	32.0	29.1	29.1

주: 연말 기준

자료: 한국은행

국책은행인 산업은행은 외화 표시 산금채 발행, 수출입은행은 외화 표시 채권(글로벌 본드) 발행 등을 통해 해외금융사로부터 각각 연간 45억달러(5.1조원), 20억달러(2.3조원) 규모의 외화를 조달하고 있다.

이에 대해 정부는 국책은행 발행채권보다는 정부가 직접 외국에 채권을 발행하는 것이 더 저렴한 기준을 설정할 수 있으며 이와 같은 벤치마크 효과로 인해 기업들은 더 효율적으로 외화자금을 운용할 수 있다고 강조하고 있다. 또한 북핵문제, 미국 금리인상 등 불안요인으로 금융 및 외환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될 때 대응재원 확보 및 시장심리 안정 등의 효과가 발행비용을 상회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따라서 외평채 발행에 대한 국민 경제 전체적으로 비용과 이익을 가늠해 신규발행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둘째, 기금이 보유한 외화자산으로 만기가 도래하는 외평채를 상환 가능한지 여부를 먼저 검토할 필요가 있다.

정부는 당초 2016년에 만기가 도래하는 외평채의 상환 규모를 고려하여 5억 달러의

외평채 발행을 계획하였으나 실제로 외평채를 발행하지 않고 기금이 보유한 외화자산을 활용하여 만기도래한 외평채를 상환한 바 있다.

2018년도 예산안에 편성된 30억 위안(5억 달러)의 상환 계획은 원래 2019년 만기상환 예정이나 평활화(smoothing)하기 위해 미리 포함된 것으로, 기금이 보유한 외환자산을 통한 외평채 상환 여력부터 먼저 검토될 필요가 있다.

셋째, 외환보유액 증가로 인한 비용은 외환시장 안정을 위한 불가피한 정책 비용인 측면이 존재하나 구조적 역마진에 의해 지속적으로 외평기금의 손실이 초래된다.

재원조달을 위해 발행하는 채권의 지급금리가 자금운용을 통해 지급받는 수취금리에 비해 높아 구조적인 역마진이 발생한다. 따라서 외환보유액의 지속적인 확대는 이차손실의 증가를 가져와 기금의 결손 규모를 확대시키고 결과적으로 국가재정에 부담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정부는 외평기금 손실에도 불구하고 대내외 금융·외환시장의 변동성을 감안하여 적정 수준의 외평채 발행이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또한, 외환보유고의 적정 수준에 대해서는 여러 의견이 있을 수 있다. 따라서 외평채 신규발행 필요성에 대해서 국회 심의과정에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외국환평형기금 이차손익과 수취·지급금리 차]

(단위: 조원, %, %p)

구 분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이차손익	△3.6	△5.3	△5.8	△3.9	△3.8	△7.7	△6.4
수취금리(A)	2.3	1.7	1.7	2.6	2.8	1.5	1.0
지급금리(B)	5.0	4.9	4.8	4.5	4.2	3.8	3.5
금리차(A-B)	△2.7	△3.2	△3.1	△1.9	△1.4	△2.3	△2.5

자료: 기획재정부

가. 현 황

조세지출은 조세의 일반적인 과세체계에서 벗어난 조세특례에 의하여 납세자에 대한 재정지원¹⁾을 목적으로 발생하는 국가세입의 감소를 의미한다²⁾. 1960년대부터 조세지출제도가 특정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본격적으로 도입되었으나 세수 확보의 불안정성, 형평성 등에서 문제점이 제기되었다. 최근 이러한 역기능을 수정·보완하기 위해 2010년 조세지출예산제도, 2013년 조세지출 성과관리제도, 2015년 조세지출 성과평가제도가 도입되어 시행되고 있다.

조세지출 성과관리 및 평가 사업³⁾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42조⁴⁾에 따라 조세지출예산서에 성과관리 요소를 도입하여 조세지출을 체계적으로 관리·운용하기 위한 사업이다.

이강구 예산분석관(klee@assembly.go.kr, 788-4626)

1) 「조세특례제한법」

제142조의2(조세지출예산서의 작성)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조세감면·비과세·소득공제·세액공제·우대세율적용 또는 과세이연 등 조세특례에 따른 재정지원(이하 “조세지출”이라 한다)의 직전 연도 실적과 해당 연도 및 다음 연도의 추정금액을 기능별·세목별로 분석한 보고서(이하 “조세지출예산서”라 한다)를 작성하여야 한다.

2) 대한민국정부, 「2018년도 조세지출예산서」, 2017.

3) 코드: 일반회계 2131-306

4) 「조세특례제한법」

제142조(조세특례의 사전·사후관리)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경제·사회정책 등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조세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하여 조세감면의 목적, 조세감면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정책 효과, 연도별 예상 세수효과 및 관련 통계자료 등을 포함한 조세감면에 관한 건의를 매년 4월 30일까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하여야 한다.

③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세특례사항에 대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조세감면으로 인한 효과분석 및 조세감면제도의 존치 여부 등에 대한 의견을 매년 4월 30일까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기획재정부장관은 주요 조세특례에 대한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다만, 해당 연도에 적용기한이 종료되는 사항(지원대상의 소멸로 조세특례의 폐지가 명백한 사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은 제외한다)으로서 연간 조세특례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금액 이상인 조세특례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전문적인 조사·연구기관이 목표달성도, 경제적 효과, 소득재분배효과, 재정에 미치는 영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용에 대해 평가한 결과를 회계연도 개시 120일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⑤ 정부는 연간 조세특례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금액 이상인 조세특례(경제·사회적 상황에 대응할 필요가 있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제외한다)를 신규로 도입하는 법률안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문적인 조사·연구기관에서 조세특례의 필요성 및 적시성, 기대효과, 예상되는 문제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용에 대해 평가한 결과를 첨부하여야 한다.

⑥ 기획재정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조세감면에 관한 건의, 제3항에 따른 의견제출 및 제4항과 제5항에 따른 평가와 관련하여 전문적인 조사·연구를 수행할 기관을 지정하고 그 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를 출연할 수 있다.

2018년 예산안에는 전년(18억 4,900만원) 대비 2억 4,500만원 감소된 16억 400만원이 편성되었다.

[2018년도 조세지출 성과관리 및 평가 사업 예산안 현황]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16 결산	2017		2018 예산안(B)	증감	
		본예산	추경(A)		B-A	(B-A)/A
조세지출성과관리 및 평가	1,767	1,849	1,849	1,604	△245	△13.3

자료: 기획재정부

나. 분석의견

첫째, 평가대상 조세지출 항목의 일몰연장 비율이 높고, 효과성 분석결과 미흡한 것으로 나타난 경우에도 지속적으로 연장되는 사례가 있어 비과세·감면 제도의 정비원칙이 준수될 필요가 있다.

2015년부터 조세지출 성과평가제도가 시행되고 있으나, 일몰이 도래하는 주요 조세지출항목에 대한 비과세·감면 정비가 미미하다. 2015년 심층평가 대상 항목인 14건 중 12건이 연장되었고(연장률 85.7%), 2016년에는 심층평가 대상 6건이 모두 연장되었다(연장률 100.0%).

특히 2016년 조세특례 심층평가 결과 타당성과 효과성 분석결과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난 경우에도 일몰연장의 결론이 제시된 사례가 있다⁵⁾.

- ① “환경보전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는 정책목표와 연계성이 낮고 환경규제와 중복 등으로 인해 정책적 타당성이 낮으며 세액공제를 통한 기업의 투자유인 효과도 미미한 것으로 평가되었으나 결론으로 투자여력이 미약한 중소기업을 감안하여 일몰연장이 제시되었다.
- ② “에너지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는 효과성 분석 결과 유의한 결과를 도출하지 못했으나 자료 한계와 설문조사 결과를 근거로 일몰연장이 제시되었다.
- ③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과세특례” 또한 고급 외국인력 유치효과 분석 결과 효과가 입증되지 못했지만 국가경제 발전에 도움이 되는 외국인 유치라는 타당성을 기준으로 일몰연장은 타당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 ④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심층평가서는 전통시장 사용분 및 대중교통 이용분공제 등은 조세특례의 효과성이 낮은 것으로 평가되어 제도의 단순화 등을 위해 폐

5) 국회예산정책처, 「2017년도 조세지출예산 분석」, 2016.

지하는 방안을 제시하였으나 정부는 세법개정안에 일몰연장으로 반영하였다.

정부는 성과평가제도가 시행초기 단계이므로 시행 5년간 결과를 살펴보고 연구의 질을 높여갈 것이라는 의견이다. 하지만 정부는 국정과제 재원마련을 위해 2018~2022년간 비과세 정비 등을 통해 17.1조원을 마련할 것으로 밝히고 있다.

이를 위해서는 조세특례 심층평가 결과 실효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비과세·감면 정비원칙을 준수하여 적극적으로 일몰시키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만일 오랜 기간 유지된 조세지출제도를 일시에 폐지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중장기적으로 제도를 합리화시키는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할 필요가 있다.

둘째, 300억원 미만의 조세지출 성과평가 개선방안 및 모든 조세지출항목에 일몰규정을 도입하는 방안 등 조세지출 평가대상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조세지출 평가는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및 한국개발연구원 등 전문 조사연구기관을 통해 실시되고 있으며, 연간 감면액이 300억원 이상인 조세지출을 새로이 도입할 경우 이들 제도의 도입타당성 등을 사전적으로 분석하는 ‘조세특례 예비타당성 조사’⁶⁾와 일몰이 도래하는 조세지출 중 연간 감면액이 300억원 이상인 제도의 운영성과 등을 분석하는 ‘조세특례 심층평가’⁷⁾로 구성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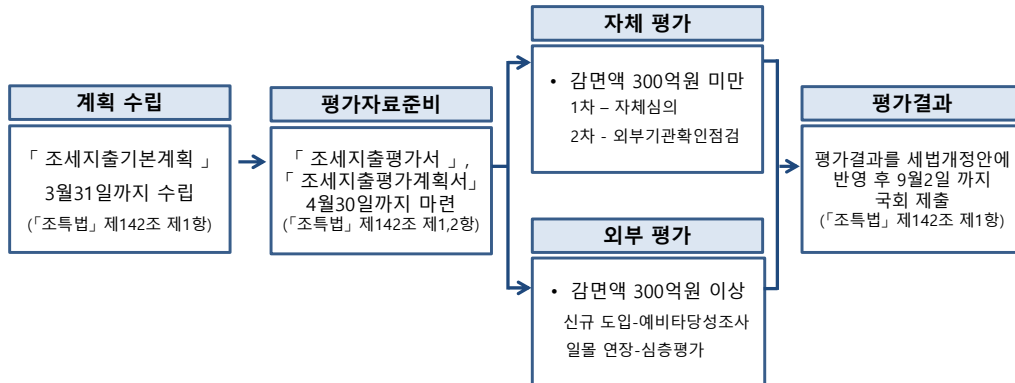
정부는 인력과 예산의 한계로 주요 조세지출항목에 대해서만 성과관리 및 평가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감면규모가 300억원 이상인 조세지출의 경우 외부 평가 등을 통해 성과관리가 이루어지지만, 감면규모가 300억원 미만인 조세지출의 경우에 「조세특례제한법」 제142조에 따라 주요한 조세지출에 대하여 임의심층평가를 실시 중⁸⁾이다. 따라서 한정된 예산과 인력 상황 하에서 300억원 미만인 조세지출이 체계적으로 관리될 수 있는 방안이 검토될 필요가 있다.

6) 조세특례 예비타당성 조사의 주된 내용은 조세특례의 도입 필요성 및 적시성, 기대효과 및 예상되는 문제점 등으로 정책적 타당성과 고용·투자 등 경제 각 분야에 미치는 영향 등을 평가하는 것이다.

7) 조세특례 심층평가는 (1) 목표 달성도, 경제적 효과, 소득재분배 효과 및 재정에 미치는 영향 등 조세특례의 효과성, (2) 정책 목적·대상·수단의 적절성, 제도 간 유사중복 여부 등 조세특례의 타당성, (3) 조세특례의 성과를 저해하는 원인과 그 개선방안에 대한 분석으로 이루어진다.

8) 2015년 3건, 2016년 15건, 2017년 15건에 대하여 임의심층평가를 실시하였다.

[조세지출 성과관리제도 기본구조와 주요 일정]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2017년도 조세지출예산 분석」, 2016.

조세특례 심층평가의 경우 일몰이 도래하는 조세지출제도를 기준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나, 일몰이 없는 조세지출 항목의 비중이 상당하다. 2017년 기준 조세지출제도 243개 중 79개 항목(32.5%)이 일몰규정 없이 영구화 되어 있으며, 규모는 19.0조원(전체 조세지출액 36.1조원(경과규정 제외) 중 52.0%)에 달하고 있다.⁹⁾

그러나 OECD는 조세지출제도를 일반적인 기준의 조세체계에서 벗어나는 예외적인 항목으로 규정하고 있고, 국고보조사업은 원칙적으로 일몰제로 운영하되 3년의 기한을 두고 존치여부를 평가하고 있으므로, 조세지출 또한 일몰규정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한편, 정부는 향후 일몰규정 없이 운영되는 항목에 대해 임의평가를 수행할 계획이다. 다만, 임의평가 대상의 선정이나 시행이 과다한 재량에 따라 이루어지지 않도록 조세특례 성과평가의 실효성을 제고시킬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9) 국회예산정책처, 「2017 조세의 이해와 쟁점: 조세지출」, 2017.

가. 현 황

대외경제협력기금은 개발도상국에 대한 유상원조를 전담하는 기금으로서, 동 기금의 수입재원은 자체수입(융자원금 회수 및 이자수입 등)과 외부재원(일반회계전입금¹⁾ 등)으로 구분된다. 자체수입 비중은 2014년 23.6%에서 2015년 15.2%로 하락한 이후 계속 10%대의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2018년에는 공공자금관리기금 예수금²⁾이 편성되었다.

[연도별 대외경제협력기금 수입재원 현황]

(단위: 억원, %)

구 분		2014	2015	2016	2017	2018
자체수입 (융자원금 회수, 이자수입 등)		1,417 (23.6)	1,378 (15.2)	1,326 (17.9)	1,398 (16.0)	1,678 (15.6)
외부재원	일반회계전입금	4,590	7,664	6,100	7,327	6,713
	공공자금관리기금 예수금	0	0	0	0	2,347
	소계	4,590	7,664	6,100	7,327	9,060
합 계		6,007	9,042	7,426	8,725	10,738

주: 1. 2014~2016년은 결산 기준, 2017년은 계획 기준, 2018년은 계획안 기준임

2. 여유자금 회수는 수입에서 제외함

3. 괄호 안은 전체 수입 중 자체수입 비중

자료: 기획재정부

나. 분석의견

차관사업 지출소요가 확대되어 일반회계 전입 뿐 아니라 공공자금관리기금을 예수하는 등 역대 최대 규모로 외부재원을 조달할 계획이며, ODA 재원확보 방안으로 2019년부터 도입될 이차보전을 통한 경험증진자금 조달의 준비현황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심지현 예산분석관(sjh0125@assembly.go.kr, 788-462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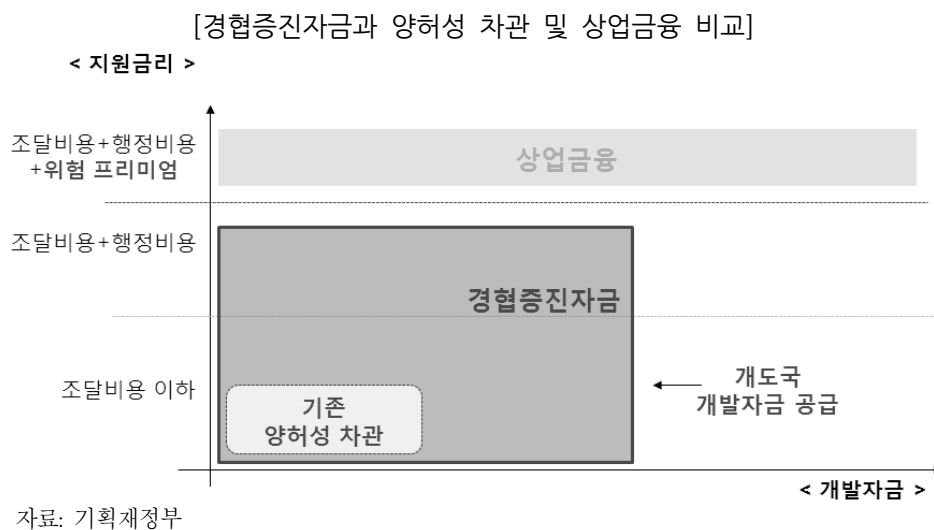
1) 코드: 대외경제협력기금 91-911

2) 코드: 대외경제협력기금 94-943

대외경제협력기금은 개도국에 대하여 장기에 저금리로 차관사업을 실시하고 있어 융
 자원리금 회수 수입만으로 사업수요를 충당하기 어려우므로 외부재원을 통해 부족한 사업
 비를 보전하고 있으며, 2014년부터는 일반회계전입금을 통해 부족재원을 보전하여 왔다.³⁾

그런데 2018년에는 일반회계전입금 뿐 아니라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부터의 예수금을
 편성하였으며, 외부재원 총 규모는 9,060억원으로 기금 출범 이래 역대 최대 규모를 기록
 할 전망이다. 또한, 향후 우리나라의 ODA 규모를 지속적으로 확대해나갈 계획임을 고려
 할 때⁴⁾, 대외경제협력기금의 사업규모 또한 함께 증가할 개연성이 높으므로 안정적인 재
 원확보 방안이 시급하다.

이에 기획재정부는 지속가능한 ODA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경협증진자금을 통한 재
 원조달을 시작할 계획이다. “경협증진자금”이란 개도국과의 경제협력 강화를 도모하기 위
 한 새로운 금융지원 수단으로서 시장차입 자금을 주요 재원으로 활용하여 기존의 양허성
 차관보다는 다소 높은 금리로 개도국을 지원하되, 시장 조달금리와 지원금리 간 차이를
 정부재원으로 보전하는 방식을 말한다(기존 양허성 차관 금리 < 경협증진자금 금리 < 조
 달금리).



3) 기금설립 초기(1989~1997년)와 2012년 및 2013년에는 공공자금관리기금을 예수한 바 있다.

4) ODA/GNI 비율을 2015년 0.14%에서 2020년까지 0.20%로 높여나갈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수출입은행의 잉여금 또는 신규 수은채 발행 등을 통해 수출금융재원(수출기업을 위한 대출재원)을 ODA 재원으로 활용하며, 2018년부터 매년 약 5,000억원 규모의 경협증진자금 사업 승인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이차보전 예산은 2019년부터 기금 신규사업으로 편성하되, 동 재원은 일반회계로부터 전입할 계획이다.

경협증진자금을 통해 이차보전 형태로 재원을 조달할 경우, 상대적으로 적은 재원부담을 통해 ODA 규모를 크게 확대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조선·해운업계 구조조정으로 인해 2016년 설립 이후 최초로 당기순손실(1.5조 원)을 시현하는 등 수출입은행의 재무건전성이 악화된 상황이므로, 향후 경협증진자금 재원을 원활히 조달하기 위해서는 수출입은행 재무건전성의 지속적인 관리가 전제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경협증진자금 지원방식은 완전한 비구속성 원조방식으로 수행되어야 하나, 우리나라의 유상원조 방식은 부분적인 구속성 원조가 주를 이루고 있어 비구속성 원조 수행경험이 부족한 실정이다. 경협증진자금은 기존 양허성 차관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금리에 자금을 융자하므로, OECD 수출신용협약⁵⁾에 따라 완전한 비구속성 원조방식으로 지원되어야 한다. 따라서 물자 및 서비스 입찰단계에서부터 국제경쟁입찰을 실시하여야 하는데, 이는 구속성 원조 위주로 ODA 사업을 추진해온 대외경제협력기금의 그동안의 관행과는 일치하지 않는 방식이다.

마지막으로, 이차보전은 단기적으로는 적은 지출로 대규모 재원조달을 가능하게 하나, 중장기 관점에서 볼 때 기금의 상환 원리금 수입이 발생하지 않게 된다. 비록 경협증진자금의 지원금리가 양허성 차관에 비해 높아 조달금리와 지원금리 차이에 따른 구조적인 손실 규모는 감소할 전망이나, 이차보전을 통한 경협증진자금 재원조달이 중장기적으로 기금 재정건전성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도 분석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5) 38. Minimum Concessionality Level The Participants shall not provide tied aid that has a concessionality level of less than 35% or 50% if the beneficiary country is a Least Developed Country(LDC).....(OECD, 「OECD Arrangement on Officially Supported Export Credits」, 2017, 24p)

가. 현 황

복권기금의 법정배분 제도는 「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정(2004.1.)을 계기로 복권 발행 권한을 복권위원회로 일원화하는 대신, 복권기금에서 과거 복권을 발행하였던 기관·기금에 복권판매수익금 일부를 배분함으로써 손실을 보상하기 위한 취지에서 도입된 것이다. 복권기금은 「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복권판매수익금의 35%를 10개 기관·기금에 배분하고 있으며, 각 기관·기금별 기본 배분비율은 동 법 시행령에 규정하되¹⁾, 성과평가 결과 등에 따라 법령 상 비율의 20% 범위 내에서 탄력적으로 수익금을 배분하고 있다.

2018년도 법정배분사업의 총 계획액은 전년 대비 635억 7,000만원 증액된 6,415억 6,700만원이다.

심지현 예산분석관(sjh0125@assembly.go.kr, 788-4625)

1) 「복권 및 복권기금법」 시행령

제17조(복권수익금의 배분 및 용도) ① 법 제2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복권수익금 배분비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과학기술기초법」 제22조에 따른 과학기술진흥기금: 100분의 12.583
2. 「국민체육진흥법」 제19조에 따른 국민체육진흥기금: 100분의 10.371
3. 「근로복지기본법」 제87조에 따른 근로복지진흥기금: 100분의 5.310
4.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3조에 따른 중소기업창업 및 진흥기금: 100분의 6.356
5. 「문화재보호기금법」 제3조에 따른 문화재보호기금: 100분의 14.286
6. 지방자치단체: 100분의 17.267
7.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60조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개발사업특별회계: 100분의 17.267
8.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에 따른 사회복지공동모금회: 100분의 4.286
9.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제1항에 따른 산림환경기능증진자금: 100분의 5.846
10.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에 따른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100분의 6.428

[법정배분 사업 계획안 현황]

(단위: 백만원)

세부사업명	2017 계획	2018 계획안	증감
과학기술진흥기금 전출	72,827	80,728	7,901
국민체육진흥기금 전출	62,881	68,282	5,401
근로복지진흥기금 전출	36,821	40,881	4,060
중소기업창업및진흥기금 전출	42,254	48,892	6,638
문화재보호기금전출	79,937	84,276	4,339
지방자치단체 지원	90,790	108,601	17,811
제주도개발사업특별회계 지원	89,481	95,447	5,966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지원	28,368	28,900	532
산림환경기능증진자금 지원	33,853	46,293	12,440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지원	40,785	39,267	△1,518
합 계	577,997	641,567	63,570

자료: 기획재정부

나. 분석의견

복권기금의 법정배분제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첫째, 2004년 이후 지속적으로 법정배분기관에 복권판매수익금의 일정 비율을 지원하고 있으나, 국가가 영구적 보상을 실시할 수는 없으므로 단계적 조정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국가정책으로 인해 경제주체가 손실을 입은 경우 국가는 이를 보상하여야 하나, 영구적인 보상은 불가능하며 법정배분사업 또한 그 예외가 될 수는 없다. 복권발행업무를 복권위원회로 일원화한 것은 과열경쟁에 의한 사행성 조장과 투명하지 못한 복권수익금 사용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공익적 목적의 정책결정이었으며, 이들 기관들이 복권발행을 중단하지 않았더라도 향후 영구적으로 복권판매수입이 발생한다고 볼 수 없기 때문이다.

또한, 경직적인 지원의 문제점을 완화하기 위하여, 2011년부터 성과평가 결과 등에 따라 법정배분비율을 탄력적으로 조정하는 법정배분비율 가감제가 도입되었으나, 전체 기관에 대한 배분총량은 35%로 고정되어 있다는 점에서 동 제도는 국가의 영구적인 보상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데 한계가 있다고 보인다.

2018년은 복권기금의 법정배분이 15년째 되는 해로서 국가가 이미 상당한 기간 동안 충분한 보상을 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단계적인 감축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둘째, 법정배분제도를 일정 기간 유지해야 한다면, 법정배분사업의 용도를 가급적 저소득층·소외계층 지원이라는 복권기금의 기본방향과 일치시킬 필요가 있다.

법정배분사업은 과거 복권을 발행했던 기관들의 수입손실에 대한 보상적 성격을 지니고 있으므로, 그 용도가 반드시 저소득·소외계층 지원 목적에 제한되지는 않는다. 「복권 및 복권기금법」은 별표에 법정배분사업의 지출 용도를 규정하였으며, 별표에는 저소득층·소외계층을 위한 지원 사업 외에 배분기관의 운영목적별로 다양한 사업들이 규정되어 있다. 2018년 계획안 편성 사례를 보면, 과학기술진흥기금은 채무상환을 통한 기금의 재정건전성 제고를 목적으로 263억원을 편성하였고, 지방자치단체 지원사업 내 장난감월드 지원(6억원)·어린이 창의체험관 건립(65억원) 등은 일반적인 공익 목적에는 해당하나 저소득층·소외계층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으로 보기는 어렵다.

다만, 「2018년도 복권기금 사용신청지침」은 2018년도 복권기금 편성방향에 대하여 “저소득층과 소외계층 등 사회·경제적 약자에 대한 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한다고 설명하고 있고, 법정배분사업의 선정기준으로서 “복권기금의 공익적 취지를 고려하여 저소득·소외계층 지원과 연관된 사업을 우선 선정”한다고 밝히고 있다.

법정배분사업을 단계적으로 감축할 필요성은 인정되나, 현실적으로 단기적인 조정이 어려워 일정 기간 해당 사업들을 유지할 필요성이 있다면, 가급적 법정배분사업의 용도를 저소득층·소외계층 지원목적과 일치시킴으로써, 단계적 조정에 따른 충격을 최소화하면서 복권기금의 기본방향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기금을 운영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가. 현 황

사회보험 재정건전화 추진 사업¹⁾은 「국가재정법」에 따라 8대 사회보험²⁾의 중장기 재정추계 등을 통해 재정안정화 방안을 연구하고 추진하는 사업이다. 2018년도 예산안에는 2017년도 예산(1억 7,400만원) 대비 900만원 감소한 1억 6,500만원이 편성되었다.

동 사업은 사회보험 재정건전화 방안연구를 위한 연구용역비 1억원, 사회보험재정건전화 정책협의회·통합재정추계위원회·사회보험 중장기 재정추계 운영 등 관리용역비 2,700만원, 해외 사회보험 재정건전화 추진현황 점검을 위한 국외여비 1,400만원 등으로 구성된다.

[2018년도 사회보험 재정건전화 추진 사업 예산안 현황]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16 결산	2017		2018 예산안(B)	증감	
		본예산	추경(A)		B-A	(B-A)/A
사회보험 재정건전화 추진	0	174	174	165	△9	△5.2

자료: 기획재정부

나. 분석의견

중장기 지속가능성이 우려되는 공적연금 및 사회보험의 지속가능성 확보방안을 마련하고 기획재정부에서 이에 대한 마련시기 및 시행방안을 관리할 필요가 있다.

동 사업은 8대 사회보험별로 중장기 재정추계 및 재정안정화 방안이 각각 개별적으로 추진되고 있다는 문제 인식 하에, 이를 총괄하는 컨트롤타워를 설치함으로써 일관성 있는 정책 조정기능을 실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현재 건강보험·노인장기요양보험·고용보험은 중장기 재정추계를 위한 별도의 법적 근거가 없고, 개별법에 근거하여 추계를 실시하는 사회보험도 전망기간·전망주기·추계방법 등이 각기 상이하여 일관된 체계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이강구 예산분석관(klee@assembly.go.kr, 788-4626)

1) 코드: 일반회계 2445-403

2) 4대 연금(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및 건강보험·고용보험·산재보험에 노인장기요양보험이 추가되었다.

[사회보험 중장기 재정추계 제도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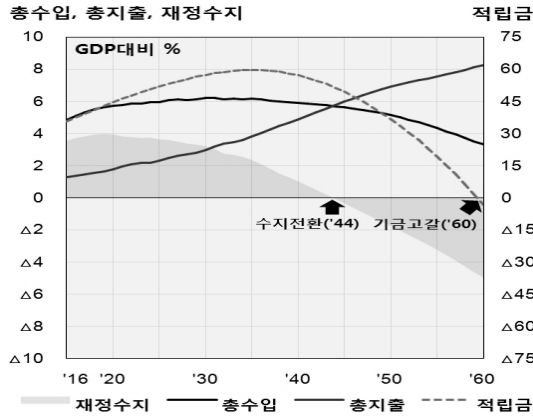
구 분	법적근거	실시기관	전망기간	전망주기	최근 실시년도
국민연금	「국민연금법」 제4조 동법 시행령 제11조	재정추계위원회 (복지부, 국민연금공단)	70년 (2013~2083년)	매5년	2013
공무원 연금	「공무원연금법」 제65조	재정추계위원회 (인사혁신처, 공무원연금공단)	70년 (2015~2085년)	최소 5년	2015
사학연금	「사학연금법」 제43조	재정재계산위원회 (교육부, 사학연금공단)	70년 (2015~2084년)	최소 5년	2015
군인연금	「군인연금법」 제36조	국방부	45년 (2015~2060년)	최소 5년	2015
건강보험	「국민건강보험법」: 별도규정 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노인장기 요양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별도규정 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고용보험	「고용보험법」: 별도규정 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산재보험	「산재보험법」 제99조 동법 시행령 제90조	산재보험재정 추계자문위원회 (고용부, 근로복지공단)	45년 (2015~2060년)	매3년	2015

주: 별도규정이 없는 건강·노인장기·고용보험은 2015년 12월 발표된 정부의 장기재정전망 작업시 2015~2060년까지의 장기재정전망을 수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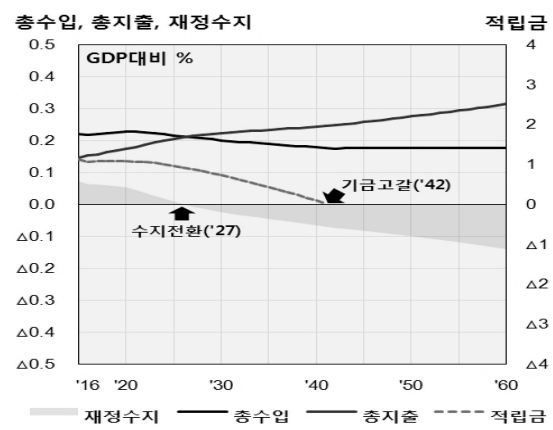
자료: 기획재정부

그러나 동 사업이 공적연금 및 사회보험의 중장기 재정안정화에 기여하기 위해서는 재정추계의 일원화 뿐 아니라, 각 제도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할 수 있는 실질적 방안들을 이끌어낼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정부의 2015년 장기재정결과를 살펴보면 국민·사학·공무원·군인연금·건강보험 및 노인장기요양보험 등은 지속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연금과 사학연금은 각각 2060년, 2042년 적립기금이 고갈될 것으로 전망된다. 공무원연금과 군인연금은 재정수지 적자 지속으로 적자보전이 증가될 것으로 보이며, 건강보험과 노인장기요양보험은 각각 2025년, 2028년 누적수지가 고갈될 것으로 전망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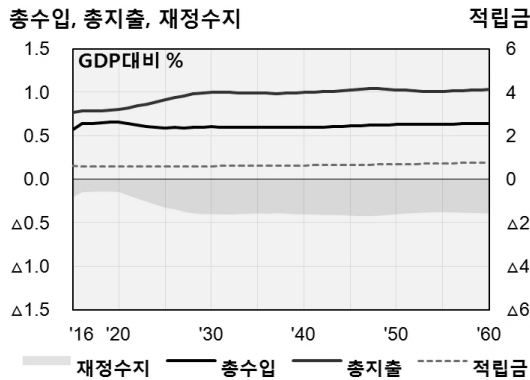
[국민연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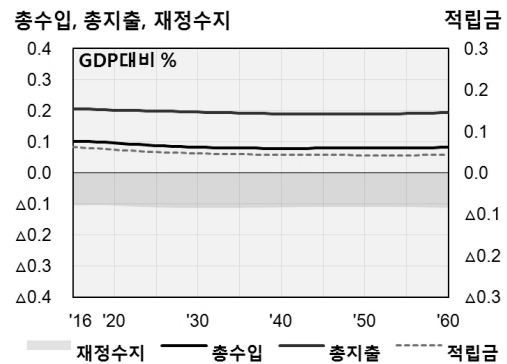
[사학연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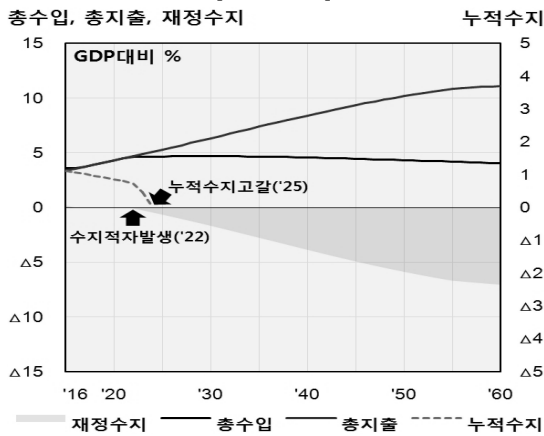
[공무원연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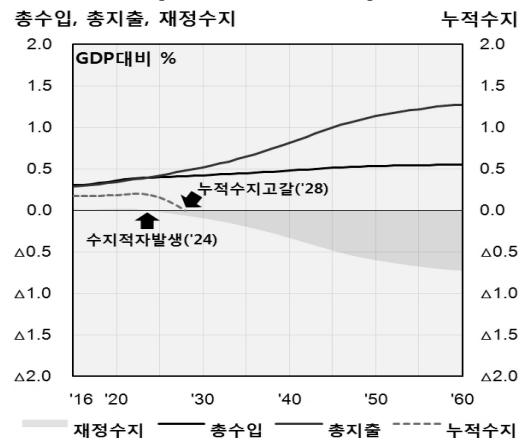
[군인연금]



[건강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



자료: 기획재정부, 「2060년 장기재정전망」, 2015. 12.4.

공적연금 및 사회보험의 재정건전성 위기가 논의되는 근본적인 원인은 각 재정추계의 일관성 미흡이나 재정안정화 방안의 부재에서 비롯되는 것이 아니라, 재정 제도개선에 대한 이해관계자들의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기 어려운 점에 있다고 할 수 있다.

정부는 국민연금 및 사학연금은 수지적자가 발생하더라도 국고보전이 없다고 밝히고 있다.³⁾ 그렇다면 적립기금 고갈 이후의 대책이 시급할 것이다. 국민연금공단이 지속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해 보험료율-급여율 조정, 자산운용 수익률 제고방안 등 개혁방안을 자체적으로 제시하고 있으나, 이를 현실화하기 위해서는 정부·국회·기업·국민 등의 사회적 합의가 필요할 것이다.

동 사업의 목적이 공적연금 및 사회보험별로 난립한 재정추계 및 건전화 방안을 통합적으로 관리·조정함에 있다고 하더라도, 최종적 목표는 현실적인 사회보험재정 제도개선 마련이 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담당 부처에서 장기재정전망 결과와 공청회 등을 통해 제도 개선방안 수립을 검토할 때 재정당국인 기획재정부는 개혁방안 논의에 대한 시기 및 시행방안 마련을 관리할 필요가 있다.

3) 기획재정부, 「2060년 장기재정전망」, 2015. 12. 4.

가. 현 황

특별회계 예수금¹⁾은 각 특별회계의 여유자금을 공공자금관리기금(이하 “공자기금”)으로 예수하는 것으로서 2018년도 계획안은 전년(4조 7,669억원) 대비 7조 2,570억원 증액된 12조 239억원이다.

기금 예수금²⁾은 각 기금의 여유자금을 공자기금으로 예수하는 것으로서 2018년도 예산안은 전년(12조 5,760억원) 대비 1조 3,410억원 증액된 13조 9,170억원이다.

[2018년도 특별회계 예수금 및 기금 예수금 계획안 현황]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16 결산	2017		2018 계획안(B)	증감	
		당초	수정(A)		B-A	(B-A)/A
특별회계 예수금	2,506,917	4,795,927	4,766,895	12,023,882	7,256,987	152.2
기금 예수금	10,134,723	12,576,000	12,576,000	13,917,000	1,341,000	10.7

자료: 기획재정부

나. 분석의견

공자기금의 특별회계 및 기금으로부터의 예수금은 다음과 같은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첫째, 매년 특별회계로부터의 예수금 계획을 과다하게 계상하여 수입실적이 부진하였으므로, 2018년 예산안의 과대편성이 우려된다.

2014년 이후 지속적으로 특별회계 예수금 수입 계획 대비 실적이 부진('14: 40.8%, '15: 71.5%, '16: 60.5%)하였다. 주된 부진사유는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투자계정)의 수납 실적이 계획 대비 저조한 것에 기인한다. 그 밖에도 우편사업특별회계·우체국보험특별회계·국방군사시설이전특별회계 등에서 실제 수납액이 당초 계획에 미치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강구 예산분석관(klee@assembly.go.kr, 788-4626)

1) 코드: 공공자금관리기금 94-942

2) 코드: 공공자금관리기금 94-943

2016년에는 전반적으로 세수여건이 개선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계획대비 실적이 60.5%로 부진한 점을 고려하면 전년에 비해 152.2% 증가된 2018년도 예산안의 예수금 수입계획(교통시설특별회계를 제외하면 전년대비 12.3% 증가)의 과대편성이 우려된다. 만약 수입 실적이 계획 대비 저조할 경우 타 회계·기금 예탁 등 공자기금 지출계획의 원활한 집행에 어려움을 야기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연도별 특별회계 예수금 계획 대비 실적 현황]

(단위: 억원)

기 금	2014			2015			2016			2017		2018	
	계획	실적	잔액	계획	실적	잔액	계획	실적	잔액	계획	예산 잔액	계획안	예산 잔액
교도작업특별회계	120	120	120	98	98	98	349	349	349	436	665	633	862
국방·군사시설이전 특별회계	1,543	0	0	1,544	300	300	1,533	750	1,050	232	982	1,697	1,929
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	1,543	0	0	0	0	0	0	0	0	0	0	0	0
에너지및자원사업 특별회계(투자)	19,580	10,000	21,500	25,382	19,820	28,520	25,967	15,000	33,020	26,764	41,764	25,648	52,412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 (특허청)	532	532	2,322	1,008	1,008	2,880	285	285	2,865	412	2,817	530	2,767
우편사업특별회계	1,162	0	0	832	200	200	3,710	1,507	1,507	4,174	5,373	6,694	8,890
우체국보험특별회계	1,462	0	0	1,621	0	0	2,327	0	0	3,464	3,464	3,434	6,897
우체국예금특별회계	192	0	0	1,282	1,282	1,282	7,179	7,179	7,179	6,180	11,077	8,151	13,048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 (대산지방해양항만청)	0	0	0	0	0	0	116	0	0	0	0	0	0
교통시설특별회계	0	0	0	0	0	0	0	0	0	6,007	6,007	73,451	79,458
합 계	26,132	10,652	23,942	31,767	22,708	33,280	41,463	25,069	45,970	47,669	72,149	120,239	166,263

주: '잔액'은 향후 공자기금이 기금이나 특별회계에 상환해야 하는 금액의 누적액임

자료: 기획재정부

둘째, 기금 예수금 규모가 최근 급격히 증가하고 있으므로, 기금별 예수 규모가 적정
한지 여부를 점검할 필요가 있다.

2014년 5.9조원 수준의 기금 예수금 계획 규모는 2018년 13.9조원으로 2배 넘게 증
가하였다. 이는 재정여건 악화에 따라 재정당국이 기금이 보유한 여유재원을 보다 효율적
으로 운용하기 위한 조치로 이해된다.

그러나 단기간 내 기금으로부터의 예수 규모가 급격히 증가함에 따라, 무리한 수입계획으로 인해 기금 재무상태에 영향을 미치거나 사업집행에 지장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는지 예수규모 과다 여부를 파악할 필요가 있다.

[연도별 기금 예수금 현황]

(단위: 억원)

기금	2014			2015			2016			2017		2018	
	계획	실적	잔액	계획	실적	잔액	계획	실적	잔액	계획	예상잔액	계획	예상잔액
주택도시기금	18,000	21,199	21,199	50,000	30,000	51,199	60,000	60,000	90,000	80,000	112,801	80,000	90,801
국민체육진흥기금	2,000	1,000	1,000	0	0	1,000	1,000	1,000	2,000	0	1,000	3,500	4,500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0	0	0	0	0	0	5,261	5,261	5,261	0	5,261	0	5,261
국제교류기금	300	300	300	100	100	400	300	300	400	100	400	600	700
기술보증기금	1,500	1,950	1,950	0	0	1,950	500	500	1,950	0	1,950	1,950	1,950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	5,000	6,000	6,000	5,000	5,000	11,000	0	0	11,000	0	11,000	500	11,000
농지관리기금	5,000	5,000	15,000	2,500	2,500	17,500	3,616	3,616	15,116	3,000	12,616	7,000	14,616
문화예술진흥기금	1,250	0	0	100	0	0	0	0	0	0	0	0	0
방사성폐기물관리기금	4,600	5,200	5,200	8,500	8,500	9,100	8,500	8,500	8,500	13,000	13,000	15,000	15,000
방송통신발전기금	2,400	2,400	2,400	1,800	0	1,400	2,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보훈기금	500	500	2,000	300	300	2,300	300	300	2,300	500	2,300	700	2,300
복권기금	5,600	5,170	5,170	5,170	5,170	5,170	5,170	5,170	5,170	5,170	5,170	5,170	5,170
산업재해보상 보험및예방기금	3,000	3,600	6,600	3,000	3,000	6,600	4,000	4,000	4,000	4,000	4,000	4,000	4,000
신용보증기금	3,500	4,550	4,550	0	0	4,550	0	0	4,550	0	4,550	0	0
영화발전기금	300	300	300	300	300	600	200	200	800	190	690	750	1,140
임금채권보장기금	700	700	1,000	1,500	1,500	2,200	1,000	1,000	3,200	2,000	2,600	2,000	2,000
전력산업기반기금	3,000	3,600	9,100	9,000	9,000	16,100	9,000	9,000	21,600	15,000	33,000	15,000	42,000
정보통신진흥기금	2,500	500	500	2,500	500	500	2,500	1,500	1,500	1,000	1,000	0	0
관광진흥개발기금	0	0	395	0	0	0	0	0	0	0	0	0	0
석면피해구제기금	0	0	0	0	0	0	0	0	0	300	300	0	300
농산물가격안정기금	0	0	800	0	0	800	0	0	0	0	0	0	0
장애인고용촉진기금	0	0	0	0	0	0	0	0	0	500	500	1,500	2,000
근로복지진흥기금	0	0	0	0	0	0	0	0	0	0	0	500	500
합 계	59,150	61,969	83,464	89,770	65,870	132,300	103,347	101,347	178,347	125,700	213,138	139,170	204,238

주: '잔액'은 향후 공자기금이 기금이나 특별회계에 상환해야 하는 금액의 누적액임

자료: 기획재정부

정부는 현재 기금운용평가단의 「기금준치평가」 시 “중기가용자산 규모의 적정성” 항목을 통하여 기금이 보유한 여유재원 규모의 과다·과소 여부를 판단하고 있으나, 산출근거 및 과다 보유규모에 대한 정보는 공개하지 않고 있다. 기금운용평가단의 과다 여유재

원 판정으로 재정당국이 공자기금으로 예수를 권고하는 사례가 많고, 이러한 권고는 차년도 예산안 편성 시 중요한 참고자료로 활용되고 있음을 고려할 때, 국회가 기금별 공자기금 예수규모가 적절한지 여부를 심의할 수 있도록 정부가 동 평가의 근거자료를 투명하게 공개할 필요가 있다.

셋째, 공자기금에서 각 특별회계 및 기금으로 상환해야 할 예수금 잔액을 관리해야 할 필요가 있다.

각 특별회계와 기금에서 여유자금 중 일부를 공자기금에 예수시킨 자금은 향후 공자기금이 다시 상환해야 한다. 특별회계나 기금에 상환해야 할 시점에서 세수여건이 호전되거나 지출구조조정을 통해 공자기금의 여유자금을 확보하지 못할 경우 상환을 위해 국채를 발행해야 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채 발행으로 국가채무가 증가될 경우 재정건전성에 관심이 증가되어 국가채무관리계획 등에 따라 국가채무를 관리하게 된다. 하지만 특별회계나 기금의 공자기금 예수금 잔액은 지속적으로 증가되고 있으나, 아직 관리의 필요성이 논의되고 있지 않다.

공자기금의 2018년 특별회계 예수금 예상잔액은 16조 6,263억원이며 2014년(2조 3,942억원)에 비해 6.9배 증가된 규모이다. 공자기금의 2018년 기금 예수금 예상잔액은 20조 4,238억원이며 2014년(8조 3,464억원)에 비해 2.4배 증가될 것으로 예상된다. 공자기금의 특별회계 및 기금 예수금 잔액도 국가채무관리계획과 함께 관리하는 방안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가. 현 황

기획재정부는 2018년도 신규 국채발행금리(=공자기금 예탁금리)를 2.7%로 가정하였으며, 이는 전년도 2.3%보다 0.4%p 높다.

참고로, 신규 국채발행금리는 공공자금관리기금 수입 항목에서는 일반회계·기타특별회계·기금·타계정 예탁이자 수입 등 4개 수입계획과 연동되어 있고, 지출 측면에서는 국고채이자상환, 공자기금에서 기타회계·기타기금·총괄계정으로의 예수이자 상환 등 4개 사업계획과 연동되어 있으며, 그 밖에 타 회계 및 타 부처 여러 사업의 산출근거로 활용되고 있다.

나. 분석의견

2018년도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신규 국채 발행의 적정 금리 수준에 대해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최근 신규 국채 발행금리의 정부안·국회확정안 및 실제 조달금리 현황을 비교해보면, 2012~2016년 국회에서 정부가 신규 국채금리를 과다계상하였다는 이유로 0.5~0.8%p를 감액하여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 조달금리는 대부분 1%p 이상 더 낮게 나타났다. 2017년에는 2.3%로 이전에 비해 현실적인 설정으로 평가되어 국회조정은 없었다.

[연도별 신규 국채금리 현황]

(단위: %)

	정부안	국회조정	국회 확정	실제 조달금리	시장금리 (회사채AA-)
2012	5.0	△0.5	4.5	3.23	3.77
2013	4.8	△0.8	4.0	3.14	3.19
2014	4.8	△0.8	4.0	3.02	2.98
2015	4.5	△0.8	3.5	2.15	2.08
2016	3.5	△0.7	2.8	1.62	1.89
2017. 7	2.3	0	2.3	2.02	2.28
2018	2.7				

자료: 기획재정부

이강구 예산분석관(klee@assembly.go.kr, 788-4626)

2018년 예산안에 반영된 신규 국채금리는 2.7%이다. 정부는 시중금리가 최근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고 주요 선진국의 통화정책을 고려하여 책정했다고 밝혔다. 최근(2017년 1월~8월) 국고채 금리는 2.08%로 전년 동기(1.69%)보다 약 0.4%p 상승하였고, 미국연방은행(FRB)은 2017년 2회 금리를 인상(0.75 → 1.00 → 1.25)하였으며, 정부는 2017년 내 추가 인상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국회예산정책처와 LG경제연구원은 2018년 국고채(3년 만기) 금리를 연평균 2.2%(2017년 1.8%)로 전망하고 있다.¹⁾

예산 상 신규 국채금리를 과소하게 편성하는 경우 기금 운용과정에서 자금 부족이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불확실성에 대비해 일정 부분 완충(buffer)을 두어 금리를 보수적으로 편성할 필요성이 인정된다. 다만, 지나치게 보수적인 예산편성은 효율적인 재정운용을 저해하는 문제가 있으므로, 어느 수준의 완충을 두는 것이 적절한지 여부에 대하여 국회 심의과정에서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1) 국회예산정책처, 「2018년 및 중기 경제전망」, 2017.

가. 현 황

재정사업평가 사업¹⁾은 통합재정사업평가, 보조사업운영평가, 기금 및 부담금 평가 등 재정사업 전반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는 것으로, 2018년도 예산안은 전년 대비 4,400만원 감액된 14억 7,300만원이 편성되었다.

[2018년도 재정사업평가 사업 예산안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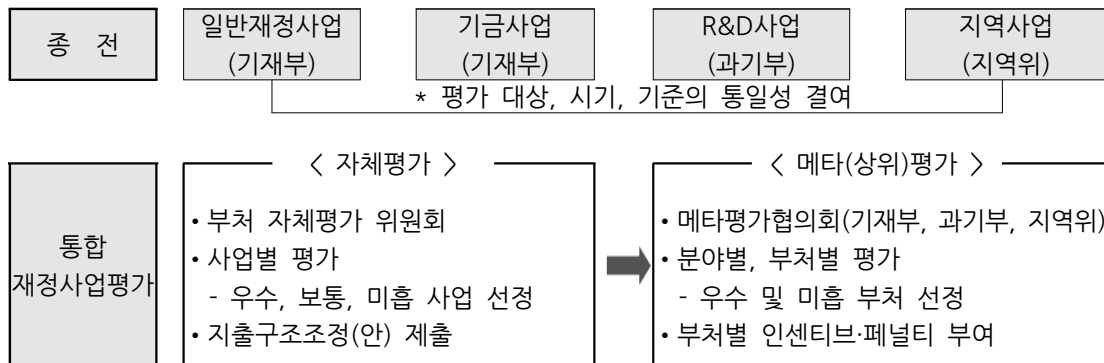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16 결산	2017		2018 예산안(B)	증감	
		본예산	추경(A)		B-A	(B-A)/A
재정사업평가	2,528	1,517	1,517	1,473	△44	△2.9

자료: 기획재정부

이 중 통합재정사업평가는 과거 기획재정부의 재정사업자율평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舊 미래창조과학부)의 연구개발(R&D)사업 중간평가, 지역발전위원회의 지역발전사업평가가 칸막이식으로 실시되어 평가대상, 시기, 기준 등이 통일되어 있지 않은 문제점 등을 해결하고자 2015년 4월부터 시행되고 있다.

[통합재정사업평가 현황]



자료: 관계부처 합동, 「2017년 통합 재정사업 평가 지침」, 2017.2.

이강구 예산분석관(klee@assembly.go.kr, 788-4626)

1) 코드: 일반회계 2644-300

나. 분석의견

통합재정사업평가 도입으로 인한 긍정적 기대효과는 다음과 같다.

① 일반재정, R&D, 지역사업 등 각각 운영하던 다양한 평가제도가 통합됨으로써 평가지표가 이전에 비해 간소화되었고 이에 따라 평가 부담이 완화되었다고 볼 수 있다.

[통합 재정사업 평가 개편사항]		
	2015년	2017년
평가대상 (평가주기)	◆ 전체 재정사업의 1/3 (3년주기로 평가)	◆ 전체 성과관리대상 재정사업
자체 평가	◆ ‘사업 수 기준’ 상대평가 ◆ 5단계로 등급화 * 매우우수/우수/보통/미흡/매우미흡 ◆ 계획, 관리, 성과 및 환류단계의 11개 지표로 평가(일반재정 기준) ◆ 일반재정, R&D, 지역발전사업 분야별 별도의 평가지표 사용	◆ ‘예산 규모 및 사업 수 기준’ 상대평가 * 우수 20% 이하, 보통 65% 내외, 미흡 15% 이상 ◆ 3단계로 등급화 * 우수/보통/미흡 ◆ 관리, 결과 단계의 3개 지표로 간소화 (※ 모니터링·외부지적사항 지표 삭제) ◆ 분야별 평가지표를 통합하되, 특성화 지표(R&D만 해당)를 활용 ◆ 성과보고서를 바탕으로 부처 자체평가 실시
메타 평가 (상위 평가)	◆ 일반재정, R&D, 지역발전사업 분야별로 분절적·칸막이 평가 ◆ R&D, 지역발전사업의 경우, 사업별 확인·점검 실시	◆ 분야별 평가를 통합하여 부처 단위의 종합적 평가 ◆ 메타평가협의회를 통해 분야별, 부처별 메타(상위)평가 실시
평가 결과 환류	◆ 일반재정, R&D, 지역발전사업 분야별 지출구조조정 실시 * 미흡사업별 10% 예산삭감 ◆ 우수 및 미흡부처에 대한 기관별 인센티브 및 페널티 부여	◆ 부처단위의 종합적인 지출구조조정 실시 * '17년 평가대상사업 예산의 1% 수준 ◆ 부처가 자율적인 세출구조조정안 마련 * 개별 미흡사업에 대한 구조조정 규모를 부처가 자율적 결정 ◆ 기관별 인센티브 및 페널티 부여

자료: 각 연도 통합 재정사업 평가 지침(관계부처 합동)을 바탕으로 재구성

② 일률적인 감액 위주의 평가환류 방식에서 벗어나 사업 평가에 대한 부처의 자율성이 대폭 확대되었다. 각 부처가 재정사업을 평가 후 사업별 우선순위를 도출하여 자율적인 세출구조조정안을 마련하도록 하였다.

③ 2015년에는 ‘사업 수’ 기준으로 미흡 이하 등급을 평가하여야 했으나 2016년에는 조정되어야 할 ‘예산 규모’ 기준으로 평가하였고, 2017년 평가부터 ‘예산 및 사업수’ 기준으로 개선되었다. 또한, 이전에는 ‘미흡 사업 별’로 10%씩 감액해야 했으나 ‘평가대상사업 총예산의 1% 이상 세출구조조정안을 마련하는 방식으로 개선되었다. 상위기관(기획재정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지역발전위원회)은 각 부처의 자체평가 결과에 대해 기존의 사업별 전수확인 방식에서 메타평가로 평가방식을 전환하였다.

하지만 이와 같은 개선점에도 통합재정사업평가의 한계는 여전히 존재한다.

첫째, 성격이 상이한 사업군에 적용될 동일한 평가 기준의 개발이 쉽지 않으며, 획일적인 평가 기준은 개별 사업군의 특성을 충분히 반영하기 어려울 수 있다.

이전에는 일반재정사업 기준 계획, 관리, 성과 및 환류 단계의 11개 지표로 평가하였으나 관리, 결과 단계의 3개 지표로 단순화되었다.

[부처 자체평가 지표]

단 계	평 가 항 목	평 가 지 표
관 리	사업 관리의 적절성	• (1-1) (일반재정·정보화) 예산이 계획대로 집행되었는가? • (R&D) 사업이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는가?
결 과	목표달성 및 성과 우수성	• (2-1) 계획된 목표는 달성하였는가? • (2-2) (일반재정·정보화) 사업의 성과는 우수한가? • (R&D) 사업이 상위전략 및 프로그램 목표 달성에 기여하고 있는가?

자료: 관계부처 합동, 「2017년 통합 재정사업 평가 지침」, 2017. 2.

등급도 이전의 “매우 우수/우수/보통/미흡/매우 미흡”의 5단계에서 “우수/보통/미흡”의 3단계로 줄었다. 또한 일반재정, R&D, 지역발전사업별로 별도의 분야별 평가지표를 사용하던 방식에서 평가지표를 통합하였다.²⁾ 그러나, 일괄적 평가에서는 개별 사업들의 특성들이 평가결과에 나타나기 어려워질 가능성이 있다. 이와 같은 한계를 보완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할 것이다.

2) 다만, R&D사업은 추가적으로 특성화지표를 활용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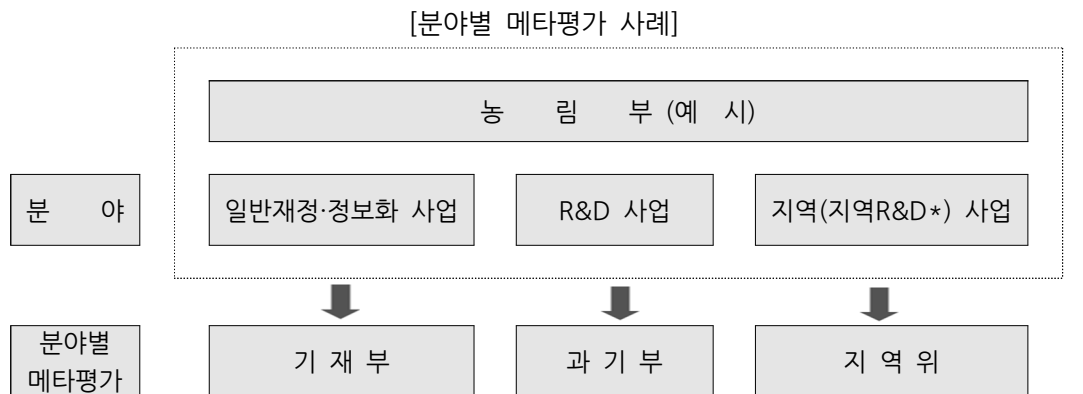
둘째, 새로운 유형의 전략적 왜곡 행동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부처의 평가 관대화를 방지하기 위해 평가등급 비율을 ‘사업 수’ 대신 ‘사업 수 및 예산 규모 기준’으로 개선하여 예산규모가 작은 사업 위주로 미흡 등급으로 평가하는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곧 종료될 사업, 의무지출사업, 정책 중요도가 높은 국정 과제 등 최종 예산 삭감 가능성은 낮고 예산 규모는 큰 소수사업에 감액소요를 집중시켜 다른 사업 예산을 지키려는 새로운 형태의 전략적 왜곡 행동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

정부는 2017년 통합재정사업평가 결과 50개 부처가 총 1,415개 사업을 평가하여 1조 1,940억원의 지출구조조정 계획을 마련하고 미흡 등급 사업 66개에 대해서는 성과관리개선대책을 제시한 바 있다. 이 과정에서도 정부는 사실상 완료사업 등이 미흡등급으로 평가되어 지출구조조정 규모에 포함된 사례들을 적발하여 수정시켰다고 밝히고 있다.

셋째, 각 부처의 자체평가, 기획재정부의 메타평가 결과가 예산 편성 과정에서 잘 연계될 수 있는 제도적 뒷받침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

재정사업평가의 가장 큰 목적은 평가결과를 이후 예산안 편성 및 심의과정에 반영하기 위해서일 것이다. 사업평가의 환류과정은 “사업 수행부처의 자체평가(1~3월)→분야별 메타평가(4월)→부처별 메타평가(5월)→평가결과 환류”로 이루어진다. 따라서 재정사업 평가 담당부서(재정관리국)에서 도출한 성과정보와 세출구조조정 등이 예산편성부서(예산실)의 의사결정에 충분히 반영되는지 검토될 필요가 있다.



주: 지역 R&D 사업은 분야별 메타평가지역사업에 포함시켜 평가하되, 사업별 평가지표는 과기부의 R&D 지표를 사용(성과목표·지표 점검 과기부가 실시)

자료: 관계부처 합동, 「2017년 통합 재정사업 평가 지침」, 2017.2.

가. 현 황

2018년도 국유재산관리기금의 기금운용계획안에 따르면, 사업비 규모는 9,015억원(여유자금 운용 제외)이고 2018년도 신규사업은 총 16개로 163억원 규모이다.

[국유재산관리기금 2018년도 신규사업 현황]

(단위: 백만원)

소관부처	세부사업명	2018 계획안
대법원	대구법원종합청사 신축	2,000
	광주법원종합청사 별관 신축	1,042
외교부	주그리스(대)청사 신축 사업	2,000
통일부	남북출입사무소 부지 매입	558
법무부	법무부 치료감호소 중증환자 집중치료병동 신축	1,451
	법무부 광주 솔로몬로파크 신축	457
	법무부 기록관 신축	665
	법무부 창원교도소 신축	1,987
해양수산부	국립해양측위정보원 청사 신축	1,236
	남해어업관리단 청사시설 신축	301
국세청	국세청 강동세무서 청사 신축	1,333
경찰청	경찰청 인천남동경찰서 신축	200
	경찰청 별관동 증축	626
	경찰청 서울중부경찰서 신축	1,310
	경찰청 서대문경찰서 신축	732
기획재정부	익산통합청사 신축	446
계		16,344

나. 분석의견

2018년도 국유재산관리기금의 운용계획안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개선사항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심지현 예산분석관(sjh0125@assembly.go.kr, 788-4625)

첫째, 명확하지 않은 세부사업과 내역사업의 구분기준을 개선하여 체계적으로 사업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

세부사업은 프로그램 예산체계 상 최소 독립단위이며, 내역사업은 세부사업을 구성하는 하위 구성 요소이다. 정부 예산안 편성 시 신규사업이라 함은 세부사업이 신설된 경우를 의미하며, 국회의 예·결산 심사 시에도 세부사업을 기준으로 심의 절차가 진행된다.

세부사업은 예산편성의 기본단위이므로 국회의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내역사업에 비해 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 즉, 상임위원회에서 감액한 세부사업 예산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증액하는 경우 「국회법」에 따라 상임위원회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반면¹⁾, 내역사업은 이러한 통제를 받지 않는다. 따라서 세부사업·내역사업 구분은 국회의 예산안 심의에서 큰 의미를 지닌다.

그런데 국유재산관리기금의 신규사업을 살펴보면, 동일한 성격을 지닌 사업들이 어떤 경우에는 내역사업으로, 어떤 경우에는 세부사업으로 편성되어 제출되었다. 예컨대, 이탈리아, 베트남, 레바논, 시애틀, 카자흐스탄, 터키 등 대사관 청사 신축사업은 「외교부 재외공관 국유화」 세부사업 내 내역사업으로 편성되었으나, 청사 신축이라는 동일한 목적을 지닌 외교부 주그리스대사관 청사 신축사업은 신규 세부사업으로 편성되었다.

1) 「국회법」 제84조제5항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소관상임위원회에서 삭감한 세출예산 '각항'의 금액을 증가하게 하는 경우 상임위원회의 동의를 받도록 규정하였는데,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각항'을 세부사업으로 해석하여 심의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2018년도 외교부 재외공관 관련 사업 계획안 현황]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16 결산	2017		2018 계획안(B)	증감	
		당초	수정(A)		B-A	(B-A)/A
외교부 재외공관 국유화	45,459	37,801	37,801	48,580	10,779	28.5
카자흐스탄청사,관저신축	1,044	1,100	1,100	4,018	2,918	265.3
베트남청사,관저신축	7,296	2,090	2,090	7,441	5,351	256.0
가나청사,관저신축	4,719	0	0	0	0	0.0
몽골청사,관저신축	2,428	0	0	0	0	0.0
브루나이청사,관저신축	5,303	0	0	0	0	0.0
캄보디아청사,관저신축	8,311	2,620	2,620	0	△2,620	순감
시에틀청사신축	582	4,000	4,000	4,655	655	16.4
체코청사신축	493	0	0	187	0	0.0
터키청사신축	494	4,570	4,570	3,584	△986	△21.6
도미니카청사신축	1,475	0	0	0	0	0.0
프랑크푸르트청사신축	2,367	7,946	7,946	0	△7,946	순감
중국영사부신축	7,482	0	0	0	0	0.0
라오스청사신축	0	3,260	3,260	381	△2,879	△88.3
오사카청사신축	544	0	0	2,612	2,612	순증
엘살바도르관저매입	1,193	0	0	0	0	0.0
이탈리아청사매입	0	4,000	4,000	17,460	13,460	336.5
몬트리올관저매입	0	4,950	4,950	0	△4,950	순감
오스트레일리아청사신축	0	465	465	736	271	58.3
레바논청사,관저매입	0	2,800	2,800	6,586	3,786	135.2
시카고관저매입	0	0	0	920	920	순증
주그리스(대) 청사 신축	0	0	0	2,000	2,000	순증

자료: 기획재정부

또한, 신규사업인 국세청 강동세무서 청사신축 사업은 안산세무서·대전지방국세청 청사신축 사업과 함께 세부사업으로 편성되었으나, 마산·군산·공주 세무서 등은 국세청 청사시설 취득 세부사업 내의 내역사업으로 편성되어 있다.

[2018년도 국세청 청사 관련 사업 계획안 현황]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16 결산	2017		2018 계획안(B)	증감	
		당초	수정(A)		B-A	(B-A)/A
국세청 청사시설 취득	56,009	50,914	50,914	21,577	△29,337	△57.6
성북세무서 청사신축	7,871	0	0	0	0	0.0
북인천세무서 청사신축	10,813	0	0	0	0	0.0
안동 의성지서 청사신축	1,814	0	0	0	0	0.0
마포세무서 청사신축	9,560	8,178	8,178	0	△8,178	순감
서대구세무서 청사신축	5,701	6,425	6,425	0	△6,425	순감
분당세무서 청사신축	7,929	11,458	11,458	0	△11,458	순감
김포세무서 청사신축	7,889	7,707	7,707	0	△7,707	순감
마산세무서 청사신축	511	3,241	3,241	6,398	3,157	97.4
군산세무서 청사신축	2,619	4,069	4,069	3,744	△325	△8.0
공주세무서 청사신축	132	2,037	2,037	2,695	658	32.3
제천세무서 청사신축	725	1,410	1,410	719	△691	△49.0
김해 밀양지서 청사신축	71	1,616	1,616	2,601	985	61.0
영덕 울진지서 청사신축	47	1,064	1,064	1,903	839	78.9
남원세무서 청사신축	327	3,042	3,042	2,000	△1,042	△34.3
영등포세무서 청사신축	0	399	399	599	200	50.1
북대전세무서 청사신축	0	268	268	402	134	50.0
서인천세무서 청사신축	0	0	0	247	247	순증
동래세무서 청사신축	0	0	0	269	269	순증
안산세무서 청사신축	129	2,064	2,064	7,639	5,575	270.1
대전지방국세청 청사신축	75	1,022	1,022	6,000	4,978	487.1
강동세무서 청사신축	0	0	0	1,333	1,333	순증

자료: 기획재정부

경찰청과 관련된 신규사업인 인천남동경찰서 신축, 서울중부경찰서 신축, 서대문경찰서 신축 등은 기존의 남양주북부·방배·부산중부 경찰서 신축 등과 함께 각각 세부사업으로 편성되었으나, 그 밖의 지역은 일괄하여 경찰서 청사시설 신축 세부사업 내 내역사업으로 편성되어 있다.

[2018년도 경찰서 청사 관련 사업 계획안 현황]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16 결산	2017		2018 계획안(B)	증감	
		당초	수정(A)		B-A	(B-A)/A
경찰청 경찰서 청사시설 신축	53,824	52,151	52,151	29,428	△22,723	△43.6
의왕서 신축	9,377	6,106	6,106	0	△6,106	순감
충남태안서 신축	1,830	15,281	15,281	0	△15,281	순감
포항북부서 신축	309	0	0	217	217	순증
마산동부서 신축	142	1,741	1,741	2,598	857	49.2
울산북부서 신축	3,000	7,339	10,290	3,600	△6,690	△65.0
정선서 신축	419	1,309	1,309	4,000	2,691	205.6
진천서 신축	4,710	1,149	1,149	1,030	△119	△10.4
순창서 신축	539	961	961	0	△961	순감
구로서 신축	0	833	833	560	△273	△32.8
부산수영서 신축	36	428	428	2,600	2,172	507.5
보령서 신축	0	325	325	1,326	1,001	308.0
진안서 신축	0	681	681	2,100	1,419	208.4
의성서 신축	0	278	278	189	△89	△32.0
옥천서 신축	0	3,498	3,498	0	△3,498	순감
광주동부서 신축	0	6,355	3,404	728	△2,676	△78.6
인천부평서 신축	0	395	395	590	195	49.4
부천소사서 신축	0	2,203	2,203	7,400	5,197	235.9
양평서 신축	0	2,079	2,079	1,095	△984	△47.3
신안서 신축	0	1,190	1,190	415	△775	△65.1
충주서 신축	0	0	0	242	242	순증
논산서 신축	0	0	0	254	254	순증
곡성서 신축	0	0	0	484	484	순증
인천남동경찰서 신축	0	0	0	200	200	순증
서울중부경찰서 신축	0	0	0	1,310	1,310	순증
서대문경찰서 신축	0	0	0	732	732	순증
남양주북부서 신축	94	1,459	1,459	4,038	2,579	176.8
방배경찰서 신축	0	2,509	2,509	7,000	4,491	179.0
부산중부경찰서 신축	707	2,767	2,767	4,400	1,633	59.0

자료: 기획재정부

이에 대하여 기획재정부는 200억원 이상 총사업비 관리대상 사업은 세부사업으로 편성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사업의 구분체계는 사업의 성격에 따라 분류되어야 하며, 단순히 규모를 기준으로 세부사업·내역사업 여부를 구분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또한, 기획재정부의 설명과 달리, 총사업비가 200억원 이상임에도 내역사업으로 편성된 사례도 발견된다(북인천세무서 청사신축 281억원·전주소년원 신축 300억원 등).

따라서 사업의 성격·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세부사업과 내역사업을 명확히 구분할 수 있는 기준을 정립하고, 이에 따라 신규사업 뿐 아니라 기존 사업도 체계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 「국가재정법」 제21조제4항은 예산의 구체적인 분류기준을 기획재정부 장관이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으나²⁾, 현재 이를 위한 공통기준은 정립되어 있지 않으므로 예산과목 구분을 위한 명확한 기준을 법령에 제시하는 방안도 검토될 필요가 있다.

둘째, 일부 사업의 경우 2018년 사업규모의 적정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며, 잦은 계획변경으로 비효율을 유발하거나 「국가재정법」의 단계별 예산편성 원칙에 부합하지 않는 사례도 살펴볼 필요가 있다.

경찰청의 방배경찰서 신축 사업은 2017년까지 설계가 완료되는 것을 가정하여 2018년에 67억원의 시설비 등 총 70억원의 공사비 예산을 편성하였다. 그러나 2017년 10월에야 기본설계가 완료되어 2018년까지 실시설계가 계속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2018년도 계획안 규모의 적정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경찰청의 부산해운대경찰서 신축 사업은 2018년 토지매입비 3억 9,000만원만 예산으로 편성되었다. 그런데 동 사업은 2014년부터 개시되었음에도 사유지 매입 불가, 총사업비 조정에 따른 설계 중지 등으로 사업이 원활히 추진되지 못하였으며, 결국 부지선정지를 재검토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2018년부터 다시 토지매입부터 사업을 새롭게 재추진해야 하는 상황을 맞이하였다.

기획재정부의 대구통합청사, 수원통합청사 사업은 총사업비가 각각 280억원, 242억원에 이르는 대규모 건설사업으로, 2017년에 이어 2018년에도 공사비가 편성되었다. 두 사업은 2017년 신규사업 예산안 편성시 기본설계비·실시설계비·공사비 일부를 한 번에 계상하여 「국가재정법」 제39조제1항의 단계별 예산편성 원칙³⁾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국회예산

2) 「국가재정법」

제21조(세입세출예산의 구분) ④ 예산의 구체적인 분류기준 및 세항과 각 경비의 성질에 따른 목의 구분은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한다.

정책처의 지적이 있었으나⁴⁾, 기획재정부는 위 사업들이 2개 이상 기관의 신축수요를 통합·개발하는 것으로서 단독청사에 비해 시급성을 감안할 필요가 있으므로 단계별 예산편성 원칙의 예외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런데 2017년 10월 현재까지 두 사업은 기본 설계조차 완료되지 않은 상황이므로, 향후 단계별 예산편성의 예외 적용 시 집행가능성을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국유재산관리기금의 비효율적인 예산편성 및 집행 주요 현황]

(단위: 백만원)

세부사업명	2016 결산	2017		2018 계획안
		계획액	집행액	
방배경찰서 신축	0	2,509	0	7,000
부산해운대경찰서 신축	0	0	0	390
대구통합청사	0	1,407	0	1,000
수원통합청사	0	1,625	0	1,168

주: 2017년 집행액은 2017년 7월말 기준

자료: 기획재정부 제출자료를 참고하여 재작성

3) 「국가재정법」

제39조(대규모 개발사업예산의 편성) ① 각 중앙관서의 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대규모 개발사업에 대하여는 타당성조사 및 기본설계비·실시설계비·보상비(댐수몰지역에 대하여 보상하는 경우와 공사완료 후 존속하는 어업권의 피해에 대하여 보상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와 공사비의 순서에 따라 그 중 하나의 단계에 소요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당해 연도의 예산으로 요구하여야 한다. 다만, 부분완공 후 사용이 가능한 경우 등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2단계 이상의 예산을 동시에 요구할 수 있다.

4) 국회예산정책처, 「2017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보고서(기획재정부위원회 소관)」, 2016.10.

가. 현 황

연금복권은 당첨금을 연금식으로 20년간 분할하여 지급하는 복권으로, 2011년 7월 출시되었다. 연도별 연금복권 판매실적을 살펴보면, 연금복권 도입 초기인 2012년에는 판매수입 2,146억원, 판매율 65.5%를 기록하였으나, 2016년에는 판매수입 981억원, 판매율 30.7%로 판매실적이 급감하였다.

[연금복권 연도별 판매실적 현황]

(단위: 억원, %)

	2012	2013	2014	2015	2016
판매액(A)	2,146	1,224	973	955	981
발행액(B)	3,276	3,276	3,276	3,276	3,276
판매율(A/B)	65.5	37.3	29.7	29.4	30.7

자료: 기획재정부

나. 분석의견

지속적인 연금복권 판매 부진으로 인해 안정적인 노후소득 확보 및 복권상품 다양화 등 연금복권 제도의 긍정적 효과가 실현되지 못하고, 반복적인 인쇄비용 낭비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상품구조 개편 등 개선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연금복권 판매율이 최근 지속적으로 부진하면서 2014~2016년 최근 3년간 매년 1억 7,000만 여 장의 인쇄복권이 미판매로 인하여 폐기되었고, 매년 약 36~37억원의 인쇄비용이 낭비되고 있는 실정이며, 이러한 판매부진은 복권구매자들이 거액의 일시 당첨금을 선호함에 따라 연금복권에 대한 관심이 낮아졌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그러나 연금복권 제도는 당첨금을 20년에 걸쳐 매년 분할하여 지급하므로(세전 월 500만원), 다른 종류의 복권과 달리 당첨금 일시 수령에 따른 위험 부담이 크지 않다. 또한, 복권시장의 90% 이상을 로또 복권이 점유하고 있는 상황에서 연금복권 활성화는 복권상품 다양화에도 기여할 수 있으므로, 상품구조 개편 등을 통해 지속적인 판매부진을 개선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심지현 예산분석관(sjh0125@assembly.go.kr, 788-4625)

III

개별 사업 분석

1

북방경제협력위원회의 바람직한 운영 방향 검토

가. 현 황

북방경제협력위원회 운영 사업¹⁾은 신북방 경제협력을 총괄하기 위한 북방경제협력위원회의 운영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2018년도 신규사업으로 31억 7,200만원이 편성되었다. 사업의 주요 구성내역으로는 러시아·중국 등 북방 주요국과의 교류를 위한 국외여비(7억 600만원), 위원회 개최 및 사무실 운영 등을 위한 일반수용비(6억 9,900만원), 북방경제협력 현안 연구를 위한 일반연구비(5억원) 등이 있다.

[2018년도 북방경제협력위원회 운영 사업 예산안 현황]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16 결산	2017		2018 예산안(B)	증감	
		본예산	추경(A)		B-A	(B-A)/A
북방경제협력위원회 운영	0	0	0	3,172	3,172	순증

자료: 기획재정부

북방경제협력위원회는 「북방경제협력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2017. 8. 25. 시행)」에 법적 근거를 둔 대통령 소속 위원회로서, 북방경제협력정책의 기본방향 설정 및 중장기 기본계획 수립, 유라시아지역 국가와의 협력관계 조성, 북방경제협력추진을 위한 제도적 협력 기반 구축 등을 주요 업무로 하고 있다.²⁾

심지현 예산분석관(sjh0125@assembly.go.kr, 788-4625)

1) 코드: 일반회계 1235-351

2) 「북방경제협력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2조(설치 및 기능) ① 유라시아지역 국가와의 교통·물류 및 에너지 등 분야에서의 연계성 강화를 통하여 우리 경제의 미래 성장 동력을 창출하고 남·북한 통일의 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경제협력에 필요한 주요 정책에 관한 사항을 효율적으로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으로 북방경제협력위원회를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북방경제협력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한다.

1. 북방경제협력의 전략목표와 비전을 실질적으로 구현할 수 있는 북방경제협력정책의 기본방향 설정 및 중장기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북방경제협력정책 추진을 위한 유라시아지역 국가와의 협력관계 조성에 관한 사항

위원회는 전문적인 업무 수행을 위하여 분야별 전문위원회, 특별위원회 및 자문단을 둘 수 있으며, 위원회의 운영을 지원하고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북방경제협력위원회지원단을 둔다. 위원회의 존속기한은 대통령령이 시행된 2017년 8월부터 향후 5년이다.

위원회는 향후 북극항로 개척, 한반도중단철도와 시베리아횡단철도 연결, 한·러 가스관 연결, 동북아 슈퍼그리드 등 각종 북방경제협력 정책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 조정할 예정이다.

나. 분석의견

향후 북방경제협력위원회의 운영 방향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사항이 논의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첫째, 과거 유사한 목적의 협력 사업의 실적이 저조했던 사실을 감안할 때, 동 사업은 실질적인 사업성과를 창출하여 국가경제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관리할 필요가 있다.

최근 유라시아 국가와의 경제협력을 추진하였으나, 주목할 만한 성과를 내지 못한 사례가 일부 있었다. 기획재정부의 광역두만강개발계획(GTI)은 중국·러시아·몽골과의 협력을 통해 경제개발을 모색하였으나, 남북관계 경색 등의 사유로 인하여 유엔개발계획(UNDP)에 대한 프로젝트 출연금 집행실적이 부진하였다.³⁾ 외교부의 유라시아이니셔티브 추진 사업도 남북러 3각협력 확대, 한·중앙아 협력 사무국 준비, 복합협력사업 등을 추진하였으나, 남북관계 경색, 당사국 간의 협의지연 등을 이유로 2016년 22억원의 예산 중 약 10억원이 불용되는 등 사업이 원활히 추진되지 못하였다.

기획재정부는 위원회 위원 및 민간 경제협력전문가 등으로 전문성 있는 방문단을 구성하여, 직접 유라시아 현장을 살펴보고 주요 북방국 관계자들과 네트워크를 구축함으로써 기존 북방정책과는 차별화된 성과를 창출할 계획이다.

3. 북방경제협력 추진을 위한 제도적 협력 기반 구축에 관한 사항
4. 북방경제협력정책에 관한 단계별 추진사업의 발굴·조정 및 평가
5. 북방경제협력정책에 관한 각 부처별 실행계획과 주요사업의 조율 및 추진성과 점검에 관한 사항
6. 북방경제협력정책에 관한 정부기관·공공기관·민간단체·연구기관 간 협력 및 지원 등에 관한 사항
7. 북방경제협력정책 추진에 필요한 자원 조달 및 인력 확보 방안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3) 2016년 말 기준 누적출연금 \$75만 중 \$17.3만이 프로젝트 수행에 집행되었으며, 모든 프로젝트는 실제 개발이 아니라 개발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용도로 집행되었다.

그런데 동 위원회 규모는 30명 이내이나 국외업무여비 예산은 총 7억 600만원(평균 약 30명, 5일, 6회 방문 기준)으로, 동 위원회와 규모가 유사한 구(舊) 청년위원회(2017년 예산, 6,000만원), 국민경제자문회의(2018년 예산안, 1억 9,500만원)에 비해 국외업무여비 규모가 매우 큰 특징이 있다. 따라서 현장 방문이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각별한 관리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을 것이다.

둘째, 북방경제협력 정책에 대하여 전 부처를 총괄하는 위원회의 업무성격 및 위상을 감안할 때, 향후 대통령령이 아닌 법률에 설치 근거를 두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북방경제협력위원회는 북방경제협력 정책의 기본계획 수립, 각 부처 실행계획과 주요 사업의 조율 및 추진성과 점검, 정부기관·공공기관·민간단체·연구기관 간 협력 및 지원 등 전 부처를 총괄하여 관리하는 업무를 수행할 계획이다.

이처럼 각 부처에 기본계획을 하달하고, 실행계획 수립 등 의무를 부과하며, 각 부처 업무수행의 성과를 점검하는 등 전 부처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위원회의 업무성격 및 위상을 감안할 때, 가급적 법률에 위원회 설치 및 운영의 근거를 두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

참고로, ODA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시행계획을 심사하며 그 성과를 평가하는 국제개발협력위원회⁴⁾, 각 부문 및 시·도별 지역발전 시행계획을 심의하고 그 추진 실적을 평가하는 지역발전위원회⁵⁾는 모두 각각 법률에 그 설치 및 운영 근거를 두고 있다.

4)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제7조(국제개발협력위원회) 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정 및 심사·의결한다.

1. 제8조에 따른 국제개발협력 기본계획 및 제11조제4항에 따른 연간 국제개발협력 종합시행계획
2. 제13조에 따른 국제개발협력에 대한 평가에 관한 사항
3. 국제개발협력과 관련된 정책 중 정부 차원의 조정이 필요한 사항
4. 그 밖에 위원장이 중요하다고 판단하여 부의하는 사항

제11조(연간 국제개발협력 시행계획안의 작성 등) ④ 위원회는 제3항에 따라 제출된 분야별 연간 국제개발협력 종합시행계획안을 조정 및 심사·의결하여 연간 국제개발협력 종합시행계획을 확정하고, 이를 지체 없이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5)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22조(지역발전위원회의 설치) ② 지역발전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 2. (생략)
3. 부문별 발전계획안 및 부문별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
4. 시·도 계획, 시·도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
5. ~ 11. (생략)

제9조(시행계획의 평가) ① 지역발전위원회는 매년 부문별 시행계획 및 시·도 시행계획 등의 추진 실적을 평가하여야 한다.

셋째, 직원 전문성 제고를 위한 교육 및 세미나 예산을 동호회 활동을 위한 복리후생비로 계상하였으나 이를 일반수용비로 편성하여 집행할 필요가 있다.

위원회를 지원하는 지원단은 총 20명 규모로, 이들에 대하여 2개의 동호회 또는 연구모임 설립을 전제하여 각 월 20만원의 활동비를 지급하는 예산이 편성되어 있다(1인당 연 24만원).

북방경제협력위원회는 북방 경제협력 정책에 대한 직원들의 전문성 제고를 위해 월 1회 이상 관련 지역 또는 정책 전문가 초빙·내부 세미나 개최 등 연구모임을 운영할 계획이므로, 관련 예산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조직 차원에서 직원들의 전문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면, 관련 예산을 일반수용비로 편성하여 공식적으로 교육을 수행하거나 세미나를 개최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이를 업무 외 활동을 위한 복리후생비로 편성하는 것은 비목의 성격에 부합하지 않는다.

가. 현 황

경제구조개혁전략 기획 및 이행기반 구축 사업¹⁾은 우리 경제가 직면한 “저성장 고착화·양극화 심화” 등 구조적·복합적 위기상황 극복을 위한 일자리 중심·소득주도 성장으로의 경제 패러다임 전환을 뒷받침하기 위한 사업으로, 2018년도 신규사업으로 4억 8,400만원이 편성되었다.

[2018년도 경제구조개혁전략 기획 및 이행기반 구축 사업 예산안 현황]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16 결산	2017		2018 예산안(B)	증감	
		본예산	추경(A)		B-A	(B-A)/A
경제구조개혁전략 기획 및 이행기반 구축	0	0	0	484	484	순증

자료: 기획재정부

기획재정부는 경제구조개혁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2017년 9월 조직개편을 통하여 경제구조개혁국을 신설하였으며, 경제구조개혁국은 일자리경제과·포용성장과·인구경제과·복지경제과 등 4개 과로 구성되어 우리 경제의 구조적이며 고질적 문제인 일자리, 양극화, 저출산·고령화, 주거·교육비 등 생계비 부담 등 해결 업무를 담당하게 되었다.

동 사업의 중점과제는 ① 한국형 고용 안정·유연 모델 구축, ② 포용성장 이행기반 구축, ③ 중장기 인구구조 변화 대응 기반 강화로서 주요 사업 내용은 다음 표와 같다.

심지현 예산분석관(sjh0125@assembly.go.kr, 788-4625)

1) 코드: 일반회계 1141-301

[경제구조개혁전략 기획 및 이행기반 구축 사업 주요 내용]

(단위: 백만원)

중점과제	예산액	주요 내용
한국형 고용 안정·유연 모델 구축	301	고용안정·노동 유연성을 같이 확보하는 한국형 대타협 모델 추진 - 일터·지역단위 성공사례 창출기반 조성 - 추진전략 수립·집행·평가를 위한 합동작업반 운영
포용성장 이행기반 구축	77	성장과 분배를 동시에 추구하는 포용성장 도모 - 포용성장 전략 조사·분석 - 포용성장 연구용역
중장기 인구구조 변화 대응 기반 강화	106	인구구조 변화 대응을 위한 중장기 경제영향 분석 및 대응전략 수립 - 인구구조 변화 파급효과 연구 - 해외사례 분석

자료: 기획재정부 제출자료를 재작성

나. 분석의견

동 신규사업에 대해서는 예산안 심의 시 다음과 같은 사항이 논의될 필요가 있다.

첫째, 한국형 고용 안정·유연모델 구축 사업은 고용정책 주무부처인 고용노동부 및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 업무와 중복 없이 연계하여 추진되도록 효율적으로 업무를 설계할 필요가 있다.

기획재정부는 고용안정과 노동 유연성이 조화된 일터·지역단위의 대타협 사례를 발굴하고 그 성공요인을 분석하여 전국으로 확산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며, 이를 위하여 지자체·유관기관·전문가로 구성된 협의회를 운영하고 지역별 토론회를 개최하며 바람직한 모델을 구축하기 위한 연구용역을 수행할 계획이다.

그런데 고용정책에 대해서는 고용노동부가 주무부처로서 정책수립 및 집행, 점검·관리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또한,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는 일자리 정책 발굴 컨트롤 타워, 정책 조정 코디네이터, 현장 점검 확인자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기획재정부가 조직개편을 통하여 경제구조개혁국을 신설하였으나, 과거 고용과 관련한 분쟁을 조정하거나 관련 정책을 분석한 경험이 없다는 점에서 사업 추진을 위한 전문성을 보완하기 위해서는 고용노동부 및 일자리위원회와의 협력이 필수적이다.

따라서 업무 추진과정에서 고용노동부 및 일자리위원회와의 협의를 통하여 업무 중복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고, 합리적인 업무 연계를 통해 효율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예컨대, 기획재정부는 현장 중심으로 사례를 발굴하여 성공 원인을 분석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일자리위원회는 해당 사례를 국가 차원의 정책으로 확산할 수 있는지 여부를 검토하는 등 명확한 업무 분장이 필요하다.

둘째, 포용성장 이행기반 구축 사업은 사업규모를 감안할 때 성과가 기대에 미치지 못할 우려가 있으므로, 포용성장을 실현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정책수단을 도출할 수 있는 방향으로 역량을 집중할 필요가 있다.

포용성장은 성장과 분배를 균형 있게 추구하는 경제정책 패러다임의 전환으로서, 동 사업을 통해 포용성장을 위한 중장기 거시 전략 및 구체적인 정책수단을 도출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그러나 포용성장 이행기반 구축을 위한 동 사업의 내역을 살펴보면, 전문가 간담회, 문헌조사 중심의 해외사례 연구, 현안이슈 연구용역 등에 총 7,700만원에 불과한 예산이 편성되어, 중장기 거시 전략 수립은 물론 포용성장 이행을 위한 구체적인 정책수단을 발굴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 우려된다.

따라서 사업성과가 포용성장의 개념 정립, 해외 사례조사 등에 그치지 않고, 새로운 정책 패러다임을 실천할 구체적인 정책수단 도출로 연계될 수 있도록 역량을 집중할 필요성이 있을 것이다.

셋째, 중장기 인구구조 변화 대응 기반 강화 사업의 경우, 기존의 중장기 경제전략 기획 사업에서 유사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므로, 업무 중복이 발생하지 않도록 효율적인 사업설계가 요구된다.

중장기 인구구조 변화 대응 기반 강화 사업은 인구구조 변화 대응을 위한 중장기 경제영향을 분석하고 이에 대한 대응전략을 수립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그런데 인구구조 변화 대응정책에 대해서는 기존의 중장기 경제전략 기획 사업에서 별도의 작업반을 구성하여 저출산 개선, 고령사회 대응 등에 대한 세부연구를 수행하고 있다.²⁾ 기획재정부는 중장기 경제전략 수립을 위하여 KDI에 위탁하여 4개의 작업반(총괄

2) 2018년도 작업반 운영 예산안 규모는 2억 8,500만원이다.

반, 4차 산업혁명반, 인구반, 사회자본반)을 구성하였고, 노동연구원·보건산업진흥원·보건
사회연구원 등 국책연구기관 및 민간대학 교수진으로 구성된 인구반에서 이미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중장기 경제영향 및 대응전략에 대하여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따라서 동 신규사업이 기존의 사업과 중복되어 비효율을 유발하지 않도록, 명확한 업
무분장 및 효율적인 사업설계가 필요하다.

가. 현 황

청소년창업비전센터 건립 사업¹⁾은 소년원 출원생, 보호관찰대상자, 지역사회 위기청소년 등을 대상으로 직업훈련, 인성교육, 취업·창업 등을 지원하는 청소년창업비전센터를 건립하기 위한 사업으로, 2018년도 신규사업으로 38억 3,400만원이 편성되었다.

[2018년도 청소년창업비전센터 건립 사업 계획안 현황]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16 결산	2017		2018 계획안(B)	증감	
		당초	수정(A)		B-A	(B-A)/A
청소년창업비전센터 건립	0	0	0	3,834	3,834	순증

자료: 기획재정부

동 사업은 복권기금의 공익사업으로서 법무부가 사업수행주체이며, 전액 한국소년보호협회에 민간자본보조 형태로 교부될 계획이고²⁾ 건립 후 법무부에 기부채납이 예정되어 있다. 청소년창업비전센터는 수원 지역에 건립될 예정이다.

나. 분석의견

청소년창업비전센터 건립은 사회복지서비스 사각지대에서 비행에 노출되어 있는 위기청소년에게 취업·창업의 기회를 제공하는 긍정적 효과를 감안할 때 건립 필요성이 인정되나, 건립 및 향후 운영 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사항을 감안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심지현 예산분석관(sjh0125@assembly.go.kr, 788-4625)

1) 코드: 복권기금 6371-349

2)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51조(소년보호협회) ① 보호소년등을 선도하기 위하여 법무부장관 감독하에 소년 선도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인사로 구성되는 소년보호협회를 둘 수 있다.

② 소년보호협회의 설치, 조직, 그 밖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국가는 소년보호협회에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생략)

첫째, 동 센터는 기존 유사시설에 비해 규모가 크므로 교육수요가 충분할지 여부에 대한 검토가 선행되어야 하며, 기숙형이 아닌 통학형으로 운영되어 중도탈락률이 높을 가능성이 있다.

한국소년보호협회는 무의탁 위기청소년 취업훈련을 위해 사회정착지원센터(YES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YES센터는 기숙형으로 60명이 정원이다. 여성가족부도 학교 밖 청소년의 직업훈련을 위한 내일이룸센터를 9개소 운영하고 있고, 1개소당 교육인원은 평균 20~30명 수준이며, 모두 기숙 형태이다.

그런데 청소년창업비전센터는 수원 지역에 연 800명 교육을 목표로 비기숙 형태로 운영될 계획이라는 점에서 기존 유사 시설과 차이점이 있다. 800명은 기존 유사시설 정원을 10배 이상 상회하는 규모이며, 건립이 예정된 수원 지역은 인구가 밀집된 수도권이라는 하나 한 지역에서 모든 사업수요를 충당할 수 있을지는 불확실한 측면이 있다.

특히 동 센터는 기숙형이 아닌 통학형으로 운영될 예정이므로, 접근성이 낮을 경우 장기간 교육훈련에 꾸준히 임하려는 교육생 비율이 낮을 수 있고, 교육훈련 시간 외에는 지속적으로 비행환경에 노출될 수 있으므로 중도탈락률이 높아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둘째, 한국소년보호협회가 충분한 인력과 취업교육에 대한 전문성을 가지고 대규모 인원을 관리할 수 있을지 여부가 불확실한 측면이 있다.

교육생들의 생활안정에 기여하고 맞춤형 교육 및 지도가 용이한 장점이 있는 소규모 직업훈련 교육과 달리, 대규모 인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제한된 인력으로는 교육생에 대한 맞춤형 교육 등 효과적인 관리가 어렵다. 특히, 교육대상자들은 소년원 출원생, 보호관찰대상자 등 비행경험이 있는 청소년들로서 세심한 관리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대규모 인원 교육을 위한 사전 관리 계획을 철저히 수립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또한, 협회는 보호소년의 교육, 사회정착, 선도·복지 등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나, 취업 및 창업교육을 위한 충분한 전문성을 지니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검토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협회는 사회정착지원센터(YES센터)를 통해 소규모 인원에 대하여 인성교육 및 적응교육과 더불어 전문기술 직업훈련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나, 10배 이상의 교육인원에 대하여 취업 및 창업교육에 특화된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는지는 불확실한 측면이 있다.

셋째, 창업을 강조하는 동 센터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창업교육의 비중을 높이고, 실질적인 창업으로 연계될 수 있는 인프라 지원 방안을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

“청소년창업비전센터”라는 명칭에서도 드러나듯이 동 센터는 기존의 청소년 취업지원 센터와 달리 “창업”의 가능성을 강조하고 있으나, 향후 교육과정 운영계획을 살펴보면, 연인원 기준 기술교육 300명, 취업지원 400명, 창업지원 100명으로, 창업 관련 교육인원은 전체 인원의 1/8에 불과하다. 따라서 창업 면에서 기존 센터와 차별성을 지니기 위해서는 창업교육 과정을 확대하고 창업 특화 콘텐츠를 집중 개발할 필요성이 있다.

또한, 창업을 가장 큰 진입장벽은 창업비용이라 할 것이므로, 교육 결과가 실질적인 창업성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창업자본 지원, 창업을 위한 네트워크 구축 등 각종 창업 인프라 지원 방안도 병행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법무부는 실질적 창업성과가 이어지도록 점포지원, 컨설팅지원 등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히고 있으나, 구체적인 재원확보 방안이 전제될 필요가 있으며, 특히 창업교육 과정이 확대될 경우 이와 연계하여 인프라 확충 방안이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가. 현 황

국민경제자문회의지원단 운영 사업¹⁾은 헌법상 대통령자문기구인 국민경제자문회의의 운영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2018년도 예산안은 전년 대비 11억 400만원 증액된 30억 4,700만원이 편성되었다.

[2018년도 국민경제자문회의지원단 운영 사업 예산안 현황]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16 결산	2017		2018 예산안(B)	증감	
		본예산	추경(A)		B-A	(B-A)/A
국민경제자문회의지원단 운영	1,592	1,943	1,943	3,047	1,104	56.8

자료: 기획재정부

주된 증액내역은 ① 해외 정책연구기관과의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 신설(5억 9,500만원), ② 국민소통 프로젝트 신설(1억 7,400만원), ③ 정책연구용역비 증액(1억 2,000만원) 등이다.

나. 분석의견

국민경제자문회의지원단 운영 사업의 주된 증액내역에 대한 주요 분석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국민참여를 통한 민주성 제고와 경제정책 자문의 전문성에 대한 요구가 조화를 이루도록 하고, 국민소통 프로젝트가 실질적인 정책자문 성과로 연계되도록 사업을 운영할 필요가 있다.

자문회의는 그동안 대통령 자문이 전문가 의견 수렴에 편향되어 일반국민과의 소통과 의견수렴에는 상대적으로 소홀하였다는 인식 하에 국민소통 프로젝트를 신설할 계획이

심지현 예산분석관(sjh0125@assembly.go.kr, 788-4625)

1) 코드: 일반회계 1431-301

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자문회의는 정부 정책 공모전을 통해 다양한 계층에서 50명의 국민 자문단을 선발하여 운영하는 한편(7,000만원), 정책토크쇼를 개최하여 일반국민과 쌍방향 소통을 개선하며(2,400만원), 국민토론 메뉴를 추가하는 등 홈페이지를 확대 개편할 계획이다(8,000만원).

이처럼 국민과의 참여와 소통을 강화하려는 사업목적은 바람직하나, 국가의 경제자문은 기본적으로 전문성이 전제되어야 한다는 점에 유의하여 국민자문단을 운영할 필요가 있다. 또한, 국민자문단을 선발할 경우, 지역·연령·직업·소득수준 등 다양한 요소를 고려하여 참여와 소통 목적에 부합하는 대표성을 갖춘 집단으로 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기준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한편, 정책토크쇼 개최를 통해 유의미한 정책성고가 도출되지 않을 경우, 동 행사는 1회성 전시 행사라는 비판을 받을 수 있다는 점에도 유의하여 사업을 면밀히 설계할 필요성이 있을 것이다.

둘째, 확대된 정책연구 예산의 경우 각 부처의 정책연구 내용과 중복되지 않도록 신중히 주제를 선정하고, 연례적인 불용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리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자문회의의 기능과 역할을 확대함에 따라 정책연구 예산은 2017년 3억 6,000만원에서 2018년 4억 8,000만원으로 전년 대비 1억 2,000만원 증액되었다. 자문회의는 거시·민생·혁신·대외경제 및 경제정책 등 5개 분야에서 총 10개의 연구용역을 수행하고(4억원), 잔액(8,000만원)은 긴급현안에 대응하여 집행할 계획이다.

자문회의의 정책연구 대상은 경제와 관련된 전 부처의 업무를 포괄하고 있으므로, 각 부처의 개별적인 정책연구용역과 중복되어 추진되지 않도록 사전 조율을 통하여 신중히 주제를 선정할 필요가 있다.

또한, 2015년 예산현액 3억원 중 8,000만원, 2016년 예산현액 3억 6,000만원 중 6,200만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던 과거 집행부진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리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셋째, 해외 정책연구기관과의 네트워크 구축은 일정 부분 장점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나, 성과 도출 가능성·네트워크의 지속가능성 등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

자문회의는 미국 헤리티지 재단, 브루킹스 연구소, 피터슨 국제경제연구소와 같은 싱크탱크, NEC 등 경제자문기구, 기타 의회의원, 재계, 학계 주요 인사 등을 대상으로 글로벌 네트워크를 구축함으로써 정책자문의 노하우(know-how)를 습득하고, 우리 경제에 대한 전문적인 시각을 공유하는 한편, 양국 간 경제 분야 쟁점에 대한 대응방안을 모색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자문회의는 2018년 미국·중국 연구기관과의 협의회 개최(미국 1회, 중국 1회, 국내 1회)를 위해 4억원의 일반용역비를 신규 편성하고, 국외업무여비를 전년 대비 1억 4,500만원 증액 편성하였다.

이처럼 해외 우수 정책연구기관과 정기적으로 교류함으로써 우리 측의 자문역량을 일정 부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나, ① 위촉위원들의 임기가 1년에 불과하므로 지속가능한 네트워크 구축이 가능하도록 관리할 필요성이 있고, ② 해외 정책연구기관과 인적 네트워크를 갖춘 전문가를 위원으로 위촉하려는 노력이 보완되어야 하며, ③ 우리 측이 전액을 부담하여 개최하는 대규모 회의에서 가시적인 성과가 도출되지 않을 경우 자문회의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행사성 경비라는 비판이 제기될 수 있으므로 면밀한 계획수립 및 철저한 성과관리가 필요하다.

가. 현 황

재난적 의료비 지원 사업¹⁾은 과도한 의료비 지출로 경제적 부담을 안고 있는 저소득층 중증질환자 가구에게 의료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018년도 계획안은 전년 대비 179억 1,100만원 증액된 356억 6,200만원이 편성되었다. 동 사업은 복권기금의 공익사업으로서 사업주체는 보건복지부이다.

[2018년도 재난적 의료비 지원 사업 계획안 현황]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16 결산	2017		2018 계획안(B)	증감	
		당초	수정(A)		B-A	(B-A)/A
재난적 의료비 지원	27,500	17,751	17,751	35,662	17,911	100.9

자료: 기획재정부

재난적 의료비 지원 사업은 2017년까지 4대 중증질환(암·심장·뇌혈관·희귀난치질환) 및 중증화상에 대하여만 지원되었으나 2018년부터 모든 질환으로 지원범위가 확대되었고, 중위소득 100% 이하인 사람에 대하여 과도한 의료비²⁾가 일시에 발생한 경우 비급여를 포함하여 본인 부담 의료비 일부³⁾를 지원할 계획이며 1인당 최대 지원한도는 2,000만원이다.

재원부담은 2016년까지는 복권기금과 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1:1로 분담하였으나, 2017년부터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포함되어 약 1:1:1의 비율로 분담하였으며, 2018년에는 복권기금에서 20%,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60%,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 20%를 각각 분담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분담비중이 높아졌다.

심지현 예산분석관(sjh0125@assembly.go.kr, 788-4625)

1) 코드: 복권기금 6362-344

2) 의료급여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은 의료비 100만원 이상 발생 시 당연적용, 중위소득 80% 이하는 200만원 이상 발생 시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을 기준으로 선정, 중위소득 100% 이하는 연간소득 대비 30% 이상인 경우에 지역본부 심의위원회를 거쳐 선정한다.

3) 2017년 10월 현재까지 비급여의료비의 50%를 지원할지, 확정 본인부담액 비율에 따라 50~70%를 차등지원할지 여부가 결정되지 않은 상태이다.

나. 분석의견

재난적 의료비 지원 사업의 지원대상 확대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사항이 논의될 필요가 있다.

첫째, 보건복지부는 세부 지원기준을 조속히 확정할 필요가 있다.

정부는 2018년부터 모든 질환으로 지원대상을 확대할 계획을 밝히고 있으나, 불필요한 과잉지원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일부 항목은 지원대상에서 제외할 방침이다.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입원진료의 경우 보건복지부는 비급여항목 중 특실 등 상급병실, 제증명수수료, 미용·성형, 건강검진, 시력교정술 등을 원칙적으로 제외하되 질환에 따라 예외적으로 일부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나, 구체적으로 어떤 항목에 대하여 어느 수준까지 제외할지는 현재까지 논의 중에 있다. 또한, 외래진료의 경우 현재 항암에 한정된 지원대상을 중증질환 중심으로 확대할 계획이나, 역시 구체적인 대상과 범위는 확정되지 않은 상태이다.

정부가 2018년부터 동 사업을 전면적으로 시행할 계획임을 감안할 때, 조속히 세부 지원기준을 확정하여 정책수립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일선 기관에서 사업시행을 인지하여 준비하기 위한 충분한 시간을 확보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또한, 생명과 관계되지 않은 가벼운 질환에 대하여 불필요한 입원, 불요불급한 수술·검사 등 과잉진료가 발생하지 않도록 세부 지원기준을 면밀히 정립해야 할 것이다.

둘째, 지원대상 추계가 정확히 이루어졌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민간보험 가입자를 대상에서 제외하는 현행 안의 적정성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2017년 4대 중증질환이 지원대상인 경우 보건복지부는 지원인원을 18,000명으로 예상하였으나, 2018년부터 모든 질환으로 대상을 확대하면서 지원규모를 83,000명으로 추계하였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5년 연평균 비급여증가율(8.2%), 신청률(80~90%) 및 인정률(89%) 등을 고려하여 지원규모를 산출하였다고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앞서 검토한 바와 같이 세부적인 지원기준이 현재까지 확정되지 않아 동 추계의 정확성을 담보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다. 특히 1인당 지원 수준에 대하여도 비급여본인부담의료비의 50%를 지원할지, 확정 본인부담액 규모에 따라 50~70%를 차등지원할지

여부도 결정되지 않은 상황이다.

만약 보건복지부의 추계보다 지원대상이 과다할 경우, 사업재원이 조기에 소진되어 지원을 받지 못하는 대상자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대상인원 추계의 정확성 및 예산규모의 적정성 등에 대한 논의가 필요할 것이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민간보험 가입자의 경우 이중 수혜를 받을 수 있으므로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는 입장이나, 동 사업의 혜택이 민간보험금 수준을 초과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에 대한 지원방안도 강구할 필요가 있다⁴⁾. 또한, 저소득층에서 동 사업의 수혜를 받기 위해 기존에 가입한 민간보험을 해약하거나 향후 가입을 기피하는 사례가 발생할 가능성에 대해서도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셋째, 동 사업을 인지하지 못하여 수혜를 받지 못하는 국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 안내 노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동 사업의 홍보예산은 별도로 편성되어 있지 않으며, 복권기금 측은 2017년과 동일하게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자체예산으로 리플렛, 포스터 제작 등을 통해 사업을 안내할 계획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4대 중증질환자에 한정되었던 지원이 2018년부터 모든 질환으로 확대되었으므로, 이러한 정책변화 내용을 널리 알림으로써 동 사업을 인지하지 못해 신청을 하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동 사업은 다수 국민, 특히 저소득층을 중심으로 국가에서 복지 혜택을 제공하는 사업이므로 가급적 많은 국민이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4) 보건복지부는 본인부담 의료비 지출이 민간보험금 수준을 초과할 경우 본인이 입증자료를 제출하면 보험금을 공제한 차액에 대하여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는 입장이다.

가. 현 황

공공자금관리기금예탁 사업¹⁾은 복권기금의 소송적립금 잔액 추정액 등을 공공자금관리기금에 예탁하는 사업으로, 2018년도 계획안은 전년과 동일한 5,170억원이 편성되었다.

[2018년도 공공자금관리기금예탁 사업 계획안 현황]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16 결산	2017		2018 계획안(B)	증감	
		당초	수정(A)		B-A	(B-A)/A
공공자금관리기금예탁	517,000	517,000	517,000	517,000	0	0.0

자료: 기획재정부

로또복권사업자인 코리아로터리서비스(KLS)는 2012년 정부에 대하여 계약기간 7년을 5년으로 단축한데 따른 계약상 채무불이행 등을 이유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으며, 복권위원회는 배상금 소요에 대비하여 2012년부터 매년 1년 단위로 소송적립금을 공공자금관리기금에 예탁하여 왔다. KLS가 제기한 소송은 2016년 12월 정부 승소로 마무리되어 향후 정부의 배상 의무가 발생하지 않는 것이 확정되었다.

나. 분석의견

복권기금의 소송적립금과 관련한 주요 분석내용 및 개선과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복권위원회가 소송적립금을 과다하게 편성하여 매년 공공자금관리기금에 예탁함에 따라, 초과적립된 재원이 저소득층·취약계층 지원을 위해 유용하게 활용되지 못하는 기회비용이 발생하여 왔다.

심지현 예산분석관(sjh0125@assembly.go.kr, 788-4625)

1) 코드: 복권기금 9021-891

복권위원회는 공공자금관리기금 예탁액 5,170억원 중 4,808억원은 소송적립금 용도이며, 잔액 362억원은 여유자금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그런데 2015년에 정부가 예측한 소송 패소 시 최대 지출 예상금액은 이자를 포함하여 총 3,210억원이었으며, 이는 연도별 공공자금관리기금 예탁액보다 1,950억원이나 적은 규모이다. 즉, 약 1,950억원은 소송 패소에 대비하여 적립될 필요가 없는 사실상의 기금 여유자금이었으므로, 동 재원을 활용하였다면 저소득층·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복권기금 사업이 보다 확대될 수 있었다.

둘째, 소송문제가 2016년에 원활히 해결되었음에도 2018년에 5,170억원을 재차 공공자금관리기금에 예탁하는 것은 재정운용의 비효율을 유발하므로, 동 재원의 활용계획을 조속히 수립할 필요가 있다.

소송이 정부 승소로 종결됨에 따라 소송적립금 5,170억원은 향후 배상금으로 지출되지 않을 것이 명백해졌음에도 불구하고, 2018년에도 동 재원을 특별한 용도 없이 공공자금관리기금에 재예탁할 경우 기금사업 확대를 통해 저소득층·취약계층에게 보다 많은 혜택을 부여할 기회를 잃게 된다.

복권위원회는 소송이 2016년 12월에 종결되었고 신규사업 발굴에는 시일이 소요되어 2018년도 계획안에 소송적립금 활용계획을 반영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었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이로 인해 소송 종결 이후 2년 간 대규모 재원의 사용용도가 특정되지 못하는 비효율이 발생하고, 소송 종결 이후 9개월이 경과한 현 시점까지 동 재원의 단계적 활용방안이 마련되지 않은 것은 저소득층·취약계층을 위한 복권기금 사업을 확대하려는 정부의 의지가 소극적이라는 비판을 받을 우려가 있다. 따라서 소송적립금의 구체적인 사용계획을 조속히 마련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가. 현 황

녹색기후기금 운영지원 사업¹⁾은 2014년 UN기후정상회의(9.23)에서 녹색기후기금(GCF)에 2018년까지 1억불을 출연하기로 한 우리나라의 약속을 이행하기 위한 것으로, 2018년도 예산안은 전년 대비 9억 7,400만원 감액된 122억 5,100만원이 편성되었다.

[2018년도 녹색기후기금 운영지원 예산안 현황]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16 결산	2017		2018 예산안(B)	증감	
		본예산	추경(A)		B-A	(B-A)/A
녹색기후기금 운영지원	12,472	13,225	13,225	12,251	△974	△7.4

자료: 기획재정부

기획재정부는 2017년 9월 현재 누적 \$3,666만을 GCF에 지원하였고, 2017년 하반기 추가 지원 및 2018년 예산편성을 통해 누적 \$5,800만 지원을 달성할 계획이다. 또한, 잔여분 \$4,200만에 대해서는 2018년 국고채무부담행위를 통해 약속어음을 발행하고, 향후 2019~2022년 4년간 예산사업으로 편성하여 이를 단계적으로 현금화할 계획이다.

[녹색기후기금 운영지원 출연 실적 및 향후 계획]

(단위: 만\$)

연도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현금	216	100	1,100	1,050	1,100	1,150	1,084				
약속 어음							4,200				
어음 현금화								1,100	1,100	1,100	900
누적액	216	316	1,416	2,466	3,566	4,716	10,000				

자료: 기획재정부

심지현 예산분석관(sjh0125@assembly.go.kr, 788-4625)

1) 코드: 일반회계 3133-331

GCF가 실질적으로 현금으로 누적 1억불을 수령하게 되는 것은 2022년까지이므로 약속어음 발행을 통한 2018년 1억불 지원은 일견 표면적인 약속이행으로 보인다.

그러나 기획재정부는 독일·일본·영국·스웨덴·네덜란드 등 5개국이 동일한 방식으로 약속어음을 활용하여 GCF에 공여한 사례가 있다고 설명하고 있으며²⁾, 약속어음은 「녹색기후기금의 운영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항의 “내국통화로 표시된 증권³⁾” 출연에 해당하므로 적법하다는 입장이다.

[GCF 재원조성을 위한 약속어음 발행 현황]

국가	통화단위	현금	약속어음
독일	EUR	-	750,000,000
일본	JPY	-	154,028,655,000
영국	GBP	-	720,000,000
스웨덴	SEK	-	4,000,000,000
네덜란드	EUR	46,300,000	53,700,000
한국	USD	58,000,000	42,000,000

자료: 기획재정부

나. 분석의견

GCF는 국내에 최초로 유치한 대형 국제기구라는 특수성이 있으나, 국고채무부담행위를 통해 특정 국제기구에 대하여 출연하는 것은 향후 국고채무부담행위의 범위를 과도하게 확대할 수 있다는 점도 감안할 필요가 있다.

국고채무부담행위는 국가의 세입세출예산 외로 운영되는 예외적인 제도라는 점을 감안할 때, 가급적 대상과 범위를 제한적으로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기획재정부의 「2018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 작성 세부지침」에서도 “국고채무부담행위가 예외적인 제도임을 감안,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최소한의 금액을 요구하며, 그 규모는 단계적으로 축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정부 수립 이후 국제기구에 대한 출연금을 국고채무부담행위로 조달한 사례는

2) 다만, 약속어음의 현금화 일정은 국가별로 GCF와 약정하였으며 비공개되고 있다.

3) \$4,200만의 약속어음 발행 시 환율에 따라 원화로 환산하여 발행할 예정이라고 기획재정부는 설명하고 있다.

1970년 아시아개발은행(ADB) 출연금(15억원) 단 한차례이며, 최근 국고채무부담행위는 주로 국방부의 군수지원 및 협력, 해양경찰청의 대형함정 건조, 국토교통부의 도로 건설 등 용도로 활용되어 왔다.

그런데 특정 국제기구에 대한 출연금을 국고채무부담행위로 편성하는 것을 허용할 경우 국고채무부담행위의 대상과 범위를 과도하게 확대할 우려가 있다. 또한, 타 국제기구에 대하여 약속어음 발행을 통한 출연을 국고채무부담행위로 인정하지 않을 경우에는 GCF 출연과의 형평성 논란이 제기될 수 있다.

기획재정부는 GCF가 신생국제기구이며 국내 첫 대형 국제기구 본부 유치사례로, 단기간에 큰 공여금액을 약속하여 국고채무부담행위를 예외적으로 활용한 경우라고 설명하고 있다.

이러한 특수성은 일정 부분 인정되나, GCF에 대하여 우리나라 외 다른 국가들도 큰 공여금액을 약속한 만큼 향후 다른 신생국제기구가 국내 뿐 아니라 해외에 설립될 경우 우리나라가 약속어음을 재차 발행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따라서 국고채무부담행위를 통한 GCF 출연은 향후 국고채무부담행위의 범위를 과도하게 확대할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가. 현 황

개도국공무원 초청연수 사업은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이하 “dBrain”) 운영 사업¹⁾의 내역사업으로, 개발도상국 의사결정권자급 재정공무원을 대상으로 재정정보화 기반의 재정제도의 혁신 및 선진화에 대한 연수프로그램을 운영함으로써, 국내 재정정보화 기술시스템의 해외진출을 위한 기반을 확보하려는 것이다.

동 내역사업은 2018년 신규로 3억 4,000만원이 반영되었으며, 기획재정부는 총 2회에 걸쳐 약 30명의 개도국 공무원에 대한 초청연수를 실시함으로써 국내 재정정보화 기술에 대한 인지도를 제고할 계획이다.

[2018년도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운영 사업 예산안 현황]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16 결산	2017		2018 예산안(B)	증감	
		본예산	추경(A)		B-A	(B-A)/A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운영	17,207	12,626	12,626	11,216	△1,410	△11.2
개도국공무원 초청연수	0	0	0	340	340	순증

자료: 기획재정부

나. 분석의견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dBrain) 수출실적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초청연수를 통한 대외 인지도 제고 외에도 ODA와의 연계를 통한 가격부담 완화 등 다각적인 방안을 함께 모색할 필요가 있다.

개발도상국의 의사결정권자급 재정공무원을 대상으로 연수사업을 실시하는 경우, dBrain에 대한 대외 인지도를 제고하고 인적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등 수출실적 제고에 일정 부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dBrain 수출 실적 부진의 원인은 대외 인지도 부족에서만 발생한다고 보기는

심지현 예산분석관(sjh0125@assembly.go.kr, 788-4625)

1) 코드: 일반회계 2713-500

어려우며, 시스템 수출 가격 면에서 이견이 발생하거나 개도국의 인프라 부족에서도 그 원인을 찾을 수 있다. 우리나라는 2012년 7월 에콰도르와의 MOU를 시작으로 총 9건의 dBrain 국제협력에 관련한 MOU를 체결하는 등 이미 개도국의 인지도가 있는 경우에도 현재까지 수출 실적은 전무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개도국 정부에 대한 ODA를 통해 가격 면에서 부담을 완화함으로써 dBrain 수출을 성사시키는 한편, 우리의 ODA 실적을 직접 제고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하는 등 dBrain 수출실적 제고를 위한 다각적인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dBrain 국제협력 관련 MOU 체결 현황]

- 한-에콰도르간 MOU 체결(2012.7)
- 한-러시아간 MOU 체결(2013.1)
- 한-온두라스 재정협력 MOU 체결(2014.10)
- 한-코스타리카 재정협력 MOU 체결(2015.1)
- 한-페루 재정협력 MOU 체결(2015.1)
- 한-콜롬비아 재정협력 MOU 체결(2015.2)
- 한-러 재정협력 MOU 체결(2015.6)
- IDB-KPFIS MOU 체결(2016.11)
- 한-파라과이 MOU 체결(2016.12)

가. 현 황

재정교육 사업¹⁾은 재정 담당 공무원 등에 대하여 재정과 관련한 교육을 수행하는 사업으로, 2018년도 예산안은 전년 대비 4억 5,200만원 감액된 8억 5,400만원이 편성되었다.

[2018년도 재정교육 사업 예산안 현황]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16 결산	2017		2018 예산안(B)	증감	
		본예산	추경(A)		B-A	(B-A)/A
재정교육	1,478	1,306	1,306	854	△452	△34.6

자료: 기획재정부

전년 대비 예산이 감액된 주요 사유는 국가회계전문교육(2억 8,500만원), 공공기관 정책워크숍(5,000만원) 등 일부 내역사업이 다른 기관 또는 사업으로 이관되었기 때문이다.

재정교육 사업은 교육주제별로 한국재정정보원, 행정연구원, 한국생산성본부 등 다양한 기관에서 위탁하여 수행하여 왔으나, 기획재정부는 위탁업무를 하나의 기관에서 전담하는 등 일원화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나. 분석의견

재정교육 사업의 운영방향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개선과제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첫째, 재정교육 콘텐츠 개발 및 강의 수행 시 한국재정정보원의 전문성을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심지현 예산분석관(sjh0125@assembly.go.kr, 788-4625)

1) 코드: 일반회계 1133-301

현재 교육콘텐츠 개발·관리 업무는 한국조세재정연구원, KDI, 법제연구원, 민간 대학 등이 담당하고 있으며, 재정정보원은 교육생 모강·교육실적 관리·강사 섭외·강의실 대여 등 주로 행정적인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그런데 한국재정정보원 내에는 dBrain의 재정정보를 활용하여 재정통계 및 재정운영 결과 등을 분석하는 ‘재정정보연구본부’가 설치되어 있으며, 동 조직은 국가재정 분석업무에 대한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한국재정정보원이 행정적인 관리 업무만을 담당하기 보다는 전문성을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교육콘텐츠를 개발하고 강의를 수행하는 역할을 확대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참고로, 재정정보원 측은 2016회계연도 결산 심의 시 향후 dBrain 정보를 활용하여 자체 교육 콘텐츠를 개발하는 등 교육 전반에 걸친 전문적인 업무를 수행할 계획을 밝힌 바 있으나, 2018년도 예산안에는 이와 관련한 구체적인 계획이 반영되어 있지 않다.

둘째, 향후 지속적으로 한국재정정보원에서 재정교육 업무를 전담하기 위해서는 「한국재정정보원법」에 재정교육 업무 위탁의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현재 재정교육 업무 위탁은 「한국재정정보원법」 제5조제1항제6호2)에 근거하여 이루어지고 있으나 동 조문은 한국재정정보원의 위탁 가능성을 포괄적으로 규정한 것에 불과하다. 따라서 한국재정정보원에 대한 재정교육 업무 위탁은 원칙적으로 일반경쟁을 통해 이루어져야 하므로 업무의 연속성을 담보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다.

따라서 한국재정정보원에서 향후 지속적으로 재정교육 업무를 전담하고자 한다면, 법률을 개정하여 재정교육 업무를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국회에서도 2016회계연도 결산 심사 시 재정교육 업무를 수의계약을 통해 한국재정정보원에 위탁한 것은 부적절하므로, 향후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별도의 근거를 마련하도록 시정요구한 바 있다.

2) 「한국재정정보원법」

제5조(사업) ① 한국재정정보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의 운영 및 관리
2. 재정 관련 통계의 관리
3.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인터넷 홈페이지의 운영
4.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의 수출 등 재정정보화 분야의 국제협력
5. 재정 분야 정보통신망 또는 이와 관련된 정보시스템에 대한 보안관제센터(사이버공격 정보를 탐지·분석하여 즉시 대응 조치를 할 수 있는 기구를 말한다)의 운영 및 관리
6. 그 밖에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등으로부터 위탁 받은 사업

한편,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³⁾을 통하여 보조금통합관리망 운영 업무가 공식적인 한국재정정보원의 업무로 규정되었으나, 「한국재정정보원법」에는 동 업무가 한국재정정보원의 사업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법률 개정 시 이를 함께 정비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셋째, 교육 프로그램을 통합하였다가 다시 분리 이관하는 등 일관성 없이 사업이 추진된 문제가 있으므로, 향후 사업계획을 면밀히 수립할 필요가 있다.

동 사업은 각 실·국에서 분산되어 수행되던 재정교육 사업을 일원화하여 추진하기 위하여 2016년부터 신규로 추진되었다.

그러나 2018년도 예산안 편성 과정에서 과거 일원화한 일부 과제들을 분리 수행하는 것이 보다 효과적이라는 판단 하에 일부 내역사업을 분리 이관하여 전년 대비 예산 규모가 대폭 감액되었다. 예컨대, 국가회계 전문교육(2억 8,500만원)은 국가회계전문센터가 있는 한국조세재정연구원에서 수행하는 것이 전문성 차원에서 바람직하다고 판단하여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자체사업으로 이관하였고, 공공기관 정책워크숍(5,000만원)과 재정포럼(4,500만원) 및 지역발전특별회계 예산편성 설명회(700만원)는 일회성 사업으로서 해당 실·국(공공정책국·재정관리국·예산실)에서 상황에 맞추어 진행하는 것이 효율적이라는 판단 하에 각 실·국으로 이관하였다.

이처럼 재정교육 체계가 일관성 있게 추진되지 못한 것은 사전에 교육주체의 전문성 및 효과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지 않은 결과라 할 것이므로, 향후 사업계획을 신중히 수립하여야 할 것이다.

3)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6조의7(보조금통합관리망의 운영 등의 총괄 및 업무의 위탁)

④ 기획재정부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국재정정보원법」에 따른 한국재정정보원(이하 이 조에서 “한국재정정보원”이라 한다)에 위탁한다.

1. 보조금통합관리망의 유지·개선 등 운영에 관한 업무
2. 보조금관리정보 및 제26조의3제1항에 따른 자료 또는 정보의 처리에 관한 업무
3.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신청, 접수, 결정, 교부 및 사후관리의 전자적 지원에 관한 업무
4. 제39조의3제1항에 따른 대국민 포털의 관리에 관한 업무

가. 현 황

한국재정정보원은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이하 “dBrain”)을 안정적으로 운영·관리하고 국가재정 관련 정책의 개발을 지원하며,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의 수출 등 재정정보화 분야의 국제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한국재정정보원법」에 의해 2016년 7월 설립되었으며, 2017년부터 기획재정부 산하 기타공공기관으로 지정되었다.

재정정보 분석¹⁾ 사업은 dBrain에 축적된 재정정보를 활용하는 등의 시의성 높은 분석을 통해 정부의 정책결정을 지원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2018년도에는 8억원의 예산이 신규로 편성되었다.

[2018년도 재정정보 분석 사업 예산안 현황]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16 결산	2017		2018 예산안(B)	증감	
		본예산	추경(A)		B-A	(B-A)/A
재정정보 분석	0	0	0	800	800	순증

자료: 기획재정부

2018년도 예산안의 세부 산출 근거는 아래와 같으며, 재정통계 분석 및 인프라 구축 사업에 5억 6,200만원, 재정집행 점검 및 컨설팅 사업 추진에 1억 6,800만원, 국내·외 재정정책 동향 모니터링을 위해 7,000만원의 예산안이 편성되었다.

안옥진 예산분석관(ojahn@assembly.go.kr, 788-3731)

1) 코드: 일반회계 2713-506

[2018년도 재정정보 분석 사업 예산안 세부내역]

(단위: 백만원)

	내용	금액	세부내역
재정통계 분석 및 인프라 구축	dBrain 연계·활용을 위한 재정정보 산출(통계분석·개발), 재정정책 개발을 위한 기초연구 및 재정당국 정책추진을 위한 수시과제 수행	562	• 연구과제(7건): 270백만원
			• 연구 인프라 구축: 292백만원
재정집행 점검 및 컨설팅	dBrain 집행정보 및 연례적 집행부진 사례 유형화를 통한 부진사유 발굴과 집행컨설팅으로 개선방안을 도출하여 사전 재정관리체계 강화 및 집행 효율성 제고	168	• 모니터링 체계 구축(이력관리 속성 연구): 73백만원
			• 모니터링 체계 구축(이력관리 시범사업 자료 구축): 40백만원
			• 현장컨설팅: 55백만원
국내·외 재정정책 동향 모니터링	선진국 및 신흥국의 재정정책 추진현황의 실시간 모니터링, 국외 거주 전문가를 통한 재정제도 전반 조사, 재정당국 수요에 따른 현지 방문을 통한 특정제도 심층 조사 수행	70	• 개도국 재정동향 분석: 10백만원
			• dBrain 수출대상국 재정제도 심층 분석: 60백만원
합 계	-	800	-

자료: 기획재정부

나. 분석의견

재정정보 분석 사업 중 재정통계 분석 등의 연구과제 사업에 대하여는 해당 세부 연구 계획을 조속히 마련할 필요가 있다.

위 표 [2018년도 재정정보 분석 사업 예산안 세부내역] 에서와 같이 2018년도 예산안에는 재정통계 분석을 위한 연구과제 7건의 수행을 위해 2억 7,000만원의 예산안이 편성되어 있다. 그런데 2018년도 수행예정인 연구 과제는 현재 정부에서 논의되고 있는 재정 혁신 및 지출구조조정에 대한 세부과제가 확정된 후 주무부처인 기획재정부와의 협의 등을 거쳐 최종 결정될 예정으로, 아직 세부 연구 계획 등이 구체적으로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다. 참고로, 조세·재정·공공기관 운영 등과 관련한 사항을 조사·연구·분석

하는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의 경우 2018년 예산안 편성 시 기본연구사업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연구사업에 대한 세부계획을 마련한 바 있다.

[기본 연구사업 세부계획 -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단위: 천원)

	기본연구과제명	연구예산	연구기간
	총 22건(수시포함)	3,833,000	-
1	법인세 최저한세제 운용기조에 대한 평가와 시사점	30,200	3.1.~12.31.
2	화물차 유가보조금 제도의 개선방안 연구: 환경세제 측면을 중심으로	46,100	3.1.~12.31.
3	저성장시대의 조세정책 방향: 성장과 고용지원 기능을 중심으로	96,100	3.1.~12.31.
...	(생략)	(생략)	(생략)

자료: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18년도 수행할 연구 과제는 재정통계 활용 등 재정현안에 적극 대응할 수 있어야 한다. 현재 재정당국의 세부과제가 확정되지 않은 단계로 구체적인 연구사업 세부계획의 마련이 어렵다는 의견이 있을 수 있으나, 세부계획의 마련 없이 예산이 집행될 경우 불필요한 연구과제의 수행 또는 불용 등이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예산안 편성의 목적에 맞게 연구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세부 계획을 조속히 마련할 필요가 있다

가. 현 황

국가경쟁력 분석 및 강화전략 수립 사업¹⁾은 우리나라 국가경쟁력을 평가·분석하고 취약 분야에 대한 개선과제를 발굴하여 중장기 국가경쟁력 강화전략을 수립하기 위한 사업으로, 2018년도 예산안은 전년과 동일한 1억 2,700만원이 편성되었다.

[2018년도 국가경쟁력 분석 및 강화전략 수립 사업 예산안 현황]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16 결산	2017		2018 예산안(B)	증감	
		본예산	추경(A)		B-A	(B-A)/A
국가경쟁력 분석 및 강화 전략 수립	139	127	127	127	0	0.0

자료: 기획재정부

동 사업은 보고서 인쇄 등을 위한 소액의 일반수용비(500만원)를 제외하면, 전액 국가경쟁력 분석 및 강화전략 수립을 위한 정책연구비로 구성되어 있다(1억 2,200만원).

나. 분석의견

우리나라의 국가경쟁력은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으나, 그 원인을 분석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한 국가경쟁력 강화전략의 내용이 공개되지 않아, 전략의 적절성 및 국가정책에의 반영 여부 등을 파악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다.

우리나라의 국가경쟁력은 WEF(세계경제포럼) 평가 결과 2008년 13위에서 2016년 26위까지 낮아졌고, IMD(국제경영개발대학원, 스위스) 평가 결과로는 2008년 31위에서 2011년 22위까지 상승하였으나, 이후 2017년 29위까지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추세에 있다.

심지현 예산분석관(sjh0125@assembly.go.kr, 788-4625)

1) 코드: 일반회계 1133-301

[우리나라의 WEF 및 IMD 국가경쟁력 순위]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WEF	13	19	22	24	19	25	26	26	26	미정
IMD	31	27	23	22	22	22	26	25	29	29

자료: 기획재정부 제출자료를 참고하여 재작성

기획재정부는 노동·금융 등 평가결과 취약 부문²⁾을 중심으로 국가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한 연구용역을 실시하여 이를 정책에 반영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연구용역 보고서의 내용이 대외에 공개되지 않아, 국가경쟁력이 낮은 원인이 제대로 분석되었는지,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전략이 제대로 마련되었는지, 준비된 전략이 실제로 국가정책에 반영되었는지 여부 등을 파악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다.

기획재정부는 IMD의 저작권 보호를 받고 있는 평가보고서를 상세히 인용한 우리 측 보고서를 공개하는 경우 저작권법 위반 소지가 있으며, 우리 측 보고서는 국가경쟁력 관련 정부정책의 결정·수립을 위해 내부적으로 검토·참고하는 자료이므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5호³⁾에 따라 비공개가 원칙이라는 입장이다.

그러나 국가경쟁력 강화 정책의 성과를 점검하고 행정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일정 부분 공개가 필요하다고 보인다. 우선 IMD 평가보고서의 인용 부분도 언론 등에 대외공개된 주요내용 위주로 선별해 공개할 수 있고, 저작권법 상 공정이용(Fair Use) 법리⁴⁾에 따라 공익 목적으로 필요부분만 인용⁵⁾하는 한편, 더 나아가 사용허가를 얻는다면

2) 2016년 WEF 평가 결과 우리나라의 노동 부문은 77위, 금융 부문은 80위에 그쳤음.

3)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비공개 대상 정보) ①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공개 대상이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5. 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이나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4) 「저작권법」

제35조의3(저작물의 공정한 이용) ① 제23조부터 제35조의2까지, 제101조의3부터 제101조의5까지의 경우 외에 저작물의 통상적인 이용 방법과 충돌하지 아니하고 저작자의 정당한 이익을 부당하게 해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다.

② 저작물 이용 행위가 제1항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이용의 목적 및 성격

2. 저작물의 종류 및 용도

3. 이용된 부분이 저작물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그 중요성

4. 저작물의 이용이 그 저작물의 현재 시장 또는 가치나 잠재적인 시장 또는 가치에 미치는 영향

저작권 문제도 해결가능할 것이다. 또한 연구용역보고서의 원문이 아니더라도 국가경쟁력 강화전략의 방향과 주요 내용, 그리고 동 전략의 향후 정책반영 성과 등을 발췌하여 공개함으로써 성과 점검 및 투명성 제고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동 보고서는 우리의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미래 비전을 제시하는 내용으로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의 비공개 요건인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5) IMD도 IMD가 작성한 문서를 인용할 경우 “공정이용”의 원칙에 따라 활용하도록 밝히고 있다.
“Reproduction in published documents(e.g. articles, brochures, books, and websites) should adhere to “fair use” copyright principles and support an argument or highlight a trend.”
<https://worldcompetitiveness.imd.org>

가. 현 황

일시차입금 이자상환 사업¹⁾은 국고금 출납시 일시 부족자금 충당을 위해 조달한 재정증권 발행자금 및 한국은행에서 일시차입한 자금에 대한 이자지급을 위한 것으로, 2018년도 예산안은 전년과 동일한 270억원이 편성되었다.

[2018년도 일시차입금 이자상환 사업 예산안 현황]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16 결산	2017		2018 예산안(B)	증감	
		본예산	추경(A)		B-A	(B-A)/A
일시차입금 이자상환	0	27,000	27,000	27,000	0	0.0

자료: 기획재정부

나. 분석의견

2018년도 국세수입 전망이 양호할 것이 예상되고 현재 국고금 수익금 잔액 규모가 매우 크다는 사실을 고려할 때 동 사업의 지출수요가 발생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으나, 동 사업의 예비적 성격도 함께 감안하여 국회 심의과정에서 적정 사업규모를 논의할 필요가 있다.

국세수입이 부족한 경우 차입금 수요가 커져 이자지급을 위한 동 사업의 지출규모도 커지게 되고, 국세수입에 여유가 있는 경우에는 차입금 수요가 크지 않으므로 동 사업의 지출수요 또한 발생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실제로 2016년에는 세수여건이 개선되어 초과세입이 발생함에 따라 일시차입금 이자상환 수요가 발생하지 않아 사업비가 전액 불용되었고, 2017년에도 동일한 사유로 사업비가 전액 불용될 가능성이 클 것으로 전망된다.

그런데 국회예산정책처의 2018년 국세수입 전망에 따르면, 2018년에도 세수여건이 비교적 양호하여 초과세입이 발생할 것이 전망되므로, 동 사업의 지출수요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²⁾

심지현 예산분석관(sjh0125@assembly.go.kr, 788-4625)

1) 코드: 일반회계 1133-301

2) 국회예산정책처는 2018년도 국세수입 규모를 정부 예산안을 3.9조원 상회하는 272.1조원으로 전망하고 있다.

한편, 국고금 운용과정에서 수익이 발생하는 경우 기획재정부는 이를 한국은행 차입금 이자, 재정증권 발행이자 지급 등에 우선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그런데 최근 국고금 운용수익 발생현황을 살펴보면, 2013년 이후 매년 수익금 잔액이 증가하고 있으며, 2017년 8월 현재 수익금 잔액은 1,386억원으로 최근 5년간 최대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 따라서 2017년말 누적된 국고금 운용수익이 2018년 부족자금 발생 시 차입 이자비용 충당에 우선적으로 활용될 수 있다는 사실을 감안할 때, 2018년에 동 사업에 산이 활용되지 않을 가능성이 더욱 크다 할 것이다.

[연도별 국고금 운용수익 사용 현황]

(단위: 억원)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8월
전년도 이월액(A)	877	1,192	2,825	1,128	-	26	82	786
운용수익(B)	676	1,996	1,118	333	483	545	1,259	759
수익금 사용액(C)	361	363	2,815	1,461	457	489	555	159
수익금 잔액(A+B-C)	1,192	2,825	1,128	-	26	82	786	1,386

주: 수익금 사용액은 차입이자 지급, 재정증권 발행이자 등임. 다만, 2012년은 예외적으로 운용수익금 중 1,000억원을 일반회계 세입으로 이입하였음

자료: 기획재정부

다만, 동 사업은 예상하지 못한 국고금 부족 사태 발생 시 차입한 자금에 대한 이자비용 지출을 위한 것이므로 조속한 시일 내에 집행되어야 하는 특성을 지니고 있다. 이를 감안할 때, 동 사업을 폐지하고 예비비로 대체하는 경우, 예비비 배정을 위한 행정절차에 시일이 소요되어 즉각적으로 차입이자를 지급하지 못함에 따라 불필요한 추가비용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부족자금 발생 시 적시에 대응해야 할 동 사업의 예비적인 성격을 감안할 때 동 사업을 존치할 필요성이 인정되나, 효율적인 재정운용의 필요성을 고려하여 국회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동 사업의 적정 규모에 대하여 논의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가. 현 황

기획재정부는 소관 일반회계 세입대상 36개 출자기관을 대상으로 「국유재산법」 및 「정부배당 업무처리에 관한 지침」 등에 따라 각 기관별 배당수준을 결정, 이익금처리승인(주주총회, 기획재정부, 주무부처 등) 후 배당 세입 조치를 하고 있으며, 정부출자수입¹⁾ 중 2018년 한국감정원 출자수입 예산안은 전년 대비 20억원 감소한 7억 1,200만원으로 편성되었다.

[2018년도 정부출자수입 예산안 현황]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16 결산	2017		2018 예산안(B)	증감	
		본예산	추경(A)		B-A	(B-A)/A
정부출자수입(한국감정원)	2,478	2,712	2,712	712	△2,000	△73.8

주: 2017년 정부출자수입은 2016년 결산이익을 대상을 산출하고, 2018년 예산안은 2017년 추정이익을 고려한 예상액임

자료: 기획재정부

기획재정부의 2018년도 한국감정원 정부출자수입 예산안은 2017년 추정 당기순이익 42억 4,100만원에 대하여 34%의 배당성향과 정부지분율(49.4%)을 곱하여 산출하였다.

나. 분석의견

한국감정원의 감정평가업무가 2016년 9월에 민간으로 이양되어, 용도상실된 손해배상적립금(임의적립금) 261억원과 보유 중인 850억원의 금융성자산 규모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배당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한국감정원은 그 동안 (구)「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에 의거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감정평가수수료의 100분의 2 이상을 기타법정

이은경 예산분석관(eunkylee@assembly.go.kr, 788-4682)

1) 코드: 일반회계 52-521

적립금²⁾으로 적립하였으며, 2016년 말 현재 잔액은 159억 800만원이다. 또한, 기타법정적립금과는 별도로 감정평가 업무와 관련된 소송위험에 대비하여 손해배상적립금(임의적립금)을 적립하고 있으며, 2016년 말 현재 잔액은 260억 9,000만원이다. 두 적립금의 2016년 말 합계액은 총 419억 9,800만원이다. 적립금의 적립 외에도 한국감정원은 보상한도가 연간 10억원 내외의 감정평가업무 전문인배상보험에도 가입 중이다.

[한국감정원의 손해배상 관련 기타법정적립금, 손해배상적립금 적립 현황]

(단위: 백만원)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기타법정적립금	13,470	14,213	15,000	15,908
손해배상적립금(임의적립금)	26,090	26,090	26,090	26,090
합 계	39,560	40,303	41,090	41,998

자료: 한국감정원

한국감정원은 감정평가업무를 2016년 9월에 민간으로 완전히 이양하여 2017년 이후에는 기타적립금과 손해배상적립금(임의적립금)을 적립할 필요가 없다³⁾. 기적립된 419억 9,800만원 중 손해배상적립금(임의적립금) 260억 9,000만원은 용도가 즉시 소멸되었으며, 기타법정적립금 159억 800만원은 채권의 법정소멸시효 기간인 10년 이후에 용도가 사라질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손해배상적립금의 향후 사용가능성 등을 파악하기 위하여 감정평가 관련 소송 및 손해배상을 확인한 결과, 2008년에 169억 8,200만원, 2013년에 6,500만원 두 건이 있었고, 최근 5년 동안 임의적립금의 소송 및 손해배상을 위한 사용이 없었던 것으로 파악된다. 다만, 2017년 7월 현재 3억 1,700만원 규모의 소송이 진행 중에 있다.

2) (구)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손해배상을 위한 보험가입 등)

① 감정평가업자는 법 제3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보장보험에 가입하거나 제78조의 규정에 의한 감정평가협회가 운영하는 공제조합에 가입하고, 보증보험에 가입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감정평가업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증보험에 가입하는 경우에는 당해 보험의 보험가입금액은 감정평가가 1인당 1억원 이상으로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법률 제7335호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개정법률 부칙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은 법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감정평가수수료의 100분의 2 이상을 손해배상충당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적립된 손해배상충당금은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 없이는 이를 다른 용도에 사용할 수 없다.

3) 2016년 9월 이전에 수입하여 진행 중인 감정평가 업무는 추가 적립이 필요하다.

[감정평가 소송 및 손해배상 현황]

(단위: 건, 백만원)

소장접수시기	건수	규모(소송가액)	비고
1999	1	19,497	1건 일부패소(2011년 16,982)
2010	3	462	1건 일부패소(2013년 65)
2011	2	2,008	전부승소
2012	4	556	전부승소
2013	1	619	전부승소
2014	2	411	전부승소
2015	0	0	0
2016	0	0	0
2017.7	1	317	진행 중
합계	14	23,870	2건 일부패소(17,046)

자료: 한국감정원

한국감정원은 공시통계, 부동산시장관리, 보상수탁사업 등을 수행하여 안정적으로 당기순이익을 확대하고 있다. 당기순이익은 2013년에 서울사옥 매각에 따른 특이한 변동 을 제외하면, 2012년 13억 7,600만원에서 2016년에는 139억 8,900만원까지 증가하였다. 확대되고 있는 당기순이익은 기타적립금 적립과 배당 후에 사내 금융성자산의 형태로 유 보 중이며, 2016년 말 현재 금융성자산은 849억 5,200만원에 이른다.

[한국감정원 당기순이익, 금융성자산 현황]

(단위: 백만원)

	2012	2013	2014	2015	2016
당기순이익	1,376	173,443	9,566	12,435	13,989
금융성자산	145,839	138,198	64,587	75,160	84,952

자료: 한국감정원

한편, 한국감정원의 정관에 따르면, 이익금을 이월손실금의 보전, 자본금의 50%에 달할 때까지 이익준비금 적립, 이익의 배당, 이익준비금 외의 적립금(기타법정적립금, 임의적립금)으로 적립의 순서로 처리하고 있다. 한국감정원은 결손금이 없고, 자본금 90억원의 50%인 45억원을 이익준비금으로 적립 중이며, 손해배상적립금(임의적립금)도 2011년 이후에는 추가 적립하지 않고 있으므로, 당기순이익을 포함한 이익금은 기타법정적립금 적립과 배당으로 처리가능하다.

따라서 한국감정원의 기업환경변화(감정평가업무 중단)에 따른 적립금의 용도상실과 금융성자산 형태로 사내 유보 중인 자금의 규모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배당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국 세 청

1

현황

2018년도 국세청 소관 예산안은 일반회계, 혁신도시건설특별회계로 구성된다.

2018년도 국세청 소관 세입예산안은 1조 2,567억 5,400만원으로 전년 대비 1,874억 4,100만원(17.5%) 증가하였다. 국세청 소관 세입 총계는 총수입과 동일하다.

[2018년도 국세청 소관 세입예산안]

(단위: 백만원, %)

	2016 결산	2017		2018 예산안(B)	증감	
		본예산	추경(A)		B-A	(B-A)/A
일반회계	1,041,696	1,061,740	1,061,740	1,197,769	136,029	12.8
혁신도시건설특별회계	0	7,573	7,573	58,985	51,412	678.9
합 계	1,041,696	1,069,313	1,069,313	1,256,754	187,441	17.5

주: 총계 기준

자료: 국세청

2018년도 국세청 소관 세출예산안은 1조 6,797억 3,200만원으로 전년 대비 695억 2,500만원(4.3%) 증가하였다. 국세청 소관 세출 총계는 총지출과 동일하다.

[2018년도 국세청 소관 세출예산안]

(단위: 백만원, %)

	2016 결산	2017		2018 예산안(B)	증감	
		본예산	추경(A)		B-A	(B-A)/A
일반회계	1,520,167	1,610,207	1,610,207	1,679,732	69,525	4.3

주: 총계 기준

자료: 국세청

국세청의 2018년도 신규사업은 총 1개 사업, 55억 5,200만원 규모이다. 홈택스상담센터 운영 사업은 기존에 3개 사업에 편성되어 있던 상담센터용역 예산을 통합 편성한 사업이다.

[국세청 2018년도 예산안 신규사업]

(단위: 백만원)

	세부사업명	2018 예산안
일반회계(1개)	홈택스상담센터 운영	5,552

자료: 국세청

2018년도 주요 증액사업을 살펴보면 ① 납세자 권익보호 및 성실납세지원 ② 기관운영기본경비 ③ 대구청 기본경비 ④ 국세상담센터기본경비 사업 등이 전년 대비 증액되었다. 납세자 권익보호 및 성실납세지원 사업은 납세자보호위원회 운영비 7억 4,000만원이 신설되어 증액되었고, 기관운영기본경비 사업은 위탁으로 수행되던 청소용역 등의 직접고용 전환으로 증액되었다. 대구청 기본경비는 수성세무서 개청에 따른 임차료가 반영되어 증액되었으며, 국세상담센터기본경비 사업은 총액 비대상 예산 일부를 이관하여 증액되었다.

[국세청 2018년도 예산안 주요 증액사업]

(단위: 백만원, %)

	세부사업	2017		2018 예산안(B)	증 감	
		본예산	추경(A)		B-A	(B-A)/A
일반회계 (5개)	납세자 권익보호 및 성실납세지원	845	845	1,162	317	37.5
	인건비	1,124,044	1,124,044	1,179,078	55,034	4.9
	기관운영기본경비(총액인건비)	19,267	19,267	30,411	11,144	57.8
	대구청 기본경비	7,175	7,175	9,550	2,375	33.1
	국세상담센터기본경비(총액인건비)	231	231	982	751	325.1
합 계		44,696	44,696	63,304	18,608	41.6

주: 주요 증액사업은 2017년도 추경예산 대비 30% 이상 또는 100억원 이상 증액된 사업

자료: 국세청

2018년도 국세청 예산안의 주요 특징을 살펴보면, ① 기존 3개 사업의 내역사업으로 각각 편성되어 있던 상담센터용역 예산을 홈택스 상담센터 운영 사업으로 통합하였고, ② 본청 납세자보호위원회 신설 및 외부위원 선임과 관련된 비용이 편성되었다.

2018년도 국세청 소관 예산안에 대한 분석 결과 예산안의 심의 및 향후 집행에 있어서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한 고려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첫째, 국세청은 상담용역예산을 통합 편성하는 과정에서 위탁사업비만을 통합편성 하였고, 이에 소요되는 공공요금 예산을 통합 편성하지 않았다.

둘째, 효과적인 납세자보호를 위하여 다양한 직업군으로 납세자보호위원회 외부위원을 구성하고 국세공무원 출신 비율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

가. 현 황

납세자 권익보호 및 성실납세지원 사업¹⁾은 성실한 납세자가 우대와 존경을 받는 성실납세문화가 확산되도록 다양한 우대 혜택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납세자보호관 및 납세보호위원회를 운영하는 사업이다. 2018년도 예산안은 전년 대비 3억 1,700만원(37.5%) 증가한 11억 6,200만원이다.

동 사업의 내역사업인 납세자보호위원회 운영 사업은 「국세기본법」²⁾ 및 동법 시행령³⁾에 따라 설치된 납세자보호위원회의 운영과 관련된 예산으로 2018년도 예산안에 7억 4,000만원이 신규 반영되었다.

정수현 예산분석관(shjeong@assembly.go.kr, 788-3736)

1) 코드: 일반회계 3133-300

2) 「국세기본법」

제81조의18(납세자보호위원회) ① 다음 각 호의 안건을 심의하기 위하여 세무서 및 지방국세청에 납세자보호위원회를 둔다.

1. 세무조사 대상 과세기간 중 연간 수입금액 또는 양도가액이 가장 큰 과세기간의 연간 수입금액 또는 양도가액이 100억원 미만(부가가치세에 대한 세무조사의 경우 1과세기간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50억원 미만)인 납세자(이하 이 조에서 "중소규모납세자"라 한다) 이외의 납세자에 대한 세무조사(「조세범 처벌절차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조세범칙조사"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기간의 연장. 다만, 제81조의8제1항제6호에 따라 조사대상자가 해명 등을 위하여 연장을 신청한 경우는 제외한다.
2. 중소기업납세자 이외의 납세자에 대한 세무조사 범위의 확대
3. 제81조의8제3항에 따른 세무조사 기간 연장에 대한 중소기업납세자의 세무조사 일시중지 및 중지 요청
4. 세무조사 중 위법·부당한 세무조사에 대한 납세자의 세무조사 일시중지 및 중지 요청
5. 세무서장 및 지방국세청장이 심의를 요구하는 안건
6. 그 밖에 납세자보호담당관이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안건

3)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3조의16(납세자보호위원회) ① 법 제81조의18에 따른 납세자보호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위원으로 구성한다.

1. 세무서에 두는 위원회: 14명 이내의 위원
2. 지방국세청에 두는 위원회: 18명 이내의 위원

[2018년도 납세자 권익보호 및 성실납세지원 사업 예산안 현황]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16 결산	2017		2018 예산안(B)	증감	
		본예산	추경(A)		B-A	(B-A)/A
납세자 권익보호 및 성실납세지원	271	845	845	1,162	317	37.5
납세자보호위원회 운영	0	0	0	740	740	순증

자료: 국세청

나. 분석의견

첫째, 동 사업은 정부가 제출한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통과를 전제로 한 것이므로 법안의 국회 심사 경과를 반영할 필요가 있다.

정부는 지난 9월 1일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출하였는데, 이에 따르면 본청에 납세자보호위원회를 신설하고, 시행령을 함께 개정하여 납세자보호(담당)관을 제외한 위원을 모두 외부위원으로 구성하여 독립성을 강화할 예정이다. 2018년도 예산안에는 납세자보호위원회의 운영비 7억 4,000만원이 신설되었으며 그 세부 내역은 아래와 같다.

- 본청 납세자보호위원회 외부위원 수당
6,300만원 = 8명 × 30만원 × 26회
- 지방청 납세자보호위원회 외부위원 수당
1억 7,300만원 = 8명 × 6개청 × 20만원 × 18회
- 세무서 납세자보호위원회 외부위원 수당
(1·2군 세무서) 4억 6,600만원 = 6명 × 97개 세무서 × 20만원 × 4회
(3군 세무서) 3,800만원 = 4명 × 24개 세무서 × 20만원 × 2회

법안이 통과되지 않을 경우 동 사업이 추진될 수 없으므로, 법안의 국회 심사 경과를 반영하여 예산안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

둘째, 다양한 직업군으로 납세자보호위원회 외부위원을 구성하고 국세공무원 출신 비율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

현재 「국세기본법」 및 동법 시행령에 따른 납세자보호위원회는 지방청별 9명(외부 5명, 내부 4명), 세무서별 7명(외부 4명, 내부 3명)으로 구성된다. 그러나 국세청에 따르면 2016년 기준 납세자보호위원회의 외부위원 949명 중 17.7%인 168명이 국세공무원 출신이었다.

[납세자보호위원회 외부위원 구성 현황]

(단위: 명)

구 분	합 계	세무사	회계사	교수	변호사	기타
	국세공무원출신(비율)					
2014	915	458	197	113	135	12
	188(20.5%)					
2015	925	460	197	116	139	13
	192(20.8%)					
2016	949	423	233	105	173	15
	168(17.7%)					

자료: 국세청

국세청은 납세자보호위원회 심의의 공정성 및 독립성을 제고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으며, 국세공무원 출신 외부위원 비중을 줄이기 위해 노력하여 2016년 국세공무원 출신 외부위원 비중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납세자보호위원회가 위법·부당한 세무조사에 대한 중단 요청이나 중소규모납세자의 조사기간 연장에 대한 이의 제기 등을 심의하는 기관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다양한 직업군으로 납세자보호위원회 외부위원을 구성하되 국세공무원 출신 비율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

셋째, 성과지표를 마련하여 납세자보호 성과를 관리할 필요가 있다.

동 사업은 2017년까지 ‘납세자권익보호 관련 제도 발굴 건수’, ‘국선대리인 신청비율’을 성과지표로 관리하고 있었다. 그러나 2018년 성과계획서 제출 당시 단위사업 기준으로 10억원 미만의 소액사업이 성과관리 대상에서 제외되었으며, 이때의 예산안은 9억 6,900만원에 불과하여 성과계획서 작성 대상에서 제외되었다.

그러나 납세자보호는 국세청 중점 추진과제이기도 하다는 점에서 성과관리의 필요성이 있다. 또한 최종적으로 편성된 예산안의 규모 역시 11억 6,200만원으로 10억원을 초과하므로 성과관리 대상에 포함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따라서 국세청은 납세자보호위원회의 실적을 평가할 수 있는 성과지표를 신설하여 성과를 관리할 필요가 있다.

III

개별 사업 분석

1

납세조합 법정교부금 제도 개선 필요

가. 현황

납세조합 법정교부금 사업¹⁾은 세법상 원천징수의무가 없는 외국기관 등에 근무하는 근로소득자와 농축수산물 판매업자 등 과세기반이 취약한 사업자들의 세원관리 및 납세편의를 위해 조직된 납세조합에게 일정비율의 교부금을 지급함으로써 납세조합의 운영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2018년도 예산안은 전년 대비 1억 7,800만원 감소한 33억 9,200만원이 편성되었다.

[2018년도 납세조합 법정교부금 사업 예산안 현황]

(단위: 백만원, %)

	2016 결산	2017		2018 예산안(B)	증감	
		본예산	추경(A)		B-A	(B-A)/A
납세조합 법정교부금	3,293	3,570	3,570	3,392	△178	△5.0

자료: 국세청

나. 분석의견

사업자 납세조합의 교부금 지급 기준을 근로자 납세조합에 상응하는 수준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으며, 장기적으로는 납세조합에 대한 교부금 지급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

납세조합 법정교부금이란 「소득세법」²⁾ 및 동법 시행령³⁾에 근거하여 원천징수 의무가

정수현 예산분석관(shjeong@assembly.go.kr, 788-3736)

1) 코드: 일반회계 2136-300

2) 「소득세법」

제150조(납세조합의 징수의무) ① 제149조에 따른 납세조합은 그 조합원의 제127조제1항제4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매월 징수하여야 한다.

② 제149조제2호에 따른 사업자가 조직한 납세조합이 그 조합원에 대한 매월분의 소득세를 제1항에 따라 징수할 때에는 그 세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하고 징수한다.

③ 제149조제1호에 따른 자가 조직한 납세조합이 그 조합원에 대한 매월분의 소득세를 제1항에 따라 징수할 때에는 그 세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하고 징수한다. (후단 생략)

없는 외국기관 및 외국법인으로부터 급여를 받는 근로소득자 및 농·축·수산물 판매업자, 노점상인 등 영세사업자가 납세조합을 조직하여 자체적으로 소득세를 징수·납부한 경우, 소득세 징수세액의 일정 비율을 교부금으로 지급하는 제도이다.

1962년 「소득세법」 개정 당시 도입되었으며, 가장 및 신고능력이 부족한 영세판매업자와 을종근로소득자의 신고편의를 위하여 한정적 범위에서 납세조합을 조직하도록 하고 조합 설립을 유인하기 위하여 세액공제(현행 10%) 혜택과 납세조합 운영비 충당을 위한 교부금 지급 제도를 두었다. 2016년 기준 납세조합은 94개, 조합원 수는 17,687명이다.

국세청은 납세조합이 자체적으로 소득세를 징수·납부한 경우 소득세 징수세액의 일정 비율을 교부금으로 지급하고 있다. 그러나 근로자 납세조합의 경우 월 징수 납부세액의 2%, 사업자 납세조합의 경우 월 징수 납부세액에 따라 5~10%를 지급하는 등 교부율이 상이하여 형평성이 문제될 가능성이 있다. 2018년도 예산안 역시 근로자 납세조합 예상교부율 2.0%, 사업자 납세조합 예상교부율 8.79% 기준으로 편성하였다.

[납세조합교부금 지급기준]

납세조합유형	월 징수 납부세액	교부금 지급기준
근로자 납세조합	월 징수 납부세액 전액	월 징수 납부세액의 2%
사업자 납세조합	500만원 이하	월 징수 납부세액의 10%
	500만원 초과 1,000만원 이하	50만원+5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7.5%
	1,000만원 초과	87만 5천원+1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5%

자료: 국세청

특히, 2016년 납세조합 징수금액에서 사업자 납세조합의 징수 세액은 7억원으로 전체 징수금액 1,501억원의 0.5%에 불과함에도 법정교부금 지급액은 6,000만원으로 전체 지급액의 1.8%를 점유하고 있어 사업자 납세조합의 법정교부금 지급액의 비효율이 상대적으로 크다.

제169조(교부금의 지급) 국세청장은 제150조에 따라 소득세를 징수하여 납부한 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3) 「소득세법 시행령」

제221조(교부금의 지급) ① 국세청장은 법 제150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조합이 매월 징수·납부한 소득세액의 100분의 2 내지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의 범위 안에서 납세조합이 징수·납부한 세액, 조합원수, 업종의 특수성, 조합운영비등을 고려하여 당해 납세조합에 교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연도별 납세조합 현황]

(단위: 개, 명, 억원)

구분	2014년			2015년			2016년		
	합계	근로자	사업자	합계	근로자	사업자	합계	근로자	사업자
조합 수	104	22	82	101	21	80	94	21	73
조합원 수	19,938	11,671	8,267	18,708	10,858	7,850	17,687	10,916	6,771
징수 세액	1,470	1,460	10	1,423	1,415	8	1,501	1,494	7
교부금	24.5	23.7	0.8	32.3	31.5	0.8	32.9	32.3	0.6
조합당 (백만원)	23.6	107.8	1.00	31.9	149.8	0.99	35.0	153.8	0.87

자료: 국세청

납세조합징수제도는 ① 「소득세법」상 원천징수의무가 없는 외국기관 및 외국법인에 대한 과세자료 수집이 어렵고, ② 세법지식이 부족한 조합원들에게 개별적으로 소득세 신고·납부를 요구할 경우 납세자부담이 증가하며, ③ 영세사업자의 정확한 과세자료 확보에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다는 사유⁴⁾로 유지되어 왔다.

그러나 동 제도는 국가가 세금을 징수하지 않고 민간에 그 징수를 위탁하고 있다는 점에서 현대 조세국가의 세정제도에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다. 현금영수증제도나 홈택스서비스 등 전자세정기반이 구축되어 납세조합원이나 영세사업자 등을 위한 납세환경 역시 개선되고 있으며, 납세조합을 통한 징수 시 교부금 외 별도로 10%의 납세조합공제 혜택이 적용되고 있다는 점에서 내국세 대비 징세 효율성 역시 낮다.

[100원당 징세비]

(단위: 원)

구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내국세	0.70	0.72	0.75	0.71	0.65
납세조합	2.26	2.35	2.06	2.03	2.03

주: 납세조합의 징세비는 [교부금청구액/소득세징수납부세액 × 100]의 결과값임

자료: 국세청

따라서 국세청은 ① 단기적으로는 사업자 납세조합의 교부율을 근로자 납세조합에 상응하는 수준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으며, ② 장기적으로는 납세조합 유형별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조합의 존속 필요성에 대해 재검토하고, 국세청에서 원천자료를 개발하여 직접 징세업무를 수행하는 등의 장기적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4) 국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1년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승인의 건 검토보고서」, 2002.10. pp. 348~350.

가. 현 황

국세행정전산화 사업¹⁾은 엔티스(NTIS), 정보보안시스템, 우편물자동화시스템, 법령정보시스템, e-민원실, 정보화센터 등 국세 행정업무 수행을 위한 각종 전산시스템을 안정적으로 운영·유지보수하고 전산장비 교체, 국세통신망 운영 등 정보화 사업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2018년도 예산안은 전년 대비 36억 6,400만원 증가한 927억 2,200만원이다.

동 사업의 내역사업인 엔티스 기능추가 개발 예산으로는 전년 대비 12억 5,600만원 증가한 22억 9,400만원이 반영되었다. 이는 주로 부가세 대리징수 기능 추가 개발 등 총 4개의 개발 예산으로 구성되어 있다.

[2018년도 국세행정전산화 사업 예산안 현황]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16 결산	2017		2018 예산안(B)	증감	
		본예산	추경(A)		B-A	(B-A)/A
국세행정전산화	82,717	89,058	89,058	92,722	3,664	4.1
엔티스 기능추가 개발	2,026	1,038	1,038	2,294	1,256	121.0

자료: 국세청

[2018년 엔티스 기능 추가개발 계획]

(단위: 백만원)

개발 예정	예산안
체납정리 고도화 기능 추가 개발	764
부가세 대리징수 기능 추가 개발	694
종교인 과세 기능 추가 개발	407
공익법인 통합관리 기능 추가 개발	101

자료: 국세청

정수현 예산분석관(shjeong@assembly.go.kr, 788-3736)

1) 코드: 일반회계 7133-500

나. 분석의견

국세청은 부가세 대리징수 기능 개발 예산과 관련하여 정부가 제출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논의 경과를 반영할 필요가 있으며, 관련 업계와의 지속적 협의를 통해 제도시행에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

우리나라의 부가가치세 제도는 거래 시 매출자가 매입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납부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2017년 9월 정부가 제출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에서는 부가가치세 탈루가 많은 유흥주점업 등의 업종을 대상으로 신용카드 등을 통한 거래 발생 시 해당 부가가치세액을 사업자 대신 신용카드사가 대리 납부하는 제도를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신용카드 등 결제금액에 대한 부가가치세 대리납부제도 도입]

현 행	개정안(「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10)
〈신 설〉	□ 신용카드 등 결제금액에 대한 부가가치세 대리납부제도 ○ (요건) 소비자가 신용카드(직불·선불카드 포함)로 결제하는 경우 ○ (대상업종) 체납률 등을 고려하여 시행령으로 규정(예: 유흥주점업 등) － 과세관청은 적용대상 사업자에게 동 제도가 적용되는 과세기간 시작일의 1개월 전까지 통지 * 신규사업자는 사업자등록 발급시에 통지하여 최초 과세기간부터 적용 ○ (대리납부자) 신용카드사 ○ (대리납부금액) 신용카드 결제금액(봉사료 제외)의 4/110(공급가액의 4%) * 대리납부한 금액은 해당 사업자가 기 납부한 부가가치세액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신고시 정산 ○ (대리납부 기한) 매 분기가 끝나는 날의 다음 달 25일 ○ (세액공제) 대리납부 금액에 시행령으로 정하는 비율(1% 내외) 을 곱한 금액 * 납부세액을 한도로 세액공제 ○ (적용기한) '21.12.31.(3년간)

자료: 기획재정부, 「2017년 세법개정안」, 2017.8.2.

2018년도 예산안에는 국세청·여신금융협회·카드사 간 부가가치세 대리납부에 필요한 각종 정보를 송·수신하고, 카드사별 대리납부 정보를 통합 관리하는 전산시스템 구축 예산이 반영되었다.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에서 통과되지 않을 경우 이와 관련된 엔티스 기능 추가 개발이 추진될 수 없으므로, 동 개정안의 향후 국회 심의 경과를 반영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또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정부안과 같이 통과될 경우 부가가치세 대리납부제 조항인 제106조의10 개정규정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며, 법 시행 이전에 부가가치세 대리납부에 필요한 전산시스템이 국세청 뿐만 아니라 신용카드사에도 구축되어 있어야 한다. 개정규정 제6항에서도 “국세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신용카드업자에게 제1항에 따른 납부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새로운 제도의 시행에 앞서 시스템 구축에 따른 비용분담 여부 등 관련 업계와의 협의를 선행될 필요가 있다. 따라서 국세청은 관련 업계와의 지속적 협의를 통해 지원 계획 및 신용카드사의 시스템 구축 방안 등을 마련하여, 제도 시행에 대비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가. 현 황

홈택스상담센터 운영 사업¹⁾은 기존 3개 사업의 내역사업으로 각각 편성되어 있던 상담센터용역 예산을 통합 편성한 사업으로, 2018년도 예산안은 55억 5,200만원이 편성되었다.

국세청은 ① 현금영수증, ② 취업후학자금상환, ③ 신고납부·증명발급, ④ 연말정산, ⑤ 전자세금계산서 등 5개 분야에 대한 상담업무를 현금영수증제도 활성화 지원 사업²⁾, 취업후학자금 상환제도 운영지원 사업³⁾, 국세행정전산화 사업⁴⁾에서 나누어 편성하고 있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는 통합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지적⁵⁾이 있어 2018년도 예산안에서는 통합 편성되었다.

[2018년도 홈택스상담센터 운영 사업 예산안 현황]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16 결산	2017		2018 예산안(B)	증감	
		본예산	추경(A)		B-A	(B-A)/A
홈택스상담센터 운영	(4,873)	(5,411)	(5,411)	5,552	141	2.6

주: 괄호 안의 숫자는 과거 내역사업별 사업비 합계임

자료: 국세청

[위탁상담용역 사업비 변경 내역]

(단위: 백만원)

2017년 예산			2018년 예산안	
세부사업명	상담 분야	예산	세부사업명	예산안
현금영수증제도 활성화 지원	현금영수증	1,695	홈택스상담센터 운영	5,552
취업후학자금 상환제도 운영지원	취업후학자금 상환	198		
국세행정전산화	신고납부·증명발급	1,269		
	연말정산	1,093		
	전자세금계산서	1,156		

자료: 국세청

정수현 예산분석관(shjeong@assembly.go.kr, 788-3736)

1) 코드: 일반회계 7231-300

2) 코드: 일반회계 1131-300

3) 코드: 일반회계 3136-300

4) 코드: 일반회계 7133-500

5) 국회기획재정위원회, 「2016회계연도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검토보고」, 2017.8. pp.122~123.

나. 분석의견

다음과 같이 내역사업 통합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국세청은 향후 이와 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다.

첫째, 국세청은 상담용역예산을 통합 편성하는 과정에서 위탁사업비만을 통합 편성하였고, 이에 소요되는 공공요금 예산을 통합 편성하지 않았다.

위탁사업비와 함께 편성되어 있던 상담센터 공공요금 약 5억 5,800만원이 상담센터 용역 예산이 통합되는 과정에서 이관되지 않았다. 상담센터 공공요금을 이관하여 홈택스 상담과 관련된 사업을 통합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세부사업별 상담센터 공공요금 편성 내역]

(단위: 백만원)

세부사업	내용	2018 예산안
현금영수증제도 활성화 지원	현금영수증상담센터 전용회선 사용료 등 공공요금	50
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도 운영지원	상담센터 전화요금	4
국세행정전산화(정보화)	상담센터 공공요금, 상담센터 통합 회선료	504
합 계		558

자료: 국세청

둘째, 현금영수증제도 활성화 지원 사업의 ‘현금영수증 상담만족도’ 지표를 삭제하고 홈택스상담센터 운영 사업에 새로운 상담만족도 관련 지표를 만들어 관리할 필요가 있다.

국세청은 2018년도 예산안 편성 과정에서 여러 사업에 나뉘어 편성되어 있던 상담센터 운영 사업을 홈택스상담센터 운영 사업으로 통합 편성하였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현금영수증제도 활성화 지원 사업의 성과지표였던 ‘현금영수증 상담만족도’ 지표를 조정하지 않았다. 상담센터 운영 예산이 통합 편성되었음을 고려하여 동 성과지표 역시 홈택스 상담센터 운영으로 이동시켜 성과를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가. 현 황

국세청 소관 혁신도시건설특별회계 세입예산안은 건물매각대¹⁾, 토지매각대²⁾로 구성된다. 이는 이전대상 기관인 국세공무원교육원 등 중전부동산을 매각하여 발생하는 수입으로, 2018년도 예산안에는 건물매각대 35억 3,900만원, 토지매각대 554억 4,600만원이 반영되었다.

[2018년도 혁신도시건설특별회계 세입예산안 현황]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16 결산	2017		2018 예산안(B)	증감	
		본예산	추경(A)		B-A	(B-A)/A
건물매각대	0	687	687	3,539	2,852	415.1
토지매각대	0	6,886	6,886	55,446	48,560	705.2

자료: 국세청

나. 분석의견

국세청은 국세공무원교육원부지의 조속한 매각을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다.

혁신도시건설특별회계는 중전부동산을 매각한 재원을 세입으로 하여 청사 신축을 위한 세출예산을 조달하는 구조이므로, 국세청과 다른 혁신도시 이전기관의 청사 신축 예산을 원활하게 확보하기 위해서는 수원에 위치한 구 국세공무원교육원을 매각해야 한다.³⁾ 그러나 2017년 9월 현재까지 매각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국세청은 2016년 2월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22조에 따라 설치된 대통령 소속 지역발전위원회⁴⁾에서 중전부동산 이전계획이 승인되어 같은 해 10월 매각 공고되었으나, 현

정수현 예산분석관(shjeong@assembly.go.kr, 788-3736)

1) 코드: 혁신도시건설특별회계 71-711

2) 코드: 혁신도시건설특별회계 72-721

3) 2008년 국세공무원교육원 지방이전계획에 따르면 신청사 신축비용의 재원은 중전부동산 매각대금 1,141억원과 국고 지원 180억원으로 조달할 계획이었다.

4)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22조(지역발전위원회의 설치) ① 지역발전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관련 중요 정책에 대한 대통령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으로 지역발전위원회를 둔다.

② 지역발전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재까지 유찰이 반복되고 있으며, 종전부동산의 매각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혁신도시건설특별회계는 종전부동산 매각대금 외에는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이나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부터의 예수금을 세입으로 정하고 있으므로⁵⁾, 종전부동산 매각이 지연될 경우 혁신도시건설특별회계 세입이 부족하여 세출재원 충당을 위해 공공자금관리기금의 추가 예수가 필요하다. 실제로 혁신도시건설특별회계 세출사업 중 혁신도시건설특별회계에서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 예수원금상환 사업의 경우 종전부동산 매각실적 부진으로 2016년 예산 1,521억 3,500만원이 전액 집행되지 못하였다. 예수원금을 상환하지 못하면 이자상환 부담 역시 증가되므로 종전부동산의 조속한 매각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8. 공공기관 등의 지방이전에 관한 사항

5)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34조(회계의 세입과 세출) ① 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가소유 종전부동산의 매각대금, 사용료, 해당 재산으로부터 발생하는 그 밖의 수익금 및 국가행정기관인 이전공공기관의 임차보증금 회수금
2.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로부터의 전입금
3. 「공공자금관리기금법」에 따라 설치된 공공자금관리기금 또는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및 예수금
4. 제36조의 규정에 따른 차입금
5. 제44조제4항의 규정에 따른 이익의 전입금
6. 그 밖의 수익금

가. 현 황

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도 운영지원 사업¹⁾은 한국장학재단에서 대학생들에게 대출한 취업 후 학자금 상환(ICL) 대출원리금에 대한 효율적인 상환관리를 위한 사업이다. 2018년도 예산안은 전년 대비 2억 1,800만원 감소한 1억 7,300만원이 편성되었다.

한편, 납세안내 및 세금교육 지원 사업²⁾은 국민에게 편리하고 정확한 납세정보를 다양한 매체를 통하여 적시성 있게 제공함으로써 건전한 납세의식을 함양하기 위한 사업이다. 2018년도 예산안은 전년 대비 500만원 감소한 32억 6,700만원이 편성되었다.

내역사업인 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도 홍보 사업의 예산으로는 전년과 동일한 7,600만원이 편성되었다.

[2018년도 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도 관련 예산안 현황]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16 결산	2017		2018 예산안(B)	증감	
		본예산	추경(A)		B-A	(B-A)/A
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도 운영지원	368	391	391	173	△218	△55.8
납세안내 및 세금교육 지원	3,292	3,272	3,272	3,267	△5	△0.2
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도 홍보	76	76	76	76	0	0

자료: 국세청

나. 분석의견

사업 목적을 고려하여 납세안내 및 세금교육 지원 사업의 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도 홍보 예산을 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도 운영지원 사업으로 이관하여 통합 편성할 필요가 있다.

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도와 관련된 예산은 아래와 같이 두 개의 세부사업에 나뉘어 편성되어 있다. 구체적으로 납세안내 및 세금교육 지원 사업에서는 불특정 다수 국민을 대상으로 한 홍보를 수행하고, 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도 운영지원 사업에서는 상환 대상을 대상으로 한 상환 안내를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정수현 예산분석관(shjeong@assembly.go.kr, 788-3736)

1) 코드: 일반회계 3136-300

2) 코드: 일반회계 3132-300

[2018년도 취업후 학자금 상환제도 홍보비 등 관련 예산안 현황]

(단위: 백만원)

세부사업명 (내역사업명)	집행 방법	2018년도 예산안
납세안내 및 세금교육 지원 (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도 홍보)	○ 영상 제작, 배너광고, 라디오, SNS 등	76
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도 운영지원	○ 상환안내문 제작, 상환제도 안내 브로슈어 제작, 상환제도 홍보 리플릿 등	138

자료: 국세청 제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

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도의 인지도 제고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홍보와 상환 대상자의 편의 제고를 위한 개별적 상환 안내의 필요성은 인정된다. 다만, ① 납세안내 및 세금교육지원 사업은 납세정보의 제공이 목적인 사업이므로 세금과 무관한 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도의 홍보 예산을 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도 운영지원 사업으로 이관할 필요가 있다. 또한 ② 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도 운영지원 사업에서는 상환대상자 등에게 리플릿 등 우편물을 통해 안내서를 발송하고 있는데, 국민 대상의 홍보 예산과 연계하여 사업을 진행할 때 보다 효과적인 홍보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③ 세부사업의 시행 주체 역시 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도의 실제 업무를 소득지원국 학자금상환과에서 수행하고 있으나 납세안내 및 세금교육 지원 사업은 징세법무국 소관으로, 예산을 통합 편성하여 행정적 효율성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가. 현 황

납세고지서 등 발송 사업¹⁾은 납세의무 이행의 필수적 절차인 납세고지서, 독촉장 등의 송달을 위한 사업이다. 2018년도 예산안은 전년 대비 42억 800만원 증가한 429억 3,900만원이 편성되었다.

종합부동산세 운영지원 사업²⁾은 2005년 도입된 종합부동산세 운영에 필요한 기본경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2018년도 예산안은 전년 대비 8,300만원 증가한 7억 4,900만원이 편성되었다.

[2018년도 납세고지서 등 발송 사업 및 종합부동산세 운영지원 사업 예산안 현황]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16 결산	2017		2018 예산안(B)	증감	
		본예산	추경(A)		B-A	(B-A)/A
납세고지서 등 발송	40,569	38,731	38,731	42,939	4,208	10.9
종합부동산세 운영지원	703	666	666	749	83	12.5

자료: 국세청

나. 분석의견

종합부동산세 운영지원 사업을 납세고지서 등 발송 사업으로 통합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종합부동산세 운영지원 사업은 2005년부터 도입·시행되고 있는 종합부동산세 부과 고지의 정확성 제고를 목표로 별도 운영되고 있다. 그러나 종합부동산세가 도입된 후 10년 이상이 지나 현재 종합부동산세와 관련된 업무가 안정화되었다는 점에서 이를 다른 국세와 달리 운영될 필요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동 사업비의 대부분은 고지서 발송 사업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점에서 별도의 세부사업으로 운영하기보다 납세고지서 등 발송 사업과 통합하여 운영할 때, 행정업무 및 재정운용의 효율성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정수현 예산분석관(shjeong@assembly.go.kr, 788-3736)

1) 코드: 일반회계 2233-300

2) 코드: 일반회계 1133-302



관 세 청

1

현황

2018년도 관세청 소관 예산안은 일반회계로만 구성된다.

2018년도 관세청 소관 세입예산안은 977억 7,500만원으로 전년 대비 531억 1,400만원(118.9%) 증가하였다. 관세청 소관 세입 총계는 총수입과 동일하다.

[2018년도 관세청 소관 세입예산안]

(단위: 백만원, %)

	2016 결산	2017		2018 예산안(B)	증감	
		본예산	추경(A)		B-A	(B-A)/A
일반회계	31,693	44,661	44,661	97,775	53,114	118.9

주: 총계 기준

자료: 관세청

2018년도 관세청 소관 세출예산안은 5,429억 2,700만원으로 전년 대비 300억 6,800만원(5.9%) 증가하였다. 관세청 소관 세출 총계는 총지출과 동일하다.

[2018년도 관세청 소관 세출예산안]

(단위: 백만원, %)

	2016 결산	2017		2018 예산안(B)	증감	
		본예산	추경(A)		B-A	(B-A)/A
일반회계	488,498	512,859	512,859	542,927	30,068	5.9

주: 총계 기준

자료: 관세청

관세청의 2018년도 신규사업은 총 2개 사업, 23억 7,500만원 규모이다. 불법위해물품 안전관리 사업은 조사감시장비 현대화 사업의 내역사업이었으나, 2018년 분리되어 세부사업으로 편성되었다. 관세국경위험관리 운영지원 사업은 2017년 2월 ‘관세국경위험관리센터’가 신설되어 반영된 예산이다.

[관세청 2018년도 예산안 신규사업]

(단위: 백만원)

	세부사업명	2018 예산안
일반회계 (2개)	불법위해물품안전관리	1,612
	관세국경위험관리 운영지원	763
	합 계	2,375

자료: 관세청

2018년도 주요 증액사업을 살펴보면 ① 물류축진및무역원활화 ② 조사감시장비현대화 ③ 국제공항만운영지원 ④ 관세국경관리연수원 운영지원 사업 등이 전년 대비 증액되었다. 물류축진및무역원활화 사업은 대중국 해상특송화물 통관시설(인천·평택) 구축 예산 10억 3,100만원이 신규 반영되었고, 조사감시장비현대화 사업은 우범여행자 추적 시스템 구축 예산 49억 3,500만원이 신규 반영되었다. 국제공항만운영지원 사업은 인천공항제2터미널 개소에 따른 청사 임차료 등의 증가분이 반영되었으며, 관세국경관리연수원 운영지원 사업은 기본경비에서 시설관리용역 예산이 이관되어 증액되었다.

[관세청 2018년도 예산안 주요 증액사업]

(단위: 백만원, %)

	세부사업	2017		2018 예산안(B)	증 감	
		본예산	추경(A)		B-A	(B-A)/A
일반회계 (6개)	물류축진및무역원활화	3,232	3,232	4,355	1,123	34.7
	조사감시장비현대화	11,820	11,820	17,099	5,279	44.7
	조사감시국기본경비	247	247	326	79	32.0
	소속기관기본경비(총액대상)	4,707	4,707	6,213	1,506	32.0
	국제공항만운영지원	23,347	23,347	31,517	8,170	35.0
	관세국경관리연수원 운영지원	1,343	1,343	3,794	2,451	182.5
	합 계	44,696	44,696	63,304	18,608	41.6

주: 주요 증액사업은 2017년도 추경예산 대비 30% 이상 또는 100억원 이상 증액된 사업

자료: 관세청

2018년도 관세청 예산안의 주요 특징을 살펴보면, ① 보세판매장(면세점) 특허수수료 세입 증가분을 반영하여 세입예산안이 큰 폭으로 증가하였고, ② 마약, 테러 등 초국가적 위험을 관세국경단계에서 선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관세국경위험관리센터를 신설하여 운영비 7억 6,3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③ 해상 특송통관장 구축 예산 10억 3,100만원이 반영되었다.

2018년도 관세청 소관 예산안에 대한 분석 결과 예산안의 심의 및 향후 집행에 있어서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한 고려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첫째, 과거 수납추이를 고려한 세입예산안 편성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둘째, 2018년도 성과목표가 소극적으로 설정되어 있으므로, 보다 적극적인 성과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셋째, 개도국 업무재설계 위탁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 대상국의 여건을 고려하지 않고 매년 유사한 규모로 예산을 편성하고 있으므로, 합리적인 근거에 따라 예산을 편성할 필요가 있다.

II

주요 현안 분석

1

적정 세입 편성 필요

가. 현 황

2018년도 관세청 세입예산안은 총 977억 7,500만원으로 전년 대비 531억 1,400만원 (118.9%) 증가하였다. 세입예산안 증가분의 대부분은 면허료 및 수수료¹⁾의 증가에 기인하는데, 2017년 변경된 보세판매장(면세점) 특허수수료율에 따른 세입 증가를 반영하여 546억 4,800만원(933.0%) 증가한 605억 500만원이 편성되었다.

[2018년도 관세청 세입예산안 현황]

(단위: 백만원, %)

	2016 결산	2017		2018 예산안(B)	증감	
		본예산	추경(A)		B-A	(B-A)/A
관유물대여료	286	280	280	305	25	8.5
토지대여료	22	22	22	24	2	9.1
건물대여료	246	258	258	281	23	8.9
기타이자수입및재산수입	2	13	13	13	0	0
기타재산수입	2	13	13	13	0	0
벌금 및 몰수금	17,889	29,273	29,273	29,897	624	2.1
벌금	5,771	6,010	6,010	6,311	301	5.0
몰수금 및 추징금	3,422	4,167	4,167	4,375	208	5.0
과태료	10,025	16,791	16,791	16,791	0	0
과징금	△1,332	2,305	2,305	2,420	115	5.0
변상금 및 위약금	22	104	104	104	0	0
위약금	22	104	104	104	0	0
가산금	5,155	4,955	4,955	5,202	247	5.0
가산금	5,155	4,955	4,955	5,202	247	5.0
기타경상이전수입	404	412	412	412	0	0
기타경상이전수입	404	412	412	412	0	0
재화및용역 면허료및수수료	4,855	5,857	5,857	60,505	54,648	933.0
판매수입 면허료및수수료	4,855	5,857	5,857	60,505	54,648	933.0

정수현 예산분석관(shjeong@assembly.go.kr, 788-3736)

1) 코드: 일반회계 65-651

(단위: 백만원, %)

		2016	2017		2018	증감	
		결산	본예산	추경(A)	예산안(B)	B-A	(B-A)/A
	잡수입	641	1,077	1,077	1,106	29	2.7
	기타잡수입	641	1,077	1,077	1,106	29	2.7
수입대체경비	면허료및수수료	2,364	2,430	2,430	0	△2,430	순감
	면허료및수수료	2,364	2,430	2,430	0	△2,430	순감
	잡수입	27	29	29	0	△29	순감
	기타잡수입	27	29	29	0	△29	순감
고정자산매각대		48	231	231	231	0	0
기계기구매각대		48	231	231	231	0	0

자료: 관세청

나. 분석의견

관세청의 2018년도 세입예산안 편성과 관련하여 다음 사항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첫째, 관세청은 과거 수납추이 및 수납 계획을 고려하지 않고 예산안을 편성하였는데, 이는 세입 예산의 과소 혹은 과다계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

관세청은 세입예산안을 편성하면서 대부분의 세입 항목을 최근 수납 추이가 아닌 2017년도 예산과 동일하거나 5% 증액하여 편성하였다.

[세목별 세입예산안 편성 사례]

(단위: 백만원)

목명	편성근거 및 산출내역	2018년도 예산안(A)	'14~'16년 평균 결산액(B)	차이 (B-A)
기타재산수입	'17년 예산액과 동일하게 편성	13	43 (15~16 평균 4)	30 (15~16 평균 △9)
벌금	'17년 예산액(6,010)의 5% 증액 편성	6,311	6,778	467
몰수금	'17년 예산액(4,167)의 5% 증액 편성	4,375	3,647	△728
과태료	'17년 예산액과 동일하게 편성	16,791	13,890	△2,901
과징금	'17년 예산액(2,305)의 5% 증액 편성	2,420	1,567	△853
위약금	'17년 예산액과 동일하게 편성	104	55	△49
가산금	'17년 예산액(4,955)의 5% 증액 편성	5,202	6,232	1,030
기타경상이전수입	'17년 예산액과 동일하게 편성	412	429	17
기타	재화및용역판매수입	1,077	411	△666
잡수입	수입대체경비	29	27	△2
기계기구매각대	'17년 예산액과 동일하게 편성	231	105	△126

자료: 관세청

최근 수납 추이를 반영하지 않은 예산안 편성은 다음과 같이 예산안의 과소 혹은 과다 편성으로 이어질 수 있다.

① 과태료, 기타재산수입, 위약금, 기계기구매각대의 과다편성 가능성이 있다.

과태료²⁾는 「관세법」, 「외국환거래법」, 「대외무역법」 상의 의무 위반 시 부과되는 것으로 2018년도 예산안은 전년과 동일한 167억 9,100만원이 편성되었다. 그러나 과태료의 2016년 수납액은 100억 2,500만원에 불과하였고, 매년 과태료 수납액이 감소하고 있는 추세이다. 2017년 6월 기준 수납률 역시 17.5%에 불과하다. 따라서 2018년도 예산안 167억 9,100만원은 과다편성 되었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

[연도별 과태료 수납 현황]

(단위: 백만원, %)

	예산액		징수결정액	수납액 (B)	수납률 (B/A)	미수납액	불납결손액
	본예산	추경(A)					
2014	8,423	8,423	21,562	16,791	199.3	4,770	1
2015	14,106	14,106	20,367	14,853	105.3	5,458	56
2016	16,791	16,791	15,954	10,025	59.7	5,774	155
2017.6	16,791	16,791	9,374	2,942	17.5	6,364	68

자료: 관세청

기타재산수입³⁾은 정부의 재산, 금융자산, 무형자산의 소유로 인한 수입과 토지/건물을 제외한 은행이자 등의 수입으로 구성된다. 동 세입은 2014년 인천공항세관 과지급 관사매입금 환수 등 우발적 수입으로 1억 2,100만원이 수납된 이후 매년 수납액이 600만원 이하이며, 2017년 6월 기준 수납액 역시 300만원(23.1%)에 불과하다. 따라서 2018년도 예산안 1,300만원은 과다편성된 것으로 보인다.

[연도별 기타재산수입 수납 현황]

(단위: 백만원, %)

	예산액		징수결정액	수납액 (B)	수납률 (B/A)	미수납액	불납결손액
	본예산	추경(A)					
2014	7	7	122	121	1,728.6	0.4	0
2015	8	8	6.3	6.0	75.0	0.3	0
2016	12	12	2	2	16.7	0	0
2017.6	13	13	3	3	23.1	0	0

자료: 관세청

2) 코드: 일반회계 56-563

3) 코드: 일반회계 54-565

위약금⁴⁾은 국고귀속물품의 공매 시 계약위반으로 세입조치되는 입찰보증금⁵⁾, 청사진 개축·장비도입계약 등 계약위반으로 세입조치되는 계약보증금⁶⁾ 등으로 구성된다. 위약금은 2014년 이후 매년 수납액이 감소하는 추세이며, 2017년 6월 기준 수납액 역시 2,700만원(25.9%)에 불과하다. 따라서 2018년도 예산안 1억 400만원은 조정될 필요가 있다.

[연도별 위약금 수납 현황]

(단위: 백만원, %)

	예산액		징수결정액	수납액 (B)	수납률 (B/A)	미수납액	불납결손액
	본예산	추경(A)					
2014	31	31	105	104	335.5	1	0
2015	33	33	41	38	115.2	3	0
2016	104	104	68	22	21.1	46	0
2017.6	104	104	45	27	25.9	18	0

자료: 관세청

기계기구매각대⁷⁾는 세관이 보유한 감시정, 차량, 보일러 등 내용연수가 경과한 기계기구의 매각수입으로 구성된다. 2017년 예산 2억 3,100만원 중 2억 2,500만원이 노후 감시정 4척의 매각액으로 계상되는 등 대부분이 노후 감시정에 대한 매각 수요에 근거하고 있다. 그러나 관세청은 2018년에는 노후 감시정에 대한 매각 수요가 없음에도 2017년과 동일한 예산을 편성하였으며 구체적 산출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2018년도 기계기구매각대 세입예산안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⁸⁾

4) 코드: 일반회계 57-572

5)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입찰보증금) ③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해당 입찰보증금을 국고에 귀속시켜야 한다. 이 경우 제1항 단서에 따라 입찰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납부를 면제하였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입찰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국고에 귀속시켜야 한다.

6)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2조(계약보증금) ③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해당 계약보증금을 국고에 귀속시켜야 한다. 이 경우 제1항 단서에 따라 계약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납부를 면제하였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약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국고에 귀속시켜야 한다.

7) 코드: 일반회계 71-712

8) 국회는 2015회계연도 결산 시정요구사항으로 “관세청은 기계기구매각계획을 면밀히 수립하여 적정 기계기구매각대 세입예산을 편성할 것”을 채택한 바 있다.

② 가산금의 과소편성 가능성이 있다.

가산금⁹⁾은 관세의 납부기간이 경과할 경우 부과하는 것으로서, 기본 가산금 3%에 매 월 1.2%의 증가산금이 추가로 부과된다. 2018년도 예산안은 전년 대비 2억 4,700만원 (5.0%) 증가한 52억 200만원이 편성되었다.

가산금의 과거 3년 평균 수납액은 62억 3,200만원이었으나, 관세청은 2015년 수입업체 직원의 착오에 의해 일시적으로 체납했던 가산금 46억 1,100만원이 특이치로 포함되었으며 이를 제외한 3년 평균 수납액은 46억 9,500만원에 불과하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가산금의 수납률 제고와 관련한 국회의 시정요구¹⁰⁾가 있었다는 점을 고려할 때, 가산금을 보다 적극적으로 편성할 필요가 있다.

[연도별 가산금 수납 현황]

(단위: 백만원, %)

	예산액		징수결정액	수납액 (B)	수납률 (B/A)	미수납액	불납결손액
	본예산	추경(A)					
2014	4,944	4,944	167,190	4,494	90.9	162,171	525
2015	5,019	5,019	242,562	9,048	180.3	233,483	31
2016	4,719	4,719	313,083	5,155	109.2	303,373	4,555
2017.6	4,955	4,955	347,021	1,822	36.8	343,674	1,525

자료: 관세청

둘째, 2017년 면세점 매출액 증가를 반영하여 면허료 및 수수료 세입예산안을 증액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면허료 및 수수료¹¹⁾는 품목분류 사전심사 수수료 및 보세판매장(면세점) 특허수수료 등으로 구성된다. 세입예산안 605억 500만원의 대부분(94.3%)을 차지하고 있는 보세판매장 특허수수료는 「관세법」 제176조의2¹²⁾에 따라 면세점 특허를 부여하는 것에 대한 수수

9) 코드: 일반회계 58-581

10) 국회는 2015회계연도 결산 시정요구사항으로 “관세청은 체납관세 등 가산금을 철저하게 관리하고, 가산금 수납률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을 강구할 것”을 채택하였다.

11) 코드: 일반회계 65-651

12) 「관세법」

제176조의2(특허보세구역의 특허) ④ 보세판매장의 특허수수료는 제174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른 종류의 보세구역 특허수수료와 달리 정할 수 있다.

료이며, 「관세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특허수수료 증가분이 반영되었다. 「관세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아래와 같이 면세점별 매출구간에 따른 누진세율이 적용되며, 중소·중견기업은 현행 특허수수료율(0.01%)을 유지하게 되었다.

[매출액별 특허수수료율]

해당연도 매출액	특허수수료율
2천억원 이하	해당연도 매출액의 1천분의 1
2천억원 초과~1조원 이하	2억원+(2천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5)
1조원 초과	42억원+(1조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1)

자료: 「관세법 시행규칙」 제68조의2

2018년도 면허료 및 수수료 세입예산안은 다음과 같이 산출되었다.

면허료 및 수수료: 605억 500만원

- 2016년 매출액을 반영한 보세판매장 특허수수료: 570억 600만원
- 기타 보세구역 수수료(3년 수입액 평균): 8억원
- 품목분류 사전심사 수수료: 9,400만원
- 수입대체경비 사업 해제에 따른 이관: 25억 5,100만원

이 중 보세판매장 특허수수료 570억 600만원은 2016년 매출액을 기준으로 계산되었다. 그러나 2017년 1~8월 면세점 매출은 9조 1,118억원으로 전년 동기(7조 8,874억원) 대비 15.5% 증가하는 등 면세점 매출액이 증가하고 있다. 2018년 역시 인천공항 제2터미널 개소 등의 추가 면세점 매출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등 매출이 증가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면세점 및 수수료 세입예산을 증액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보세판매장 월별 매출액]

(단위: 억원)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합계 (1~8월)
2016	9,045	8,530	9,796	10,027	10,187	10,177	10,360	10,752	10,455	11,174	10,661	11,593	78,874
2017	11,489	13,050	10,592	10,062	10,538	10,902	11,138	13,347	-	-	-	-	91,118

자료: 관세청

가. 현 황

FTA이행지원 사업¹⁾은 신규 FTA 발효와 동시에 국내 산업이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이행·지원체계를 구축·운영하는 사업이다. 2018년도 예산안은 전년 대비 1억 5,600만원 감소한 80억 3,900만원이 편성되었다.

동 사업의 내역사업인 원산지 업무위탁 사업은 FTA 체결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하여 원산지정보 수집·분석사업, 전산시스템 위탁운영, 원산지관리시스템(FTA-PASS) 기능개선, 인증수출자 예비조사 등을 (재)국제원산지정보원에 위탁하는 사업이다. 2018년도 예산안은 전년도와 동일한 40억 1,100만원이 편성되었다.

(재)국제원산지정보원은 원산지정보를 수집·분석하고 원산지 관련 전산 시스템을 운영하며, 인증수출자 예비조사 등의 관세청 위탁업무를 수행하는 관세청 산하의 공공기관으로 2010년도에 설립되었다.

[2018년도 FTA이행지원 사업 예산안 현황]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16 결산	2017		2018 예산안(B)	증감	
		본예산	추경(A)		B-A	(B-A)/A
FTA이행지원	6,253	8,195	8,195	8,039	△156	△1.9
원산지 업무위탁	3,949	4,011	4,011	4,011	0	0.0

자료: 관세청

나. 분석의견

원산지 업무위탁 사업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첫째, 법령에 위탁 근거가 명시되지 않은 국제원산지정보원에 대하여 원산지 업무가 집중되고 있으므로, 법령을 개정하여 국제원산지정보원에 대한 명시적 위탁 근거를 마련하거나, 장기적으로 추가 전문기관을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정수현 예산분석관(shjeong@assembly.go.kr, 788-3736)

안옥진 예산분석관(ojahn@assembly.go.kr, 788-3731)

1) 코드: 일반회계 1132-303

국제원산지정보원은 「관세법」 제233조의2²⁾, 동법 시행령 제236조의5³⁾에 근거하여 관세청으로부터 원산지정보 수집·분석 전문기관으로 지정·고시(‘10.1.29.)되었다. 이에 따라 관세청은 매년 수의계약을 통해 원산지정보 수집·분석 업무를 국제원산지정보원에 위탁하고 있다.

관세청은 국제원산지정보원이 2010년 고시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원산지정보 수집·분석 전문기관’으로 지정되었으므로 수의계약을 통한 위탁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원산지정보 수집 등을 위한 전문기관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고시」 상의 지정요건⁴⁾을 갖춘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는 관세청장이 전문기관 지정계획을 공고할 경우 지정을 신청하

2) 「관세법」

제233조의2(수출입물품의 원산지정보 수집·분석) ① 관세청장은 이 법과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및 조약·협정 등에 따라 수출입물품의 원산지 확인·결정 또는 검증 등의 업무에 필요한 정보를 수집·분석할 수 있다.

② 관세청장은 제1항에 따른 정보를 효율적으로 수집·분석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관세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위탁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3) 「관세법 시행령」

제236조의5(원산지정보 수집·분석 업무의 위탁) ① 법 제233조의2제2항에 따라 관세청장이 법인 또는 단체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는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각 호 생략)

② 제1항에 따른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법인 또는 단체의 장은 관세청장이 정하는 품목분류·원산지 기준 등 원산지정보 수집·분석에 필요한 전문인력 및 전산설비를 갖춘 법인 또는 단체의 장 중에서 관세청장이 지정하여 고시한다.

4) 「원산지정보 수집 등을 위한 전문기관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고시」

제3조(전문기관의 지정요건) 전문기관으로 지정 받을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로 한다.

1. 원산지정보 수집·분석 업무에 필요한 다음 각 목의 자료 및 장비 등을 보유하고 있을 것
 - 가. 자료: 수출입물품의 원산지 확인·결정 또는 검증을 위한 품목분류 및 우리나라가 체결한 국제협정의 원산지기준 정보를 자체 보유하고 있거나, 이들 자료를 보유하고 있는 데이터베이스(Database)에 상시 접속하여 검색할 수 있는 환경의 구비
 - 나. 장비: 가 목의 자료를 검색할 수 있는 전산장비
2. 원산지정보 수집·분석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다음 각 목의 전담체계와 인력을 확보하고 있을 것
 - 가. 전담조직과 전용사무실의 구비
 - 나. 원산지정보 수집·분석 업무능력을 갖춘 5명 이상의 전담인력(정규직 또는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람)
 - 다. 나 목에서 규정하는 원산지정보 수집·분석 업무능력을 보유한 사람이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 1) 학사 이상의 사람으로서 관세사 또는 공인회계사 자격증 소유자
 - 2) 경제·경영·무역·전산·통계 관련 석사 이상의 학위자
 - 3) 관세행정 5년 이상 종사한 것으로 인정되는 사람
 - 4) 전산·통계관련 분야(별표1)의 업무를 5년 이상 수행한 것으로 인정되는 사람
3. 원산지정보 수집·분석 업무와 관련하여 사업운영계획 및 별표2의 보안현황 조사표에 규정된 보안체계를 갖추고 있을 것
4. 제3호에 규정된 보안현황 조사표의 각 점검항목은 "양호", "보통", "미흡" 중의 하나로 평가하며, 모든 점검항목에 대해 "양호" 또는 "보통"을 획득하는 경우 보안체계를 갖춘 것으로 인정한다.

여 전문기관으로 지정될 수 있음에도, 관세청은 2010년 국제원산지정보원을 첫 전문기관으로 지정⁵⁾한 이후 2017년 현재까지 새로운 전문기관을 지정하지 않고 있다.

「원산지정보 수집 등을 위한 전문기관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고시」에서 관세청장이 전문기관의 수를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위탁사업 수행가능 전문기관이 2개 이상인 경우 전문기관 지정시의 세부평가 점수 및 사업계획서 등을 참작하여 사업 물량을 구분하여 위탁할 수 있도록⁶⁾ 하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살펴볼 때 새로운 전문기관을 선정하려는 노력 없이 매년 관행적으로 국제원산지정보원에 해당 사업을 수의계약을 통해 위탁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또한 원산지 업무위탁의 세부내역은 ① 인증수출자 예비심사, ② 전산시스템 위탁운영, ③ 원산지정보수집·분석으로 나눌 수 있다. 이 중 전산시스템 위탁운영의 경우 원산지정보수집·분석 위탁사업 결과물의 DB 등 기존 사업과 직접 관련되어 있거나 기 개발사업과 연관된 계속 사업이므로 국제원산지정보원에 위탁할 필요가 있다는 관세청의 설명이 타당한 측면이 있다. 다만 원산지정보수집·분석의 경우 “FTA 해외통관으로 해소를 위한 체결상대국 원산지 동향 분석”, “주요 산업별 FTA교역 및 활용실태 등 FTA이행 종합 모니터링” 등 국제원산지정보원만이 수행할 수 있는 성격이 아닌 분석이 포함되어 있다는 점에서 새로운 전문기관의 지정 가능성이 있다.

관세청은 ① 원산지 관련 업무량, 사업규모, 직무 연계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단일기관 수행이 효율적이고, ② 국제원산지정보원은 매년 ‘원산지전문가 포럼’을 개최하고 해당 분야 논문을 발행하는 등 독보적인 전문성을 확보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현재와 같은 법령 체계 하에서 추가 전문기관 지정 없이 국제원산지정보원이 위탁을 독점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따라서 관세청은 법령을 개정하여 국제원산지정보원에 대한 명시적 위탁 근거를 마련하거나, 장기적으로 추가 전문기관을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5) 국제원산지정보원은 2008년 8월 한국관세사회 부설로 설립된 한국원산지정보원이 전신이다. 한국원산지정보원은 개원 후 4개월이 지난 2009년 1월 원산지정보 수집·분석 전문기관으로 지정되었고 같은 해 2월 개원되었다. 이후 1년이 지난 2010년 1월 한국관세사회로부터 독립하고 한국원산지정보원을 승계하여 재단법인 국제원산지정보원이 설립되었으며, 2015년 기타공공기관으로 지정되었다.

6) 「원산지정보 수집 등을 위한 전문기관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고시」

제9조(원산지정보 수집·분석업무 위탁 등) ① 영 제236조의5에 따른 원산지정보 수집·분석업무를 제7조제2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기관에 위탁한다.

② 관세청장은 위탁사업 수행가능 전문기관이 2개 이상인 경우 전문기관 지정시의 세부평가 점수 및 사업계획서 등을 참작하여 사업 물량을 구분하여 위탁할 수 있다.

둘째, 관세청은 원산지 업무위탁사업의 독점적 위탁기관인 (재)국제원산지정보원의 지속적인 당기순이익 발생과 순금융자산의 증가 등을 고려하여 해당 순이익 등이 ‘관세청 위탁사업’에서 발생하는지 등에 대해 면밀히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적정 규모의 예산안 편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재)국제원산지정보원은 원산지 업무위탁 사업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정보수집 분석위탁, 전산시스템 위탁운영, FTA-PASS 기능개선, 인증수출자 예비조사 등의 세부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예산안 세부 산출 근거]

(단위: 백만원)

구 분	2017		2018	
	세부내역	금액	세부내역	금액
정보수집 분석위탁	- 지속사업 : 8건, 1,130백만원 - 신규사업 : 4건, 190백만원	1,320	- 지속사업 : 9건, 1,070백만원 - 신규사업 : 3건, 250백만원	1,320
전산시스템 위탁운영	- 용역(개발S/W) 유지관리 : 575 - 상용S/W(장비포함) 유지관리 : 224	799	- 용역(개발S/W) 유지관리 : 575 - 상용S/W(장비포함) 유지관리 : 224	799
FTA-PASS 기능개선	- 기능개선 : 181 - 표준 BOM DB 개발 - 세계 HS정보시스템 연계 - HS 전문가 상담기능 구현 * 한·중 FTA 기능개선 완료	181	- 기능개선 : 181 - 품목분류 사전심사 연계 - FTA원산지 간편 인정제도 인정서류 개발 - FTA-PASS 홈페이지 개편	181
인증수출자 예비조사	4개 본부세관 시행 : 서울·인천·대구·부산·광주	1,711	4개 본부세관 시행 : 서울·인천·대구·부산·광주	1,711
합계	-	4,011	-	4,011

자료: 관세청

그런데, 상기 (재)국제원산지정보원의 연도별 당기순이익 및 순금융자산 현황을 살펴보면, 이자수익 등을 포함한 지속적인 당기순이익 발생에 따라 이익잉여금 규모가 2012년 6억 7,800만원에서 2016년 17억 900만원으로 증가하였다.

[(재)국제원산지정보원 연도별 당기순이익 및 이익잉여금 현황]

(단위: 백만원)

	2012	2013	2014	2015	2016
당기순이익	350	272	279	196	284
이자수익	35	25	28	23	21
이익잉여금	678	950	1,229	1,425	1,709

자료: (재)국제원산지정보원 감사보고서를 바탕으로 재작성

이에 따라 (재)국제원산지정보원의 순금융자산은 2012년 8억 3,300만원에서 점차 증가하여 2016년에는 17억 400만원으로 증가하였다.

[(재)국제원산지정보원 연도별 순금융자산 현황]

(단위: 백만원)

	2012	2013	2014	2015	2016
당좌자산 (A)	1,205	1,616	1,511	1,621	2,123
제예금	1,176	1,607	1,488	1,601	2,092
유동부채 (B)	372	503	287	211	419
순금융자산 (A-B)	833	1,113	1,223	1,410	1,704

자료: (재)국제원산지정보원 감사보고서를 바탕으로 재작성

(재)국제원산지정보원은 관련 「관세법 시행령」 제236조의5에 의한 고시⁷⁾에 따른 원산지정보 수집 등을 위한 전문기관으로 2009년 지정된 후 현재까지 유일하게 지정되어 있어, 관세청의 원산지정보 수집 등과 관련한 위탁업무를 독점적으로 수행하고 있다. 이에 아래 표 [(재)국제원산지정보원 연도별 정부 위탁사업 및 자체 사업 수입(매출액) 현황]에 서와 같이 (재)국제원산지정보원의 전체 매출액 중 정부 위탁사업 수입의 비중이 2012년 63.1%에서 2016년 80.4%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7) 「원산지정보 수집 등을 위한 전문기관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고시」(관세청고시 제2015-24호)

[(재)국제원산지정보원 연도별 정부 위탁사업 및 자체 사업 수입(매출액) 현황]

(단위: 백만원, %)

		2012	2013	2014	2015	2016
정부 위탁 사업 수입	원산지 정보수집 분석위탁	1,430	1,483	1,414	1,280	1,293
	원산지정보시스템 개발·운영등	1,558	1,840	1,047	775	1,527
	인증수출자 예비조사	0	577	1,298	1,259	1,110
	소 계	2,988	3,900	3,760	3,314	3,930
	(정부 위탁사업 비중)	(63.1)	(74.9)	(77.9)	(71.8)	(80.4)
자체 사업 수입	교육, 출판, 자격, 일반전산사업 등	1,704	1,272	1,037	1,271	921
	기타수익	43	32	31	28	35
	소 계	1,747	1,304	1,068	1,299	956
	(자체 사업 비중)	(36.9)	(25.1)	(22.1)	(28.2)	(19.6)
합 계		4,735	5,204	4,828	4,613	4,886

자료: (재)국제원산지정보원 감사보고서를 바탕으로 재작성

그러나 관세청 위탁 업무가 독점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에도 위탁 용역 업무 수행 후 결산 시 별도의 정산 절차 등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관세법 시행령」 제236조의5에 의한 「원산지정보 수집 등을 위한 전문기관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고시」 제12조와 제13조⁸⁾에 따르면, 전문기관의 장은 원산지 정부 수집·분석 결과보고서와 관련된 자료를 모두 관세청 담당부서에 제출하고, 결과가 미흡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재조사를 수행하도록 하였으나, 정부 예산 사용과 관련한 별도의 정산 절차 등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지속적으로 당기순이익이 발생하고 순금융자산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관세청은 업무위탁 사업의 독점적 위탁기관인 (재)국제원산지정보원의 지속적 인 당기순이익 발생과 순금융자산의 증가 등을 고려하여 해당 순이익 등이 ‘관세청 위탁 사업’에서 발생하는지 등에 대해 면밀히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적정 규모의 예산안 편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8) 「원산지정보 수집 등을 위한 전문기관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고시」

제12조(원산지정보 수집·분석결과의 보고) 전문기관의 장은 원산지정보 수집·분석보고 결과를 업무 담당 부서에게 서면으로 보고하거나 결과를 직접 설명하는 방식으로 보고할 수 있다. 이 경우 전문기관의 장은 원산지정보 수집·분석 결과보고서와 관련된 자료를 모두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재조사 요구) 관세청장은 원산지정보 수집·분석 보고 결과 내용이 미흡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전문기관에 재조사를 요구할 수 있다.

가. 현 황

2018년도 관세청 성과계획서에 따르면 관세청의 성과지표는 프로그램 목표별 성과지표 9개, 단위사업별 성과지표 24개의 성과목표로 구성된다.

[2018년도 관세청 프로그램 목표별 성과지표 현황]

프로그램목표	성과지표	'18목표치
수출입 통관	수입화물처리시간(하향)	1.76(일)
	FTA를 활용한 중소기업 수출 비율	44(%)
관세심사	사후심사 실적	7,540(점)
밀수감시단속	관세국경범죄단속실적	34,154(점)
	첨단과학검색장비에 의한 밀반입 적발실적	717(건)
정보화 및 국제협력	주요해외통관애로 해소율	90.8(%)
	정보화 종합만족도	84.9(점)
관세행정지원	국민신문고 민원서비스 만족도	81.8(점)
관세국경관리연수원	교육후 현업 적용도 평가	4.70(점)

자료: 관세청

[2018년도 관세청 단위사업별 성과지표 현황]

단위사업명	성과지표	'18목표치
수출입통관및물류촉진지원	수입검사 핵심적발실적	2,477(천점)
	전자통관심사 이용률	3.00(%)
	여행자 반입물품 핵심적발 실적	19,525(점)
	목록통관 핵심적발 실적	609.9(천점)
FTA이행	FTA활용 컨설팅 참여 중소기업의 만족도	91(점)
	원산지 검증 실적 평가	1,968(점)
	인증수출자 확대지정 실적	5,518(점)
관세탈루심사지원	통합기업심사실적	6,940(점)
	채납정리 실적	72.0(억원)
	원산지표시 위반 단속실적(평가점수)	1,121(점)
밀수단속지원	조사단속 실적 검거율 (%)	86.2(%)
	민생침해사범 단속실적(평가점수)	9,577(점)

정수현 예산분석관(shjeong@assembly.go.kr, 788-3736)

단위사업명	성과지표	'18목표치
조사감시선진화	주요 테러물품 적발 실적	306(건)
	감시장비 가동률	96.0(%)
	분석에 의한 국민건강 위해물품 적발률	77.1(%)
국제교역협력	전자통관시스템 수출 활동 지수	6.8(점)
	개도국 무상원조 수혜국 만족도	93.4(점)
	세관협력기금 운용실적	13(건)
관세행정정보화	사이버 안전수준 준수도(정보화)	88.2(점)
	통합 위험선별에 의한 중요적발 점수	675,060(점)
관세정책지원	업무계획 과제 이행건수	23(건)
	내부고객 종합만족도	82.5(점)
관세국경관리연수원운영	연수원 교육품질 만족도	91.30(점)
	탐지견 신규양성 실적	11(두)

자료: 관세청

나. 분석의견

관세청의 2018년도 성과목표가 소극적으로 설정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보다 적극적인 목표 설정을 통해 성과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2018년도 관세청 프로그램 목표별 성과지표 6개 중 4개 지표(66.7%), 단위사업별 성과지표 24개 중 9개 지표(37.5%)가 2016년 실적과 같거나 낮은 수준의 성과목표를 설정하고 있다.

예를 들어 프로그램목표 ‘수출입통관’의 성과지표 중 ‘수입화물처리시간’의 경우 2016년 이미 1.69일을 달성했음에도 2018년도 목표치를 1.76일로 더 길게 설정¹⁾하였다. ‘관세심사’의 성과지표인 ‘사후심사 실적’ 역시 2016년 실적인 7,648점보다 낮은 7,540점을 목표치로 설정²⁾하고 있다. ‘정보화 및 국제협력’의 성과지표 ‘중요해외통관애로 해소율’ 역시 2014년부터 이미 실적이 91%가 넘었으나 목표치는 2014년 이후 지속적으로 90.8%를 유지하고 있어 소극적인 성과목표 설정이 이루어지고 있다.

단위사업별로 살펴보아도 ‘여행자 반입물품 핵심적발 실적’³⁾, ‘인증수출자 확대지정 실

1) 관세청은 사드(THAAD) 국내배치에 따른 중국의 경제적 보복과 북한의 미사일 발사 등 국제경제의 불안정성과 무역안전 강화 등 수출입물류의 국내외적인 가변요소를 반영하여 최근 3년 간의 평균치를 목표치로 설정하였다는 입장이다.

2) 관세청은 기업 정기심사제도 도입 7년차인 2016년부터 대상업체 수 및 추정금액이 감소한 환경변화를 반영하여 목표값을 하향조정했다고 설명한다. 특히 2016년 실적값은 대형 추정실적(1개 업체 1,044억원 추정)이 발생하여 특별한 경우에 해당된다는 입장이다.

3) 관세청은 2016년은 한류열풍에 따른 여행자 급증으로 높은 실적이 달성된 해로 특별한 경우에 해당한다는 입장이다.

적⁴⁾ 등 다수의 성과지표가 2016년 실적보다 낮은 수준의 성과목표를 설정하고 있으며, ‘개도국 무상원조 수혜국 만족도’ 지표는 2016년 실적치와 동일한 목표를 설정하였다. 관세청은 보다 적극적인 성과목표 설정을 통해 성과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소극적인 성과목표 설정사례]

	성과지표	단위	실적 및 목표치					
			구분	'14	'15	'16	'17	'18
프로그램목표별								
수출입통관	수입화물처리시간(하향)	일	목표	2.28	2.01	2.03	1.85	1.76
			실적	1.80	2.05	1.69		
	FTA를 활용한 중소기업 수출 비율	%	목표	42	44	43	44	44
			실적	42	43	44		
관세심사	사후심사 실적	점	목표	신규	7,122	6,795	7,426	7,540
			실적	7,440	7,712	7,648		
정보화 및 국제협력	중요해외통관애로 해소율	%	목표	90.8	90.8	90.8	90.8	90.8
			실적	91.0	91.5	91.4		
단위사업별								
수출입통관 및 물류촉진지원	여행자 반입물품 핵심적발 실적	점	목표	11,717	12,888	15,053	17,716	19,525
			실적	12,832	15,874	21,913		
FTA이행	인증수출자 확대지정 실적	점	목표	-	신규	5,342	5,450	5,518
			실적	-	5,238	7,185		
관세탈루 심사지원	통합기업심사실적	점	목표	5,731	6,139	6,308	6,856	6,940
			실적	6,936	7,097	7,017		
	체납정리실적	억원	목표	43.3	56.2	64.8	70.8	72.0
			실적	59.3	71.4	72.7		
밀수단속지원	조사단속실적 검거율	%	목표	83.0	83.0	86.0	85.6	86.2
			실적	86.0	84.6	86.8		
조사감시선진화	분석에 의한 국민건강 위해물품 적발률	%	목표	70.0	71.0	77.7	76.9	77.1
			실적	72.7	80.0	77.9		
국제교역협력	전자통관시스템 수출활동 지수	점	목표	6.0	6.3	6.3	6.8	6.8
			실적	6.0	6.3	7.5		
	개도국 무상원조 수혜국 만족도	점	목표	91.8	92.7	93.0	93.4	93.4
			실적	93.4	93.3	93.4		
관세행정정보화	사이버 안전수준 준수도	점	목표	-	-	신규	93.3	88.2
			실적	-	-	90.3		

자료: 관세청

4) 관세청은 2016년은 한중-FTA 발효에 따라 인증수출자가 급증하여 높은 실적이 달성된 해로 특별한 경우에 해당하며, 2017년 상반기 실적은 950건에 불과하여 전년 동기 대비 21% 감소하였다고 설명한다.

III

개별 사업 분석

1

우범여행자 추적 강화를 위한 사업관리 필요

가. 현 황

조사감시장비 현대화 사업¹⁾은 공항만 감시행정 선진화를 위하여 세관 조사감시장비 현대화·과학화를 연차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2018년도 예산안은 전년 대비 52억 7,900만원(44.7%) 증액된 170억 9,900만원이 편성되었다.

동 사업의 내역사업인 우범여행자 추적시스템 교체 사업은 인천공항으로 입국하는 마약, 테러 등 우범여행자를 영상인식 카메라를 이용하여 추적·검사하는 노후화된 우범여행자추적시스템(IRS: Image Recognition System)을 전면교체 후 고도화하는 사업이다. 2018년 49억 3,500만원이 신규 편성되었다. 또다른 내역사업인 여객명부 등 정보제공 수수료 사업은 관세청이 우범여행자를 효과적으로 선별하기 위하여 「관세법」²⁾에 의해 제출 받고 있는 여객명부 및 승객예약자료에 대한 중계수수료이다. 2018년도 예산안은 전년과 동일한 4억 7,500만원이 편성되었다.

한편, 관세국경위험관리 운영지원 사업³⁾은 마약, 테러 등 초국가적 위협을 관세국경 단계에서 선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신설된 관세국경위험관리센터의 운영과 관련된 경비이며, 2018년도 예산안으로 7억 6,300만원이 신규 편성되었다.

정수현 예산분석관(shjeong@assembly.go.kr, 788-3736)

1) 코드: 일반회계 1332-302

2) 「관세법」

제137조의2(승객예약자료의 요청) ① 세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35조에 따라 입항하거나 제136조에 따라 출항하는 선박 또는 항공기가 소속된 선박 회사 또는 항공사가 운영하는 예약정보시스템의 승객예약자료(이하 이 조에서 "승객예약자료"라 한다)를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열람하거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시한 내에 제출하여 줄 것을 선박회사 또는 항공사에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선박회사 또는 항공사는 이에 따라야 한다.

1. 제234조에 따른 수출입금지물품을 수출입한 자 또는 수출입하려는 자에 대한 검사업무

2. 제241조제1항·제2항을 위반한 자 또는 제241조제1항·제2항을 위반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물품을 수출입하거나 반송하려는 자에 대한 검사업무

가.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마약류

나.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에 따른 총포·도검·화약류·분사기·전자총격기 및 석궁

3) 코드: 일반회계 1333-304

동 사업의 내역사업인 위험관리 모델 개발 사업은 고위험 물품 및 여행자를 관세국경 단계에서 선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통계적 분석기법 등을 활용한 위험관리 모델을 개발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2018년 예산안에 6억원이 신규 반영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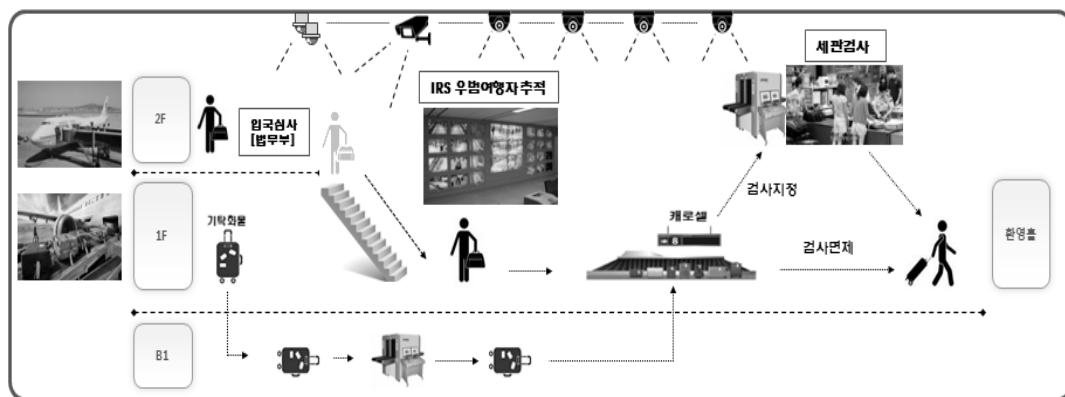
[2018년도 조사감시장비현대화 및 관세국경관리 운영지원 사업 예산안 현황]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16 결산	2017		2018 예산안(B)	증감	
		본예산	추경(A)		B-A	(B-A)/A
조사감시장비현대화	21,660	11,820	11,820	17,099	5,279	44.7
우범여행자 추적시스템 교체	0	0	0	4,935	4,935	순증
여객명부 등 정보제공 수수료	474	475	475	475	0	0.0
관세국경위험관리 운영지원	0	0	0	763	763	순증
위험관리 모델 개발	0	0	0	600	600	순증

자료: 관세청

[우범여행자 추적시스템 이해도]



자료: 관세청

나. 분석의견

첫째, 우범여행자에 대한 효율적 위험관리를 위하여 EU측과 PNR 협정 체결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PNR(Passenger Name Record)이란 「관세법」 제137조의2에 따라 세관장이 선박회사 또는 항공사에 요청할 수 있는 승객예약자료이다. 국적, 성명, 생년월일, 여권번호 및 예약번호 등 8개 항목(세부 21개 항목)으로 구성된다.⁴⁾ 세관은 동 정보에 대한 분석을 토대로

마약·총기류 등 사회안전 위해물품의 밀반입 가능성이 있는 우범여행자를 사전 선별하고 검사하게 된다.

2006년 「관세법」 개정에 따라 도입되었으나 도입 후 10년이 지난 지금도 우리나라에 취항하고 있는 83개 항공사 중 EU 국적의 8개 항공사⁵⁾에 대하여는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PNR을 제출받지 못하고 있다. 현재 캐나다, 호주, 미국 등은 EU와 PNR협정을 체결하여 자료를 제공받고 있으므로, 우범여행자에 대한 보다 효율적인 위험관리를 위하여 EU측과의 PNR 협정 체결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둘째, 인천공항 제1터미널의 우범여행자 추적시스템 교체 시 기존 시스템 운영에 장애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다.

2018년도 우범여행자추적시스템 교체 사업에는 2006년 이후 10년 이상 24시간 무중단 상태로 운영된 우범여행자추적시스템을 전면 교체하는 예산이 반영되었다. 관세청은 내용연수가 경과한 아날로그 타입 장비로 카메라 등 주요 부품이 단종되고, 부품 교체 시 호환성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 교체가 필요하다고 설명한다. 실제로 2014~2016년 우범여행자 추적시스템에 273건의 장애가 발생하여 우범여행자 추적 기능이 약화되었다는 점에서 시스템 교체 필요성은 인정된다.

[최근 3년 간 우범여행자 추적시스템 장애 발생현황]

(단위: 건)

구분	2014년도	2015년도	2016년도	합계
장애건수	68	64	141	273

자료: 관세청

4) 「관세법」

제137조의2(승객예약자료의 요청) ② 세관장이 제1항에 따라 열람이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는 승객예약자료는 다음 각 호의 자료로 한정한다.

1. 국적, 성명, 생년월일, 여권번호 및 예약번호
2. 주소 및 전화번호
3. 예약 및 탑승수속 시점
4. 항공권 또는 승선표의 번호·발권일·발권도시 및 대금결제방법
5. 여행경로 및 여행사
6. 동반탑승자 및 좌석번호
7. 수하물 자료
8. 항공사 또는 선박회사의 회원으로 가입한 경우 그 회원번호 및 등급과 승객주문정보

5) 에어프랑스(프랑스), 영국항공(영국), 핀에어(핀란드), KLM네덜란드항공(네덜란드), 루프트한자(독일), 체코항공(체코), 알이탈리아항공(이탈리아), 폴란드항공(폴란드)

다만, 우범여행자 추적시스템이 2018년 1월 중 발주되어 4월~12월에 공사가 이루어질 계획이므로 신규 시스템 구축과 기존 시스템 운영이 오랜 기간 병행되어야 하며, 기존 상황실 철거, 네트워크 배선작업, 카메라 교체 등 신규 시스템 교체 과정에서 기존 우범여행자 추적시스템에 장애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관세청은 신규 시스템 구축 사업의 발주 및 공사 관리 과정에서 기존 시스템이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사업 계획을 면밀히 수립하고, 관리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셋째, 효과적인 우범여행자 선별을 위해 여행자 위험분석·선별모델을 개발하는 과정에서 보다 많은 행정자료를 연계·분석할 필요가 있다.

여행자 위험분석·선별모델 개발 사업은 여행자출입국내역 등 다수의 자료를 바탕으로 통계적 분석기법을 활용하여 우범여행자를 선별할 수 있는 모델을 개발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여행자 위험분석·선별 모델 개발]

구 분	내 용
총사업비	6억원
분석자료	• 여객명부 • 승객예약자료 • 해외 신용카드 사용내역 • 국내(출국장) 면세점 구매내역 • 휴대품 검사결과 및 적발 내역
수행방식	민간전문업체와 협업(통계전문업체 용역)
사업내용	• 통계적 분석기법을 활용한 위험분석·선별 모델 개발 - (이상징후 분석기법) 여행자 동행분석, 출입국 패턴분석 등을 통해 일반적이지 않은 여행자 선별 - (위험지표 분석기법) 여행자 신고내역 분석을 통한 지표별 위험도 산정 - (네트워크 분석기법) 여행자 출입국내역과 해외신용카드 사용내역, 동행자 등의 연관관계 분석을 통한 우범여행자 선정

자료: 관세청

테러, 마약 등 초국가적 위협이 확산되는 등 관세국경에서 선제적으로 위협을 차단할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여행자 위험분석·선별 모델의 개발 필요성은 인정된다. 다만, 현재의 분석 자료인 해외 신용카드 사용내역, 면세점 구매내역, 휴대품 검사결과 및 적발 내역만으로 선별할 수 있는 우범여행자의 범위가 관세국경에서 발생 가능한 우범행위의 범위에 비해 한정적일 가능성이 있다.

증가하는 마약 밀반입⁶⁾ 및 테러 위험 하에서 우범여행자를 선별하여 감시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따라서 휴대품 검사결과, 적발 내역 외 국내·외 기관⁷⁾과의 자료 협조를 통해 우범여행자 선별 모델 구축의 효과성을 제고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다만, 이 과정에서 개인정보에 대한 보호 방안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

6) 2017년 상반기 마약류 단속 실적은 197건, 275kg에 달하며 전년 동기 대비 건수 기준 48%, 중량 기준 160% 증가하였다. 이 중 여행자를 통한 반입 건수가 전년 동기 대비 38% 증가하여 우범여행자 선별을 통한 밀반입 차단이 필요한 상황이다.

7) 국내 유관기관(검찰, 경찰, 국정원 등), 국제관세기구(WCO), 외국세관당국 등

가. 현 황

개도국 관세행정 현대화 지원(ODA) 사업¹⁾은 개도국 관세행정 업무재설계를 통해 한국형 선진 관세행정을 전 세계로 확산하기 위한 사업으로, 2018년도 예산안은 전년 대비 7억 1,000만원 감소한 33억 9,400만원이다.

동 사업의 내역사업인 개도국 관세행정 현대화 업무재설계 사업은 개도국의 관세행정 업무 전반에 대한 현황분석을 통해 국제표준을 반영한 미래모형 설계를 컨설팅하는 사업이다. 2018년도 예산안은 전년 대비 6억 8,100만원 감소한 22억 4,500만원이다.

[2018년도 개도국 관세행정 현대화 지원(ODA) 사업 예산안 현황]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16 결산	2017		2018 예산안(B)	증감	
		본예산	추경(A)		B-A	(B-A)/A
개도국 관세행정 현대화 지원(ODA)	3,266	4,104	4,104	3,394	△710	△17.3
개도국 관세행정 현대화 업무재설계	2,152	2,926	2,926	2,245	△681	△23.3

자료: 관세청

나. 분석의견

첫째, 관세청은 개도국 업무재설계 위탁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 대상국의 여건을 고려하지 않고 매년 유사한 규모로 예산을 편성하고 있으므로, 합리적인 근거에 따라 예산을 편성할 필요가 있다.

관세청의 개도국 관세행정 현대화 업무재설계 위탁은 2012년 처음 시작되었으며 매년 3~4개국에 대하여 대상국의 통관환경, 무역환경, 업무현황, 기술현황 분석을 바탕으로 미래 모형과 실행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2014년 이후로는 국가별 위치, 국내 상황 등이 고려되지 않고 국가 당 6억 9,7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고 있다.

정수현 예산분석관(shjeong@assembly.go.kr, 788-3736)

1) 코드: 일반회계 1431-351

[개도국 관세행정 현대화 업무재설계 연도별 예산 내역]

(단위: 백만원)

연도	국가	사업금액	위탁업체
2012	탄자니아	705	재단법인 국가관세종합 정보망 운영연합회
	캄보디아	679	
	미얀마	679	
2013	볼리비아	696	
	우즈베키스탄	697	
	페루	701	
	콜롬비아	701	
2014	카메룬, 에티오피아, 니카라과, 과테말라	2,788 = 697 × 4개국	
2015	가나, 적도기니, 온두라스, 파라과이	2,091 = 697 × 3개국	
2016	스리랑카, 라오스, 키르기스스탄	2,091 = 697 × 3개국	
2017	타지키스탄, 카자흐스탄, 엘살바도르, 코스타리카	2,788 = 697 × 4개국	
2018(안)	알제리, 요르단, 피지	2,091 = 697 × 3개국	미정
	나이지리아('18~'19, 2개년 사업)	16	

주: 2018년 나이지리아 사업은 KOICA에서 진행 중인 나이지리아 전자정부 역량강화 사업의 결과를 참고하여 추진할 필요가 있어 2개년 사업으로 추진

자료: 관세청

관세청은 동 사업이 국제표준을 반영하는 미래모형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국가별 항공료, 숙박비 등 직접경비가 상이하하여 약간의 차이가 발생하나 컨설팅 방식이 유사하기에 평균적으로 약 7억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산출하고 있다고 설명한다.

그러나 국가별로 통관환경, 무역환경, 기술환경 등이 상이한 상황이며 대상국으로의 접근성 역시 국가별로 차이가 있으므로 이를 고려하지 않은 일률적 예산편성은 예산 낭비로 이어질 수 있다. 합리적 편성 근거에 따른 국가별 예산 편성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관세청은 사업 실시 이후 매년 일괄입찰 방식으로 계약을 체결하여 사업 수행 이후 사후정산을 수행하지 않았다. 향후 적정 수행 가격 산정의 근거 자료가 될 수 있는 사후정산을 추가로 실시하여 과다한 예산이 교부되는 일이 없도록 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둘째, 국가별 업무재설계사업을 분리 발주하여 다양한 업체의 참여기회를 보장할 필요가 있다.

동 사업은 매년 3~4개국에 대한 업무재설계 사업을 통합발주하고 있는데, 이 경우 사업규모가 작은 업체에 대하여 사실상 참여 기회가 봉쇄될 우려가 있다. 이에 따라 공개 경쟁입찰을 통한 사업자 선정이라는 방식을 택하고 있음에도 사업규모를 확대함에 따라 사실상 입찰업체를 제한한 것과 같은 효과로 이어져, 매년 (재)국세종합정보망운영연합회가 낙찰 받고 있다.

따라서 관세청은 공통된 기준에 따라 국가별로 사업을 분리 발주하여 다양한 사업자의 참여 기회를 보장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인다.²⁾

2) 참고로 통계청은 개도국 통계지원(ODA) 사업을 통해 개도국 통계역량강화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때 국가별로 별도 편성 근거를 제시하고 사업을 각각 분리발주한다.

가. 현 황

관세행정운영지원 사업¹⁾은 본청 및 산하기관의 원활한 관세행정업무 수행을 위한 운영경비와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훈련경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과거 관세행정관리 사업의 명칭이 변경된 사업으로, 2018년도 예산안은 전년 대비 3억 6,100만원 증가한 73억 1,400만원이다.

[2018년도 관세행정운영지원 사업 예산안 현황]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16 결산	2017		2018 예산안(B)	증감	
		본예산	추경(A)		B-A	(B-A)/A
관세행정운영지원	6,840	6,953	6,953	7,314	361	5.2
사회복무요원지원	35	43	43	28	△15	△34.9
세관직원 피복비	1,238	1,232	1,232	1,678	446	36.2
기관운영 공통지원	5,567	5,678	5,678	5,608	△70	△1.2
- 공공요금및제세(210-02)	136	144	144	144	0	0.0
- 특근매식비(210-05)	128	134	134	134	0	0.0
- 사업추진비(240-01)	42	41	41	44	3	7.3

자료: 관세청

나. 분석의견

관세행정운영지원 사업은 독립된 사업비가 아닌 조직운영에 소요되는 기본경비에 해당하므로 기본경비 사업으로 이관할 필요가 있다.

기획재정부의 「2018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세부지침」에 따르면 기본경비는 조직운영에 소요되는 기본적 경비 및 지속적인 소규모 운영 경비로서, 기관운영에 소요되는 일반수용비, 공공요금 등 경상적 경비와 공무원교육훈련에 소요되는 교육훈련 경비, 사회복무요원 운영비 등으로 구성된다. 관세행정운영지원 사업 역시 크게 사회

정수현 예산분석관(shjeong@assembly.go.kr, 788-3736)

1) 코드: 일반회계 7131-351

복무요원지원, 세관직원 피복비, 기관운영 공통지원으로 구성된다는 점에서 별도 사업비 보다는 기본운영경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기본경비 사업에 이미 편성되어 있는 공공요금 및 제세 1억 4,400만원, 특근매식비 1억 3,400만원, 사업추진비 4,400만원 등이 편성되어 있어 이들 예산이 하반기에 집중적으로 집행되고 있는 상황이다. 2016년 공공요금 및 제세 예산은 9월 22일 이후 집행이 시작되었고, 특근매식비 집행액 1억 2,800만원의 80.4%인 1억 300만원이 9월 이후에 집행되었으며, 사업추진비는 11월 18일 이후로 집행이 시작되었다. 2017년 역시 6월 말 기준으로 공공요금 및 제세, 특근매식비, 사업추진비의 집행 실적은 전혀 없어, 동 사업비가 사실상 기본경비 부족분을 충당하는 용도로 사용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점을 고려하여 동 예산을 기본경비로 이관하여 예산을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2016회계연도 세목별 월별 집행 내역]

(단위: 천원)

	1~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공공요금 및 제세	0	0	0	0	0	0	66,686	0	11,208	58,311
특근매식비	0	3,000	14,500	2,800	4,700	△7	16,629	791	2,030	83,174
사업추진비	0	0	0	0	0	0	0	0	1,200	40,881

자료: 관세청 제출 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가. 현 황

불법위해물품 안전관리 사업¹⁾은 불법·위해·불량 수입물품의 통관단계에서 안전성 분석을 통해 부정무역을 차단하고 국민건강 보호 및 안전사회를 구현하고자 하는 사업이다. 2017년까지는 조사감시장비 현대화 사업의 내역사업이었으나, 2018년도 예산안에 세부사업으로 분리·이관되어 16억 1,200만원이 편성되었다.

동 사업의 내역사업인 실험보조요원 운영 사업은 분석단계 중 단순업무는 보조요원을 활용하고, 실무자는 정밀분석 및 결과정리 등 주요업무에만 집중하도록 실험보조요원을 채용하는 사업이다. 2018년도 예산안에 1억 4,700만원이 신규 편성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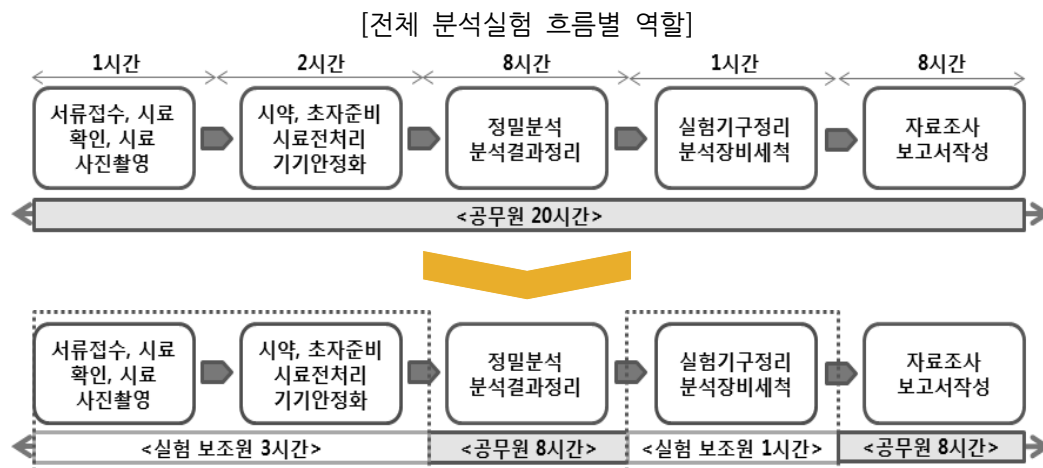
[2018년도 불법위해물품 안전관리 사업 예산안 현황]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16 결산	2017		2018 예산안(B)	증감	
		본예산	추경(A)		B-A	(B-A)/A
불법위해물품 안전관리	(876)	(876)	(876)	1,612	1,612	순증
실험보조요원 운영	0	0	0	147	147	순증

주: 2017년 이전의 경우 조사감시장비 현대화 사업 내 첨단분석장비 도입 사업의 예·결산액임

자료: 관세청



정수현 예산분석관(shjeong@assembly.go.kr, 788-3736)

1) 코드: 일반회계 1231-301

나. 분석의견

실험보조요원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관세분석 소요기간을 단축하는 등 업무가 적시에 수행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중앙관세분석소는 ① 공정무역질서 확립을 위한 관세율표 해석에 대한 조사·연구, ② 사회안전보호를 위한 마약·부정의약품 등 위해물품 분석, ③ 공정과세를 위한 수출입 물품의 분석 및 규격기준의 조사·연구 등을 수행하는 기관이다. 「관세법」²⁾에 따라 품목 분류사전심사 신청된 물품과 일부 수출입물품을 분석하는 업무를 수행³⁾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국민건강위해물품 등을 관세국경에서 차단하고 있다.

관세청은 신속한 분석 결과 회신을 위하여 분석 처리기간을 15일 이내⁴⁾로 정하고 있

2) 「관세법」

제86조(특정물품에 적용될 품목분류의 사전심사) ① 물품을 수출입하려는 자, 수출할 물품의 제조자 및 「관세사법」에 따른 관세사·관세법인 또는 통관취급법인(이하 "관세사등"이라 한다)은 제241조제1항에 따른 수출입신고를 하기 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갖추어 관세청장에게 해당 물품에 적용될 별표 관세율표상의 품목분류를 미리 심사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3) 「수출입물품 등의 분석사무 처리에 관한 훈령」

제12조(분석소 분석의뢰) ① 분류원장은 품목분류사전심사 신청된 물품과 품목분류 질의 및 의견조회된 물품 중 시험·분석 등이 필요한 물품에 대해서는 분석소장에게 분석의뢰한다. 이 경우 분석정보시스템에 분석의뢰사항을 등록하고 별지 제7호서식의 분석의뢰서를 출력한 후 분석시료와 그 밖의 참고자료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② 분석실장은 수출입물품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분석소장에게 분석의뢰하여야 한다. 다만, 분석소에 실험에 필요한 장비가 없는 경우에는 분석실장이 외부기관에 직접 분석의뢰할 수 있다.

1. 새로운 사실이 발견되어 종전의 분석결과를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
2. 세관 분석실 간 또는 다른 분석기관과 분석결과에 대한 이견이 있는 경우
3. 분석의뢰 부서장 또는 화주로부터 분석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어 분석소장에게 의뢰할 필요가 있는 경우
4. 외부 전문기관 등에 분석의뢰 또는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할 물품 중 분석소장의 의견이 필요한 경우
5. 분석기준 및 시험방법에 따라 분석결과가 다른 경우
6. 장비부족 등으로 분석이 불가능하거나 새로운 분석방법의 개발이 필요한 경우
7. 수출입자가 세관장확인고시 등에 의한 수출입 제한대상 품목번호로 신고하였으나, 분석결과 제한대상이 아닌 품목번호로의 결정이 예상되는 경우(다만, 종전 동일한 분석실적이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8. 수입자가 농림축산물양허세율 등 고세율 대상 품목번호로 신고하였으나, 분석결과 저세율 대상인 품목번호로의 결정이 예상되는 경우로서 세액차이가 큰 물품(다만, 종전 동일한 분석실적이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9. 분석기준이 없거나 불명확한 경우
10. 그 밖에 부득이 한 사유로 분석소장에게 분석의뢰 하려는 경우

4) 「수출입물품 등의 분석사무 처리에 관한 훈령」

제15조(분석 처리기간 및 지연통보) ② 분석소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없으면 제12조에 따른 서류와 분석시료를 접수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분석회보를 하여야 한다.

1. 제13조에 따라 외부기관에 분석의뢰 한 경우
2. 제14조에 따라 자료보완을 요구한 경우

으나, 품목분류 사전심사 및 수출입물품 분석량이 증가 추세에 있어 2016년 분석처리 평균 소요 일수가 21.6일에 이르는 등 정해진 처리 기한을 초과하고 있다.

[최근 5년 간 분석소 분석처리 건수 및 소요일수]

(단위: 건, %, 일)

구분		'12	'13	'14	'15	'16
분석처리 건수	합 계	3,701	3,754	4,604	4,956	4,679
	증감률	-	1.4	22.6	7.6	△5.6
	사전심사	2,797	2,631	3,138	3,286	3,528
	수출입물품	904	1,123	1,466	1,370	1,151
분석처리 평균 소요일수		16.3	17.1	14.6	14.8	21.6

자료: 관세청

이에 관세청은 분석단계 중 시료 전처리 등의 단순업무는 보조인력을 활용하고, 실무자는 정밀분석 및 결과정리 등 주요업무에 집중하도록 하여 증가하는 업무에 대응하고자 하였으며, 2018년도 예산안에 실험보조요원 9명에 대한 인건비가 반영되었다.

실험보조요원의 적절한 배치 및 활용을 통해 품목분류사전심사, 수출입물품 분석 등의 소요기간을 단축하는 등 업무가 적시에 수행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3. 시료가 4종 이상인 경우

4. 그 밖에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분석소장이 인정하는 경우

가. 현 황

물류촉진및무역원활화 사업¹⁾은 수출입 물류의 흐름을 촉진하고 안전한 무역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2018년도 예산안은 전년 대비 11억 2,300만원(34.7%) 증액된 43억 5,500만원이다.

동 사업의 내역사업인 해상특송 인프라 개선 사업은 인천항 특송통관장의 설비를 증설하고, 평택 세관에 신규 특송통관장을 개소하는 사업으로 2018년 예산안에 신규로 10억 3,100만원이 반영되었다. 동 사업은 ① 인천항 해상 특송통관장에 X-Ray 검색기 등 설비를 증설하고, ② 평택항에 해상 특송통관장을 신규 개소하여 검사장비를 도입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2018년도 물류촉진및무역원활화 사업 예산안 현황]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16 결산	2017		2018 예산안(B)	증감	
		본예산	추경(A)		B-A	(B-A)/A
물류촉진및무역원활화	2,967	3,232	3,232	4,355	1,123	34.7
해상특송 인프라 개선	0	0	0	1,031	1,031	순증

자료: 관세청

[2018년도 해상 특송화물 인프라 개선 사업 산출근거]

(단위: 백만원)

구분	세부내역	금액
특송통관장 설비증설 (인천세관)	X-Ray 검색기 2대(302), 자동분류기 3대(260), 동시구현시스템 1대(24), 판독부스 1개(10), CCTV 감시시스템 1대(51), 마약폭발물탐지기 1대(55)	702
신규 특송통관장 개소 (평택세관)	X-Ray 검색기 1대(151), 자동분류기 1대(89), 동시구현시스템(24), 판독부스 1개(10), 마약폭발물탐지기 1대(55)	329
합 계		1,031

자료: 관세청

정수현 예산분석관(shjeong@assembly.go.kr, 788-3736)

1) 코드: 일반회계 1131-301

나. 분석의견

관세청은 특송통관장의 적시 개소를 통해 해상 특송화물의 통관 지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

특송화물이란 용도, 중량, 가격 등에 상관없이 탁송품 운송업자(특송업체)로 등록된 자가 운송하는 물품을 의미하며, 「관세법」²⁾ 및 동법 시행규칙³⁾에 따라 자가사용물품 또는 면세되는 상용건품 중 물품가격이 미화 150달러 이하인 물품에 대하여 특송업체의 통관목록 제출로 수입신고를 생략할 수 있다.

2016년 말 기준 특송물품은 항공화물의 경우 인천 특송물류센터, 김포공항 특송통관장을 통해 통관되고, 해상화물의 경우 인천항에 위치한 특송통관장을 통해 통관된다.

[특송통관장 현황]

특송통관장	현황				감시장비
	지정장치장명	운영 목적	위치	운영	
특송 물류센터	지정장치장 (특송물류센터)	인천공항 반입 특송화물 통관, 위험관리	인천공항 화물터미널	33개 특송 업체	X-Ray 검색기 14대, 문형금속탐지기 3대, 휴대용금속탐지기 10대, 마약폭발물탐지기 2대, 방사능측정기 4대, CCTV 1식
인천항 특송통관장	인천세관 제2지정장치장	해상 반입 특송화물 통관, 위험관리	인천항	18개 특송 업체	X-Ray 검색기 2대, 방사능측정기 1대, 휴대용금속탐지기 1대
김포공항 특송통관장	지정장치장 (화물청사)	김포공항 반입 특송화물 통관, 위험관리	김포 공항세관	5개 특송 업체	X-Ray 검색기 1대 마약폭발물탐지기 1대 방사능측정기 1대 CCTV 1식

자료: 관세청

2) 「관세법」

제254조의2(탁송품의 특별통관) ① 제241조제2항제1호의 탁송품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의 물품은 운송업자(제222조제1항제6호에 따라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에게 등록한 자를 말한다. 이하 "탁송품 운송업자"라 한다)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이 적힌 목록(이하 "통관목록"이라 한다)을 세관장에게 제출함으로써 제241조제1항에 따른 수입신고를 생략할 수 있다.

1. 물품의 송하인 및 수하인의 성명, 주소, 국가
2. 물품의 품명, 수량, 중량 및 가격
3. 탁송품의 통관목록에 관한 것으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3) 「관세법 시행규칙」

제79조의2(탁송품의 특별통관) ① 법 제254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의 물품"이란 자가사용물품 또는 면세되는 상용건품 중 물품가격이 미화 150달러 이하인 물품을 말한다.

관세청은 동 사업의 필요성과 관련하여 ① 해상 특송화물이 급증함에 따라 인천세관 특송통관장 설비를 증설할 필요가 있으며, ② 평택항으로 반입되는 해상 특송화물이 증가하고 있음에도 특송통관장이 없어 평택항으로 반입된 물량이 전부 인천항 해상 특송통관장까지 보세운송되어 과도한 통관지체가 발생하고 있다고 설명한다.

2016년 기준 인천항을 통해 통관된 물량은 101만 6,000건이며, 매년 반입 물량이 증가하고 있으나 인천항의 통관 설비 부족 등의 사유로 통관 소요시간 역시 매년 증가하고 있다. 2016년 기준 인천 특송물류센터의 통관 소요시간이 271분에 불과한 데 비하여 인천항 특송통관장의 통관 소요시간은 728분에 달하고 있다. 2017년에는 통관에 851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해상 특송화물 반입 물량]

(단위: 천건)

구분	'13년	'14년	'15년	'16년	'17년			'18년 (예상)
					6월	8월	연말(예상)	
인천항 반입물량	48	133	365	628	811	1,141	1,622	2,136
평택항 반입물량	-	34	111	365	103	127	206	1,244
기타 항구 반입물량	9	21	29	23	25	41	50	94
총 반입물량	57	188	505	1,016	939	1,309	1,878	3,474

자료: 관세청

[연도별, 특송통관장별 통관물량 및 통관소요시간 현황]

(단위: 천건, 분)

세관	특송통관장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통관 물량	소요 시간	통관 물량	소요 시간	통관 물량	소요 시간	통관 물량	소요 시간
인천 세관	특송물류센터	-	-	-	-	-	-	6,627	271
	인천항 특송통관장	57	583	188	705	505	652	1,016	728
김포 공항 세관	김포공항 특송통관장	3,147	324	3,503	321	2,675	310	1,375	284

자료: 관세청

또한, 항공화물에 대한 특송통관장에 구비되어있는 마약폭발물탐지기가 인천항에는 구비되어 있지 않는 등 검사 장비가 부족하여 마약이나 폭발물 등에 대한 감시가 효과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을 가능성도 있었다는 점에서 특송통관장의 증설 필요성이 인정된다.

따라서 관세청은 물류흐름의 원활화 및 위험물품 감시를 위하여 인천 특송통관장의 설비 증설 및 평택 특송통관장의 신규 개소가 조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업관리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다.



조 달 청

1

현 황

가. 총수입·총지출

2018년도 조달청 소관 예산안은 조달특별회계로만 구성된다.

2018년도 조달청 소관 총수입은 2,342억원으로 전년 대비 58억원(2.6%) 증가하였다.

[2018년도 조달청 소관 세입예산안]

(단위: 백만원, %)

	2016 결산	2017		2018 예산안(B)	증감	
		본예산	추경(A)		B-A	(B-A)/A
조달특별회계	191,237	228,410	228,410	234,236	5,826	2.6

주: 총수입 기준

자료: 조달청

2018년도 조달청 소관 총지출은 1,252억원으로 전년 대비 64억원(5.3%) 증가하였다.

[2018년도 조달청 소관 세출예산안]

(단위: 백만원, %)

	2016 결산	2017		2018 예산안(B)	증감	
		본예산	추경(A)		B-A	(B-A)/A
조달특별회계	122,141	118,882	118,882	125,241	6,359	5.3

주: 총지출 기준

자료: 조달청

나. 세입·세출

2018년도 조달청 소관 세입예산안은 3,594억원으로 전년 대비 205억원(6.1%) 증가하였다. 손익계정은 2017년 2,237억원에서 2018년 2,333억원으로 4.3% 증가하였으며, 자본계정은 1,151억원에서 1,261억원으로 9.6% 증가하였다.

[2018년도 조달청 소관 세입예산안]

(단위: 백만원, %)

	2016 결산	2017		2018 예산안(B)	증감	
		본예산	추경(A)		B-A	(B-A)/A
조달특별회계	289,979	338,879	338,879	359,414	20,535	6.1
- 손익계정	210,599	223,746	223,746	233,282	9,536	4.3
- 자본계정	79,380	115,133	115,133	126,132	10,999	9.6

주: 총계 기준

자료: 조달청

2018년도 조달청 소관 세출예산안은 3,594억원으로 전년 대비 205억원 증가하였다. 손익계정은 2017년 2,237억원에서 2018년 2,333억원으로 4.3% 증가하였으며, 자본계정은 1,151억원에서 1,261억원으로 9.6% 증가하였다.

[2018년도 조달청 소관 세출예산안]

(단위: 백만원, %)

	2016 결산	2017		2018 예산안(B)	증감	
		본예산	추경(A)		B-A	(B-A)/A
조달특별회계	249,600	338,879	338,879	359,414	20,535	6.1
- 손익계정	193,072	223,746	223,746	233,282	9,536	4.3
- 자본계정	56,528	115,133	115,133	126,132	10,999	9.6

주: 총계 기준

자료: 조달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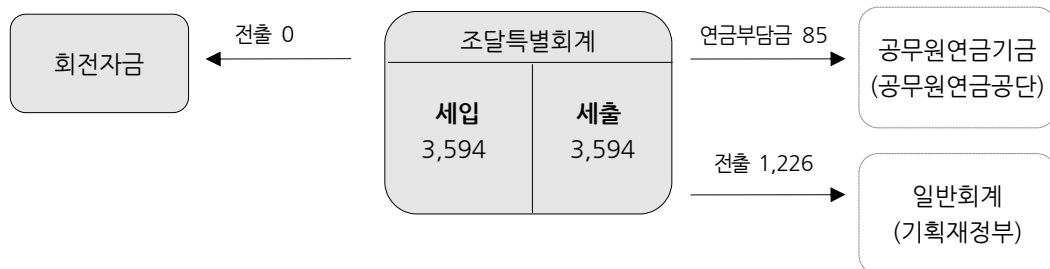
다. 재정구조

2018년도 조달청의 회계·기금 간 재원이전 현황은 다음과 같다.

조달특별회계로부터 공무원연금부담금으로 85억원, 기획재정부 일반회계로 1,226억원이 각각 이전되었다.

[2018년도 조달청 소관 회계·기금 간 재원이전 현황]

(단위: 억원)



주: 총계 기준
자료: 조달청

2018년 조달청 예산안의 주요 특징을 살펴보면 ① 불공정조달행위 조사 및 관리 예산 1억 8,700만원이 신규 반영되었고, ② 설계적정성검토 수수료가 세입 예산에서 제외되었다.

2018년도 조달청 소관 예산안에 대한 분석 결과 예산안의 심의 및 향후 집행에 있어서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한 고려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첫째, 불공정조달행위에 대한 효과적인 조사를 위하여 기존의 불공정조달행위 신고센터 외 향후 구축될 공공조달 계약이행 확인시스템에 대한 활용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둘째, 기획재정부와의 조속한 협의를 통해 설계적정성검토 수수료를 세입예산안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

II

주요 현안 분석

1

조달물자 계약 및 관리의 문제점과 개선과제

1-1. 종합쇼핑몰 운영 다양성 및 적정성 확보 필요

가. 현 황

조달물자 계약 및 관리 사업¹⁾은 다수공급자 계약물품에 대한 가격의 적정성을 제고 하고 신기술 등 연구개발 성과로 창출된 새로운 상품의 공공구매를 촉진하기 위한 사업이다. 2018년도 예산안은 전년 대비 1억 6,200만원 증가한 32억 8,900만원이 편성되었다.

동 사업의 내역사업인 다수공급자물품 계약 및 관리 사업을 통해서는 다수공급자계약 구매지원 전문인력 및 종합쇼핑몰 시스템 관리 전문인력에 대한 보수를 지급하고 있으며, 2018년도 예산안은 전년 대비 4,000만원 감소한 3억 8,800만원이 편성되었다.

구매 관련 업무용역 예산안으로는 전년과 동일한 7억 7,200만원이 편성되었는데, 이 중 다수공급자계약 관련 업무 용역비로는 4억 6,600만원이 편성되었다. 다수공급자계약 업체의 적격성평가/협상품목 승인, 중간점검, 원산지 확인 검토 업무를 민간에 위탁하고 있다.

[2018년도 조달물자 계약 및 관리 사업 예산안 현황]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16 결산	2017		2018 예산안(B)	증감	
		본예산	추경(A)		B-A	(B-A)/A
조달물자 계약 및 관리	2,536	3,127	3,127	3,289	162	5.2
다수공급자물품 계약 및 관리	322	428	428	388	△40	9.3
구매 관련 업무용역	914	772	772	772	0	0.0

자료: 조달청

정수현 예산분석관(shjeong@assembly.go.kr, 788-3736)

1) 코드: 조달특별회계 1235-334

다수공급자계약(MAS) 제도란 공공기관의 다양한 수요를 충족하기 위하여 품질, 성능, 효율 등에서 동등하거나 유사한 종류의 물품을 수요기관이 선택할 수 있도록 2인 이상을 계약상대자로 하는 계약제도이다. 납품실적, 경영상태 등이 일정한 기준에 적합한 자를 대상으로 협상을 통해 계약을 체결하고 수요고객이 직접 ‘나라장터 종합쇼핑몰 (<http://shopping.g2b.go.kr/>)’에서 자유롭게 물품/서비스를 선택하여 사용할 수 있다.

[나라장터 종합쇼핑몰 홈페이지]



나. 분석의견

첫째, 조달청은 종합쇼핑몰 서비스상품의 다양성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는 한편 지역 여행상품의 발굴을 위한 지자체와의 협의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조달청은 2015년 「공공조달 혁신방안」에서 그 동안의 물품·공사 중심의 공공조달 수요가 최근 컨설팅·행사·청소용역 등 다양한 서비스 수요로 확대되는 추세를 감안하여 공공분야에서 서비스 수요를 창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2017년 업무계획에서도 서비

스상품 구매 활성화를 목표로 제시하는 등 지속적으로 서비스 구매 활성화를 추진 중이다.

이와 같은 조달청의 노력에 따라 종합쇼핑몰에 등록된 서비스 상품은 매년 증가하여 2016년 서비스 상품 수는 1,559개, 납품 실적은 2,025억원으로 증가하였다.

[종합쇼핑몰에 등록된 서비스 상품 현황]

(단위: 개, 건, 억원)

구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상품수	185	753	768	1,066	1,559
납품건수	393	1,157	1,092	1,367	2,179
납품실적	312	2,128	2,017	2,222	2,025

자료: 조달청

그러나 2017년 9월 현재 종합쇼핑몰 사이트(<http://shopping.g2b.go.kr>)에 마련된 서비스 카테고리 중 통역서비스, 모바일서비스는 서비스 공급을 위해 등록된 업체가 없어²⁾ 여전히 서비스조달 분야의 확대가 요구되는 상황이다. 종합쇼핑몰 서비스 상품의 다양성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을 것이다.

지역 여행상품 역시 2016년 말 기준 54개³⁾로 매년 확대되고 있으나, 2017년 9월 기준 23개 지역의 여행상품만이 등록되어 있으며 제주지역의 상품은 존재하지 않는 등 지역별 편차가 존재한다.⁴⁾ 조달청은 민간부문의 여행이 활성화되어 있는 지자체의 경우 관주도의 여행상품 개발에 대한 관심이 저조하고, 전담인력 운영과 예산이 소요되는 등 지역여행 상품 개발 확대의 장애요인이 존재한다는 입장이다. 지역 여행상품의 발굴을 위해 지자체와의 협의를 강화하는 등 조달청의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둘째, 다수공급자계약 위탁업무 용역사업과 관련하여 원산지 확인 강화가 필요하다.

조달청은 다수공급자계약 관련 위탁용역을 통해 계약 물품의 적격성평가/협상품목 검토, 다수공급자계약 중간점검, 원산지 확인 검토 등을 수행하고 있다. 이 중 원산지 확인 검토 업무는 저급 외산자재 사용제품, 외산 완제품 등을 납품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

2) 컴퓨터 및 사무용기기 임대서비스, 화초류 임대서비스 역시 등록된 업체가 없으나, 이는 MAS계약 만료 후 신규 공고 중인 카테고리이다.

3) 자연생태학습(22), 전통문화체험(14), 힐링치유체험(14), 안전체험(4)

4) 2017년 9월 기준 지역 여행상품은 수도권(2), 강원권(1), 충청권(4), 전라권(6), 경상권(10)으로 분포해 있다.

해 주재료의 입출고 상황 등을 확인하여 계약규격서에 따른 원산지 준수 여부를 점검하는 업무이다. 다수공급자계약 물품 중 원산지 위반 적발빈도, 물품의 특성, 업계(관련 조합) 의견 등을 수렴하여, 원산지 중점점검 대상물품을 선정하고 대상물품별로 원산지를 속일 유인이 있는 주요 원자재를 선정하고 있다. 위탁업체에서 1차 검토 후 위반이 의심되는 업체에 대해서는 계약부서와 관련 조합, 조달품질원이 합동으로 점검하게 된다.

동 업무는 2016년 과업에 신설되었으며, 당초 50개의 중점점검 대상물품을 선정하여 약 1,200건의 원산지 위반 여부를 심사할 계획이었으나 최종적으로 4개 물품에 대하여 당초 계약물량 대비 10.7%에 불과한 128건의 원산지 위반 여부를 심사하는 데 그쳤다. 조달청에 따르면 2017년 8월 말 기준 심사가 진행 중이기는 하나 완료된 실적은 전혀 없다.

[다수공급자계약 위탁업무수행 현황]

	세부과업내용	단위	계약(A)	완료(B)	완료율(B/A)
2016	적격성평가	세부품명	7,000	13,877	198.2%
	협상품목검토	품목	110,000	225,969	205.4%
	중간점검	세부품명	9,000	8,191	91.0%
	원산지확인	건	1,200	128	10.7%
2017.8.	적격성평가	세부품명	7,000	5,921	84.6%
	협상품목검토	품목	110,000	146,442	133.1%
	중간점검	세부품명	9,000	8,357	92.9%
	원산지확인	건	1,200	0	0.0%

자료: 조달청

2016년 총 10개사가 원산지 위반으로 적발되는 등 조달 과정에서의 원산지 위반이 발생하고 있으며, 종합쇼핑몰의 공급 비율 역시 매년 증가하고 있으므로 원산지 확인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조달청은 원산지 중점점검 대상물품을 확대하고 2018년도 업무위탁 시 원산지 확인을 강화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1-2. 불공정조달행위 조사 및 관리 강화 필요 등

가. 현 황

조달물자 계약 및 관리 사업⁵⁾의 내역사업인 불공정조달행위 조사 및 관리 사업은 2018년도 예산안에 1억 8,700만원이 신규로 반영되었다. 불공정조달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⁶⁾에 법적 조사권이 신설되었으며, 조달청은 2017년 2월 조직개편을 통해 조사전담인력을 기존 8명에서 17명으로 확대하였다. 신규 반영된 예산은 조사활동에 사용되는 여비 및 불공정 부당행위 관련 환수소송비이다.

[2018년도 조달물자 계약 및 관리 사업 예산안 현황]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16 결산	2017		2018 예산안(B)	증감	
		본예산	추경(A)		B-A	(B-A)/A
조달물자 계약 및 관리	2,536	3,127	3,127	3,289	162	5.2
불공정조달행위 조사 및 관리	0	0	0	187	187	순증

자료: 조달청

5) 코드: 조달특별회계 1235-334

6)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9조(불공정한 수요물자 조달행위의 조사) ① 조달청장은 수요물자 조달과정에서 공정성을 해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이하 "불공정한 수요물자 조달행위"라 한다)에 대하여 신고를 접수하고, 그 신고 내용의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계약상대자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사무소·사업장·공장 등을 방문하여 시설·서류 등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1.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 등이 입찰 또는 계약, 납품검사 등에 관한 서류를 위조·변조하거나 거짓 서류를 제출하는 행위
 2. 직접생산기준을 위반하여 납품하는 행위
 3.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여 납품하는 행위
 4. 수요기관 등의 사전 승인 없이 계약규격과 상이한 제품을 납품하는 행위
 5. 우수조달물품등의 지정을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행위
- ② 제1항에 따라 조사를 수행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 ③ 제1항에 따라 조사를 수행하는 공무원은 이 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행하여야 하며, 다른 목적 등을 위하여 권한을 남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④ 조달청장은 불공정한 수요물자 조달행위가 확인된 계약상대자에 대하여는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이나 계약조건에 따라 처분 등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⑤ 제4항에 따라 시정요구를 받은 계약상대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달청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나. 분석의견

첫째, 불공정조달행위에 대한 효과적인 조사를 위하여 기존의 불공정조달행위 신고센터 외 향후 구축될 공공조달 계약이행 확인시스템에 대한 활용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2016년 기준 324만 건, 118조원에 달하는 계약이 이루어지는 공공조달시장에서 직접 생산·원산지 위반, 가격 부풀리기 및 계약관련 서류 위변조 등과 같은 조달업체의 불공정 행위가 발생하고 있다. 불공정 조달행위는 조달품질 및 서비스를 저하시키고 조달시장의 공정성을 훼손하는 한편, 품질이 낮은 물자의 공급으로 정부예산 낭비를 유발하는 등 부작용이 크다.

불공정조달행위에 대한 조사 및 적발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납품규격·원산지·직접생산 위반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기초 자료가 마련될 필요가 있다. 지금까지 조달청은 불공정조달행위 신고센터를 운영하여 불공정조달행위를 적발해 왔다. 신고센터를 통해 2016년 228건의 신고가 접수되어 147개 업체가 적발되는 등 신고 및 적발 건수가 증가하고 있는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불공정조달행위 신고센터 운영 실적]

(단위: 건, 개, %)

	접수건수	조사대상 업체수(A)	적발업체수(B)	적발률(B/A)
2013년	71	29	24	88.9
2014년	123	77	27	35.1
2015년	239	322	157	48.8
2016년	228	277	147	53.1

자료: 조달청

그러나 신고센터를 통해 접수된 불공정조달행위는 전체 조달시장 규모에 비하여 매우 적을 것으로 보이므로 보다 효과적인 조사를 위해서는 불공정조달행위에 대한 사전적 감시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2017년 불공정 조달행위를 감시하고, 이상 징후가 포착된 행위에 대해 조사·시정조치 등을 지원하기 위해 공공조달 계약이행 확인시스템이 구축 중이므로 동 시스템을 조사에 활용할 필요가 있다. 구체적으로는 시스템 상 업체의 계약이행 내역과 불공정 조달행위 유형을 연계해 불공정조달행위 의심업체 선별 모델을 개발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둘째, 불공정조달행위의 적발 및 환수와 관련된 성과지표를 설정하여 관리할 필요가 있다.

2018년도 조달물자 계약 및 관리 사업의 성과지표는 ‘물품구매 종합만족도’와 ‘종합 쇼핑물 공급 실적’으로 불공정조달행위 조사와 관련된 성과지표를 별도로 관리하고 있지 않다. 불공정조달행위 조사에 대한 법적 조사권이 신설되고, 불공정조달행위 근절이 강조되는 상황을 감안하여 ‘불공정조달행위 적발 실적’, ‘부당이득 환수액’ 등 불공정조달행위 조사와 관련된 성과지표를 설정하여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⁷⁾

셋째, 피복비의 반영 필요성에 대하여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불공정조달행위 조사 및 관리 사업에는 직원 17명에 대한 현장조사복 구매 예산 340만원이 반영되어 있다. 조달청은 조사원들의 합동조사 시 통일된 제복 착용으로 조사신뢰성을 확보하고 조사원들의 조사 활동성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한다.

그러나 「2018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세부지침」에 따르면 피복비(210-03)는 작업복을 포함한 상시착용 근무피복, 침구 및 개인장구 구입비에 대하여 편성하도록 되어 있으며, 불공정조달행위에 대한 현장조사는 상시적으로 이루어지는 행위가 아니라는 점에서 피복비 편성 대상이라 보기 어렵다.

조달청은 조사원의 정복 착용으로 조사신뢰성과 업무 효율성을 확보할 필요성이 있다는 입장이나, 법령상으로도 근무조사 과정에서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제출하면 충분하며, 정복 착용 여부에 따라 조사신뢰성과 업무 효율성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기는 어렵다. 세무조사를 실시하는 국세청에도 별도의 피복비는 반영되어 있지 않다는 점을 고려할 때 피복비 340만원의 반영 필요성에 대하여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7) 조달청은 2017년 정식 직제 개편으로 신규 편성된 사업임을 감안하여 향후 3년간의 운영실적과 구체적 사업성과를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향후에 성과지표를 반영하겠다는 입장이다.

III

개별 사업 분석

1

설계적정성검토 수수료 반영 필요

가. 현 황

시설계약사업수입¹⁾ 예산은 시설공사 및 기술용역 계약, 총사업비 검토, 공사원가 사전검토 수입 등으로 구성된다. 2018년도 예산안은 전년 대비 10억원 증가한 385억원이 편성되었다.

[2018년도 시설계약사업수입 예산안 현황]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16 결산	2017		2018 예산안(B)	증감	
		본예산	추경(A)		B-A	(B-A)/A
시설계약사업수입	27,686	37,500	37,500	38,500	1,000	2.7

자료: 조달청

나. 분석의견

기획재정부와의 조속한 협의를 통해 설계적정성검토 수수료를 반영할 필요가 있다.

설계적정성검토 수수료란 예산의 효율적 집행 및 부실공사 방지를 위하여 「총사업비 관리지침」 제57조2)에 따라 총사업비 관리대상 건축사업의 계획설계·기본설계 완료 후 실시설계 완료 이전에 설계의 적정성을 검토하고 수요기관으로부터 받는 수수료를 의미한다.

정수현 예산분석관(shjeong@assembly.go.kr, 788-3736)

1) 코드: 조달특별회계 45-454

2) 「총사업비 관리지침」

제57조(설계의 적정성 검토) ③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중앙관서의 장은 건축사업의 경우 계획설계·기본설계 완료 후 및 실시설계 완료 이전에 조달청장에게 설계의 적정성에 대한 검토를 의뢰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설계에 대한 적정성 검토를 의뢰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건설기술 진흥법」 제6조에 의한 기술자문위원회를 두고 있는 중앙관서의 장이 그 기술자문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작성한 계획설계
2.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의3제4항에 따라 조달청장에게 당해 건축사업과 관련한 설계용역 관리, 공사원가 검토 및 공사관리 등을 대행(이하 “맞춤형 서비스”라 한다)하는 경우의 계획설계·중간설계·실시설계

2016~2017년 예산에는 설계적정성검토 수수료 수입이 편성되었으나, 「조달수수료 고시」에 동 수수료가 반영되지 않아 2016년 동 수수료 예산 72억 9,000만원이 전액 미수납되었으며, 2017년도 예산 16억 9,200만원도 수납되지 못할 것으로 전망된다. 2018년도 예산안에는 수입이 계상되지 않았다.

[시설계약사업수입 연도별 사업규모 및 전망]

(단위: 백만원)

구분	2016 결산		2017 예산		2017 전망		2018 예산안	
	사업 규모	수입	사업 규모	수입	사업 규모	수입	사업 규모	수입
공사계약	104,278	13,206	120,000	13,920	102,000	12,750	125,800	15,599
맞춤형서비스	25,345	8,667	25,660	14,164	22,993	9,605	29,240	14,327
총사업비	79,030	2,560	114,000	4,104	100,000	3,600	123,350	4,441
공사원가 검토	12,319	374	20,000	560	17,000	493	20,000	580
설계적정성검토	44,648	0	47,000	1,692	53,538	0	53,538	0
기술용역	3,847	2,879	4,000	3,060	3,900	2,828	4,900	3,553
합계	269,467	27,686	330,660	37,500	299,431	29,276	356,828	38,500

자료: 조달청

그러나 2017년 8월 기준 총 17명³⁾의 직원이 설계적정성검토 업무를 수행하고 있고, 2016~2017.8월 총 280건의 검토를 수행하는 데에 약 28억 100만원의 예산이 집행되었다.

[설계적정성검토에 소요되는 예산]

(단위: 건, 백만원)

연도	검토 건수(A)	집행액			건당 집행액 (B/A)
		자문수당	인건비 ¹⁾	합계(B)	
2016	164	577	1,083	1,660	10
2017. 8.	116	419	722	1,141	9.8
합계	280	996	1,805	2,801	10

주: 1) 인건비: [12명(공무원)×64,865천원(1인당 평균 인건비)×1.15(연금 등)] + [5명(지원관)×31,440천원(인건비)×1.2(부담금 등)]=1,083백만원

자료: 조달청

3) 투입 인력은 과장 1명, 5급 이상 3명, 6급 이하 8명, 계약직 5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기획재정부는 수수료 신설 시 국가재정에 부담이 된다는 사유를 들어 현행 수수료 부과 체계 전반을 검토한 후 수수료를 신설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설계적정성검토 수수료 수입은 2016년 예산안이 편성되던 2015년경 도입 검토가 시작되었으므로, 2년이 지난 지금도 수수료 부과 체계 전반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기획재정부의 입장은 타당하지 않다.

특히 조달특별회계는 자체 수입을 통해 비용을 충당하는 기업특별회계로서, 수수료 고시가 지연될 경우 조달특별회계의 건전성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므로, 설계적정성검토 소요 비용에 상응하는 수수료를 부과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기획재정부와 조달청 간 협의를 통하여 조속히 「조달수수료 고시」를 개정하고 설계적정성검토 수수료 수입을 예산안에 계상할 필요가 있다.

가. 현 황

조달청은 「국유재산법」¹⁾ 및 동법 시행령²⁾에 따라 국유재산 현황의 조사, 국유재산 관리 실태의 확인·점검, 은닉재산의 사실조사와 국가 환수 및 귀속에 관한 사무 등을 수행하고 있다. 국유재산 조사 및 관리 사업³⁾은 각 관리청의 국유재산 관리 실태를 조사·점검하고, 무주부동산 및 과거 일본인 명의 은닉추정재산에 대한 국유화 등을 수행하는 사업이다. 2018년도 예산안은 전년 대비 2억 4,000만원 감소한 16억 2,100만원이다.

[2018년도 국유재산 조사 및 관리 사업 예산안 현황]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16 결산	2017		2018 예산안(B)	증감	
		본예산	추경(A)		B-A	(B-A)/A
국유재산 조사 및 관리	1,981	1,861	1,861	1,621	△240	△12.9
계약직 운영	819	859	859	932	73	8.5
국유재산 현장조사 및 실태점검	436	472	472	494	22	4.7
권리보전	726	530	530	195	△335	△63.2

자료: 조달청

정수현 예산분석관(shjeong@assembly.go.kr, 788-3736)

1) 「국유재산법」

제25조(총괄사무의 위임 및 위탁) 총괄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에서 규정하는 총괄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조달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하거나 정부출자기업체 또는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2)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16조(총괄사무의 위임 및 위탁) ① 총괄청은 법 제25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조달청장에게 위임한다.

1. 법 제2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총괄사무를 지원하기 위한 국유재산 현황의 조사 등에 관한 사무(제2항제1호에 따른 사무는 제외한다)
2. 법 제21조제3항에 따른 감사(監査) 및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지원하기 위한 국유재산 관리 실태의 확인·점검에 관한 사무
3. 법 제24조에 따른 소관 중앙관서의 장의 지정에 관한 사무
4. 삭제
5. 은닉된 국유재산 및 소유자 없는 부동산(이하 "은닉재산등"이라 한다)의 사실조사와 국가 환수 및 귀속에 관한 사무
6. 장래의 행정수요에 대비하기 위한 비축용 토지의 취득에 관한 사무
7.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그 밖의 법률에 따른 총괄청 소관 일반재산의 무상귀속 협의에 관한 사무
8. 청사, 관사 등의 신축에 필요한 토지·건물의 조사에 관한 사무

3) 코드: 조달특별회계 1132-331

나. 분석의견

조달청의 지출구조조정 조치는 예산의 자연스러운 감소분을 구조조정액으로 계상하였다는 점에서 미흡했던 것으로 보이며, 드론 등 첨단기술을 활용한 실태조사로 여비 등 지출경비를 절감하겠다는 계획 역시 이행하지 않았다.

국유재산 조사 및 관리 사업은 2017년 시행된 통합재정사업평가 결과 ‘미흡’ 등급을 받았다. 주요 미흡 사유는 분기별 집행계획 미준수, 제도개선을 통한 예산절감 노력 부족 등이었으며, 조달청은 동 사업의 2017년 예산액 중 2억 8,000만원을 삭감한 15억 8,100만 원을 편성하겠다는 지출구조조정대책을 기획재정부에 제출하였다. 구체적으로 ① 일본인 명의 은닉의심재산 자체 소송 추진을 통해 운영비 예산을 절감하고, ② 드론 등 첨단기술을 활용한 실태조사를 통해 여비 등 지출경비를 절감하겠다는 계획을 수립하였다.

조달청은 동 사업에서 총 2억 4,0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대부분의 감액 재원이 은닉재산 등 국유화 소송에 대한 소송비용이었다. 구체적으로 은닉재산 등 국유화 소송 예산이 2017년 4억 2,500만원에서 2018년 5,000만원으로 3억 7,500만원 감액 편성되었으며, 나머지 예산은 전년과 동일하거나 일부 증액되었다.

그러나 ① 은닉재산 등 국유화 소송 예산의 감소는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이용하여 불법으로 사유화하고 있는 일본인 명의 은닉의심재산소송이 대부분 마무리⁴⁾되어 이미 예상되었던 것으로 부처의 자체 노력에 따른 지출구조조정이라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2018년도 소송 역시 위탁으로 진행될 예정으로, 은닉의심재산에 대한 자체 소송 추진을 통한 경비 절감 역시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또한 ② 드론 등 첨단기술을 활용한 실태조사로 여비 등 지출경비를 절감하겠다는 계획을 제출하였으며 2018년도 전산운영경비 사업 예산안에 국유재산 실태조사용 드론 구매 예산 2억원이 반영되어 있음에도, 국유재산 조사 및 관리 사업의 국유재산 현장확인 점검 여비가 전혀 감액되지 않았다.

따라서 조달청의 지출구조조정 조치는 예산의 자연스러운 감소분을 구조조정액으로 계상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으며, 드론 등 첨단기술을 활용한 실태조사로 여비 등 지출경비를 절감하겠다는 계획 역시 이행하지 않았다고 볼 수 있다.

조달청은 국유재산 실태조사 필지 수 증가⁵⁾ 및 운용인력의 증가⁶⁾에도 불구하고 국내

4) 조달청은 2017년 3월 특별조치법 시행기간 동안 일본인에서 한국인으로 소유권이 이전된 과거 일본인 토지 10,544필지를 조사 완료하고 은닉의심재산 471필지를 최종 추출하였다.

여비는 2015년 전년 대비 오히려 감액되었으며, 이후로도 증액되지 않아⁷⁾ 2016년에는 1,200만원을 자체 전용하여 충당하는 등 여비 예산이 부족한 실정이라고 설명한다. 또한 조속한 국유재산 실태조사 완료를 위해 매년 조사실적을 높여야 하는 실정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향후에는 지출구조조정 가능한 사업 및 비목에 대하여 계획을 수립하는 등 조달청의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5) 조사필지수: (‘14년)50,000필지 → (‘15년) 79,194필지 → (‘16년) 94,800필지 → (‘17년) 96,025필지 예정

6) 국유재산인력(계약직포함) : (‘14년)72명 → (‘15년)72명 → (‘16년)75명→ (‘17년)75명

7) 연도별 여비예산: (‘14년)1억 6,052만원→ (‘15년)1억 5,624만원 → (‘16년)1억 5,624만원→ (‘17년)1억 5,624만원



통 계 청

1

현황

2018년도 통계청 소관 예산안은 일반회계로만 구성된다.

2018년도 통계청 소관 세입예산안은 27억 8,600만원으로 전년 대비 4억 6,400만원(14.3%) 감소하였다. 통계청 소관 세입 총계는 총수입과 동일하다.

[2018년도 통계청 소관 세입예산안]

(단위: 백만원, %)

	2016 결산	2017		2018 예산안(B)	증감	
		본예산	추경(A)		B-A	(B-A)/A
일반회계	3,661	3,250	3,250	2,786	△464	△14.3

주: 총계 기준

자료: 통계청

2018년도 통계청 소관 세출예산안은 2,971억 8,600만원으로 전년 대비 52억 7,000만원(1.8%) 증가하였다. 통계청 소관 세출 총계는 총지출과 동일하다.

[2018년도 통계청 소관 세출예산안]

(단위: 백만원, %)

	2016 결산	2017		2018 예산안(B)	증감	
		본예산	추경(A)		B-A	(B-A)/A
일반회계	320,196	285,595	291,916	297,186	5,270	1.8

주: 총계 기준

자료: 통계청

통계청의 2018년도 신규사업은 총 2개 사업, 34억 8,100만원 규모이다. 통계서비스정책관 기본경비 사업은 조직신설을 반영하여 신설되었으며, OECD 세계포럼 사업은 2018년 OECD 세계포럼 개최를 위한 것이다.

[통계청 2018년도 예산안 신규사업]

(단위: 백만원)

	세부사업명	2018 예산안
일반회계 (2개)	통계서비스정책관 기본경비	55
	OECD 세계포럼	3,426
합 계		3,481

자료: 통계청

2018년도 주요 증액사업을 살펴보면 ① 통계데이터센터 구축 및 운영 ② 국제통계협력 강화 ③ 개도국 통계지원(ODA) 등이 전년 대비 증액되었다. 통계데이터센터 구축 및 운영 사업은 2017년 통계데이터센터 구축 및 운영과 관련된 ISP사업이 완료되어 센터 구축과 관련한 데이터센터 서비스 시스템 구축 및 데이터분석용 통계패키지 도입 예산이 반영되었고, 국제통계협력강화 사업은 인구주택총조사 사업의 아태인구활동 내역사업 이관으로 증액되었다. 개도국 통계지원(ODA) 사업은 라오스 역량강화 지원 예산이 확대되었다.

[통계청 2018년도 예산안 주요 증액사업]

(단위: 백만원, %)

	세부사업	2017		2018 예산안(B)	증 감	
		본예산	추경(A)		B-A	(B-A)/A
일반회계 (6개)	통계데이터센터 구축 및 운영	150	150	3,372	3,222	2,148.0
	동북 수입대체경비	64	64	104	40	62.5
	호남 수입대체경비	87	87	177	90	103.4
	충청 수입대체경비	55	55	134	79	143.6
	국제통계협력강화	951	951	2,358	1,407	147.9
	개도국 통계지원(ODA)	1,540	1,540	2,537	997	64.7
합 계		2,847	2,847	8,682	5,835	205.0

주: 주요 증액사업은 2017년도 추경예산 대비 30% 이상 또는 100억원 이상 증액된 사업

자료: 통계청

2018년도 통계청 예산안의 주요 특징을 살펴보면 ① 제6차 OECD 세계포럼 개최를 위한 예산이 신규 편성되었고, ② 통계데이터센터의 서버 등 구축 예산이 증액되었다.

2018년도 통계청 소관 예산안에 대한 분석 결과 예산안의 심의 및 향후 집행에 있어서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한 고려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첫째, OECD 세계포럼 개최와 관련하여 세부 주제를 조속히 확정하고 예산을 일부 조정할 필요가 있다.

둘째, 통계데이터센터와 관련하여 정확한 수요조사를 거쳐 권역별 지소를 확대할 필요가 있으며, MDIS와 제공하는 서비스가 중복될 우려가 있으므로, 장기적으로 기능 통합·연계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II

주요 현안 분석

1

통계 현행화율 개선 필요

가. 현 황

통계DB통합 및 포털서비스 사업¹⁾의 내역사업인 통계정보포털 서비스 사업은 국가통계통합DB자료를 관리하고, 국가통계포털시스템 유지관리·기능개선을 수행하는 사업이다. 2018년도 예산안은 전년 대비 9,500만원 증가한 29억 1,500만원이다.

[2018년도 통계DB통합 및 포털서비스 사업 예산안 현황]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16 결산	2017		2018 예산안(B)	증감	
		본예산	추경(A)		B-A	(B-A)/A
통계DB통합 및 포털서비스	4,245	5,503	5,503	6,035	532	9.7
통계정보포털서비스	2,857	2,820	2,820	2,915	95	3.4

자료: 통계청

한편, 통계청은 통계의 보급 및 이용을 확대하기 위하여 「통계법」²⁾ 및 동법 시행령³⁾에 따라 국가통계포털(KOSIS)을 운영하고 있으며, 국민들이 신속하고 편리하게 공표된 통계를 이용할 수 있도록 통계작성기관으로부터 통계데이터베이스를 제출받고 있다.

정수현 예산분석관(shjeong@assembly.go.kr, 788-3736)

1) 코드: 일반회계 2032-302

2) 「통계법」

제28조(통계의 보급) ③ 통계청장은 통계데이터베이스의 구축·연계 및 통합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통계작성기관이 보유하는 데이터베이스자료 등 세부적인 통계 관련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요구를 받은 통계작성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3) 「통계법 시행령」

제43조(통계데이터베이스의 구축·운영) ④ 통계작성기관의 장은 통계데이터베이스의 통계자료와 설명자료를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갱신하여야 한다.

나. 분석의견

첫째, 통계청은 국가통계포털(KOSIS)의 현행화율을 개선하는 등 적시성 있는 통계자료 제공을 위하여 노력할 필요가 있다.

「통계법 시행규칙」⁴⁾에 따르면 통계작성기관은 통계 공표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통계청에서 구축한 통계데이터베이스시스템에 데이터를 입력하거나 연계양식에 의한 데이터를 통계청에 전송하여야 한다.

통계청은 동 규정에 따라 공표된 통계가 30일 이내에 KOSIS에 수록되는 비율인 현행화율을 2014년 3월부터 관리하고 있다. 현행화율은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산식으로 계산된다.

$$\text{현행화율} = \text{공표 후 30일 이내 KOSIS 수록 통계표수} / \text{전체 서비스 통계표수} \times 100$$

현행화율에 반영되는 통계는 2014년 당시 중앙행정기관 통계에만 한정되었으나, 2014년 시군구통계의 KOSIS 서비스로 2015년 2월부터 시군구 통계를 현행화율에 반영하기 시작하였다. 2016년부터는 지정기관 현행화율을 별도 관리하는 등 현행화율에 반영되는 통계의 범위가 확대되고 있다.

그러나 2017년 8월 기준 KOSIS 수록자료 현행화율은 80.4%로 다수의 통계가 30일 이내에 KOSIS에 등록되지 못하고 있다. 작성 주체별로 살펴보면 중앙행정기관의 현행화율은 90%대로 높은 편이나 지방자치단체의 현행화율이 저조한 상황이다. 통계청은 국가통계 통합DB자료관리 위탁운영 등을 통해 현행화지연기관의 입력을 독려하고 있으나, 작성기관 담당자의 잦은 인사이동, 인식부족 등으로 자료전송이 지연되어 현행화율 관리에 어려움이 있다는 입장이다.

4) 「통계법 시행규칙」

제22조의3(통계데이터베이스의 구축·연계 및 통합) ② 제1항에 따른 통계데이터베이스시스템 또는 그 연계양식을 제공받은 통계작성기관의 장은 법 제28조제3항에 따라 통계청장이 통계데이터베이스의 구축·연계 및 통합을 위하여 통계 관련 자료제출을 요구할 경우 통계 공표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통계청에서 구축한 통계데이터베이스시스템에 데이터를 입력하거나 연계양식에 의한 데이터를 통계청에 전송하여야 한다. 다만, 통계작성기관의 장은 예산 및 인력 부족,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30일 이내에 데이터를 입력하거나 전송할 수 없는 경우에는 통계청장과 협의하여 30일 이내의 범위에서 입력 또는 전송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KOSIS 수록자료 월별 현행화율]

(단위: %)

월별	2014	2015	2016	2017				
				전체	중앙행정기관	지자체	시군구(별도)	기타기관
1월	-	88.4	88.8	93.7	96.9	90.8	89.0	93.5
2월	-	80.5	73.5	87.1	93.2	81.2	78.3	88.3
3월	81.9	81.1	74.2	84.8	93.2	76.1	71.4	87.9
4월	85.7	78.2	74.3	81.1	95.0	66.2	57.4	89.8
5월	85.9	72.9	71.2	75.2	94.3	53.9	44.3	88.8
6월	85.6	75.0	75.7	75.9	95.0	53.7	43.7	91.1
7월	85.9	75.5	79.5	77.6	94.7	57.8	46.5	91.6
8월	86.8	78.3	82.9	80.4	98.3	60.2	48.6	93.5
9월	87.4	83.0	87.2	-	-	-	-	-
10월	87.8	84.9	89.9	-	-	-	-	-
11월	88.6	87.5	92.5	-	-	-	-	-
12월	89.0	88.3	94.0	-	-	-	-	-

주: 1. '14.3월부터 현행화율 관리
 2. '15.2월부터 시군구 통계 현행화율에 반영
 3. '16.1월부터 지정기관 현행화율 별도관리
 자료: 통계청

「통계법」에서는 통계가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등의 비밀이 보장되는 범위 안에서 널리 보급·이용되어야 한다는 점을 기본 이념으로 하고 있으며, 통계이용자의 이용 편의를 위해 통계청장으로 하여금 통계데이터베이스의 구축·연계 및 통합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다⁵⁾. 이는 통계자료의 작성만큼 통계자료의 적시 공개가 중요함을 의미하며, 작성된 통계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행위는 「통계법 시행규칙」의 위반 소지가 있다.

특히 중앙행정기관보다는 지자체의 현행화율이 낮은 것으로 보이므로, 지자체의 통계담당자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고 법령 위반 소지가 있다는 점을 알리는 등 통계청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5) 「통계법」

제2조(기본이념) ③통계는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등의 비밀이 보장되는 범위 안에서 널리 보급·이용되어야 한다.

제28조(통계의 보급) ②통계청장은 제27조제6항 및 제29조제2항에 따라 제출된 통계결과와 통계간행물 및 그 발간내역을 통계이용자에게 널리 제공할 수 있도록 통계데이터베이스의 구축·연계 및 통합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둘째, 통계청은 “KOSIS 통계자료 이용 건수” 뿐 아니라 “통계 자료의 현행화율”을 성과지표로 설정하여 지속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

통계DB통합 및 포털서비스 사업의 성과지표는 “KOSIS 통계자료 이용 건수”만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통계 자료의 적시 제공 여부를 나타내는 현행화율을 관리하기 위한 성과지표는 설정되어 있지 않다. 그러나 시의성 있는 통계정보서비스 제공 측면에서 현행화율 역시 매우 중요하다.

따라서 현재의 성과지표 외 통계 자료의 현행화율을 성과지표로 추가하여 보다 적극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III

개별 사업 분석

1

OECD 세계포럼 예산 조정 필요 등

가. 현황

통계청은 2018년 OECD 세계포럼 사업¹⁾ 예산 34억 2,6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다. 동 사업은 '18.11.27~29 인천에서 개최될 예정인 통계·지식·정책에 관한 제6차 OECD 세계포럼(The 6th OECD World Forum on Statistics, Knowledge and Policy) 행사비용으로, 통계청은 대규모 국제회의 개최를 통해 세계 선진국과의 활발한 국제적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2018년도 OECD 세계포럼 사업 예산안 현황]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16 결산	2017		2018 예산안(B)	증감	
		본예산	추경(A)		B-A	(B-A)/A
OECD 세계포럼	0	0	0	3,426	3,426	순증

자료: 통계청

나. 분석의견

OECD 세계포럼 사업과 관련하여 다음 사항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첫째, 통계청은 3차 포럼과의 차별화를 위하여 6차 포럼의 세부 주제 및 세부 회의 일정을 조속히 확정할 필요가 있다.

통계청이 지난 2009년 3차 OECD 세계포럼을 개최한 바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6차 포럼의 개최 필요성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기 개최된 3차 포럼과의 차별화가 필요하다. 4일

정수현 예산분석관(shjeong@assembly.go.kr, 788-3736)

1) 코드: 일반회계 7031-303

간(10.27~30) 부산에서 개최된 3차 포럼은 ‘발전 측정, 비전 수립, 삶의 질 향상(Charting Progress, Building Visions, Improving life)’을 주제로 하고 있고, 2018년 개최 예정인 6차 포럼은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부와 기업의 역할, 디지털화, 스마트 시티, 성 평등 등’을 주제로 하고 있어 두 회의 간 의제가 유사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²⁾

그러나 통계청은 2017년 9월 현재 구체적인 6차 포럼의 세부 의제 및 이에 따른 세부 회의 일정을 확정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³⁾이므로, 6차 회의의 개최 필요성과 관련하여 3차 회의와의 차별성을 보여줄 수 있도록 회의의 세부 의제 등을 조속히 확정할 필요가 있다.

[3차 포럼 및 6차 포럼의 주요 내용 비교]

	3차포럼	6차포럼
행사기간	2009.10.27.~10.30.	2018.11.27.~11.29.
행사장소	부산광역시	인천광역시(잠정)
참가 규모	85개국 2,024명 (외국인 418명)	100개국 2,000명 예상 (외국인 1,000명 예상)
주제	발전 측정, 비전 수립, 삶의 질 향상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부와 기업의 역할, 디지털화, 스마트 시티, 성 평등 등
예비회의	미개최	개최 예정(2018.4, 2일간)
개최도시 비용분담	임차료 50% 분담 자체홍보계획 수립·시행 자체 문화 공연 개최 관광프로그램 수립·시행 만찬 1회, 발표자만찬 1회 제공	협의 중 (임차료 50% 분담, 문화관광 패키지 제공 등 요청 예정)

자료: 통계청

또한 세부 주제 및 개최지, 일정 등 세부 계획을 확정하는 과정에서 인천광역시와의 비용 분담 여부 및 구체적 분담 내역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통계청은 잠정적으로 인천광역시에 위치한 송도에서 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며, 이 경우 회의 진행과 관련된 경비 일부를 분담 요청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현재 편성된 회의시설·부대시설 임차료 1억 1,400만원에는 개최도시와의 비용분담분이 반영되지 않았으므로, 향후 개최도시와의 비용 분담 비율이 확정 되는대로 임차료를 감액 조정해야 할 것이다.

2) 통계청은 지난 3차 포럼이 새로운 발전지표 체계 마련이 주 목적이었던 데 비해, 6차 포럼은 국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복지, 노동, 환경 등 다양한 분야의 정책연계성이 주 목적인다고 설명한다.

3) 통계청은 세부 의제를 OECD와 협의하여 조속히 마련할 계획이라는 입장이다.(17.10. 하순 한-OECD 화상회의 계획)

둘째, 예비회의를 개최하기보다는 OECD 세계포럼 의제 발굴을 위한 실무협의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통계청은 2018년 11월 본회의 개최 이전에 OECD 관계자 및 국제기구 대표, 각국 통계청장 등 국외 인사를 포함하여 이들 간 예비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통계청은 ① 내부적으로 국제행사심사 확정 전이어서 OECD와 6차 포럼 의제발굴을 위한 구체적 논의가 진행되기 어려웠으므로 예비회의를 통해 보완할 필요가 있고, ② 각국 통계청장을 초청하여 6차 포럼에 대한 관심을 환기시키고 국내적으로도 6차 포럼 개최사실을 홍보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는 입장이다.

그러나 ① 지난 5차례의 세계 포럼 중 2007년 터키에서 개최된 2차 포럼을 제외하고는 예비회의가 개최된 적이 없으며, ② 6차 포럼을 위한 세부 계획이 아직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각국의 통계청장이 참가하는 또 다른 행사를 개최하는 것은 불필요한 예산 및 인력의 소요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실무적인 접촉을 통해 구체적 의제를 개발하고 공유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예비회의와 관련된 예산 1억 6,500만원을 감액하거나, 일정을 축소하여 6차 OECD 세계포럼 의제 발굴을 위한 실무회의를 개최하는 방향으로 계획을 수정할 필요가 있다.

[예비회의 관련 예산안 편성 내역]

항목	내용	금액
행사장 대관 및 조성	호텔 회의장을 대관하여 행사장 조성	1,100만원
초청비	주요 참석자(각국 통계청장 등) 16명에 대한 항공료, 숙박비, 일비 등	5,700만원
식음료	회의 중간 커피브레이크, 오찬, 환영 만찬 등	2,100만원
행사지원	시스템 및 기자재 설치, 통역 제공, 인쇄 및 제작물 홍보 등	3,900만원
PCO ¹⁾ 관련비용	일반관리비, PCO 수수료, 부가세	3,700만원
합 계		1억 6,500만원

주: 1) PCO(Professional Convention Organizers)란 국제회의 전문용역업체로서 각종 국제회의, 전시회 등의 개최 관련 업무를 위임받아 대행하는 업체를 의미함

자료: 통계청

셋째, ① 외빈초청경비, ② 소모품 제작비용, ③ 부대행사 비용 등 과다편성된 것으로 보이는 행사비용 일부를 감액할 필요가 있다.

① 통계청은 국제기구 및 OECD 관계자, 연사 등 총 84명의 외빈초청경비로 5억원의 예산을 편성하였다. 이 중 외빈에 대한 숙박비의 경우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의 「2018년도 제6차 세계포럼 타당성조사 결과보고서」에서 숙박비가 과다 계상되어 숙박일수를 6일에서 5일로 조정하도록 권고하였음에도 예산안 편성 과정에서 반영되지 않았다. 84명의 외빈에 대한 숙박비 1억 2,600만원 중 2,100만원을 감액할 필요가 있다.

② 소모품 제작비용 2억 2,400만원은 각종 인쇄비용, 참가자 배부물품, 소모품 등으로 구성된다. 프로그램북의 경우 권당 인쇄비용이 2만원으로 편성되어 있는데, 2009년 각 목명세서에서는 예비프로그램북 2,400원, 본프로그램북 5,000원으로 계상되어 있으므로 권당 1만원 가량이 과다계상되었다. 따라서 3,000만원이 감액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디자인 시안비, 리플렛·디렉토리 북, 결과보고서 등 도서인쇄비용 역시 「2018년도 제6차 세계포럼 타당성조사 결과보고서」에서 시장단가 대비 과다계상되어 약 1,460만원을 감액할 것이 권고되었다. 예를 들어 결과보고서 인쇄비용은 권당 20만원으로 편성되어 있는데, 2009년에는 단가가 5만원에 불과하였다. 동 평가 결과 등을 감안하여 예산을 1,500만원 감액할 필요가 있다.

③ 부대행사 비용 중 1,100만원은 행사 참여자에 대한 각테일리셉션 비용으로 편성되어 있다. 구체적 편성 단가는 9,000원×1,300명으로 계상되어 있는데 2009년 3차 포럼 당시에도 예산이 편성되었으나 프로그램이 취소되며 실제 집행되지는 않았다는 점을 고려할 때, 반드시 편성해야 할 예산이라 보기 어렵다.

커피, 다과 등에 소요되는 예산 4,300만원은 6,000원×900명×8회로 편성되어 있다. 그러나 2009년 3차 포럼 당시 1일 2회 커피브레이크가 있었다는 점에서 예산이 과다편성된 것으로 보인다. 6,000원×900명×6회로 계산할 경우 필요 경비는 3,240만원이므로 1,060만원을 감액할 필요가 있다.

[세부항목별 감액의견]

구 분	2018년도 예산안(A)	수정 의견(B)	감액분(A-B)
외빈 숙박비	25만원×84명×6일=1억 2,600만원	25만원×84명×5일=1억 500만원	2,100만원
프로그램북 인쇄비용	2만원×3,000부=6,000만원	1만원×3,000부=3,000만원	3,000만원
결과보고서 인쇄비용	20만원×100부=2,000만원	5만원×100부=500만원	1,500만원
각테일리셉션	9,000원×1,300명=1,100만원	(삭제)	1,100만원
커피, 다과 등	6,000원×900명×8회=4,300만원	6,000원×900명×6회=3,240만원	1,060만원
합 계			8,760만원

가. 현 황

통계데이터센터 구축 및 운영(정보화) 사업¹⁾은 통계빅데이터의 종합적 수집, 연계·분석, 제공, 관리 등을 총괄하는 통계데이터센터를 구축·운영하는 사업으로, 데이터의 사회적 활용가치 극대화를 위하여 민간데이터와 공공데이터를 연계·융합하고 공유할 수 있는 플랫폼을 구축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2018년도 예산안은 전년 대비 32억 2,200만원 증가한 33억 7,200만원이다.

[2018년도 통계데이터센터 구축 및 운영 사업 예산안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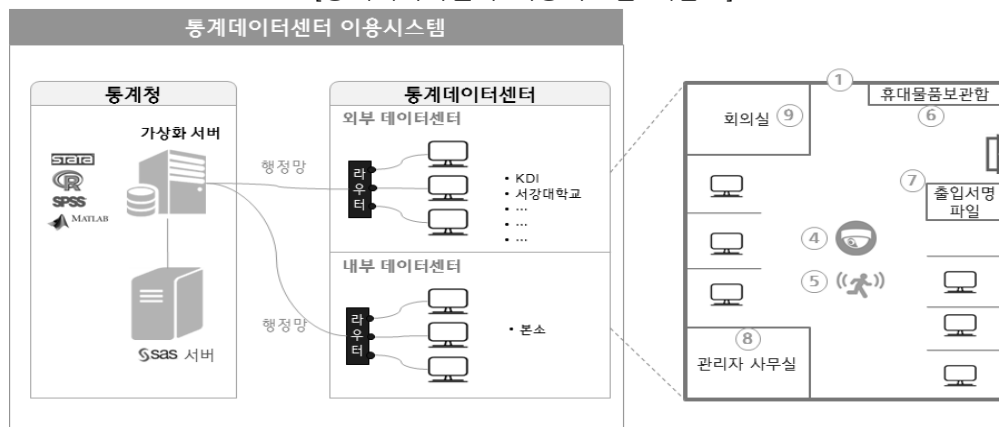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16 결산	2017		2018 예산안(B)	증감	
		본예산	추경(A)		B-A	(B-A)/A
통계데이터센터 구축 및 운영	0	150	150	3,372	3,222	2,148.0

자료: 통계청

통계데이터센터는 통계작성 목적을 위한 행정 통계자료를 제공하고, 공공데이터·민간데이터 간 연계 및 비식별화를 지원하는 독립된 제한공간을 의미한다. 중앙 가상화 서버 상의 데이터와 통계분석툴이 구축되면 개별 데이터센터에서 원격접근하여 이용하는 방식으로 구성된다.

[통계데이터센터 이용시스템 개념도]



자료: 통계청

정수현 예산분석관(shjeong@assembly.go.kr, 788-3736)

1) 코드: 일반회계 2032-308

나. 분석의견

통계데이터센터 구축 및 운영 사업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은 사항이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논의될 필요가 있다.

첫째, ① 2018년 데이터센터 서비스 시스템 구축과 동시에 물리적 센터 구축이 이루어지며, ② 통계데이터센터에 대한 수요가 명확하지 않다는 점을 고려할 때, 정확한 수요조사를 거쳐 권역별 지소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통계청은 동 사업을 통해 2018년 대전 통계청 본소와 서강대 지소, KDI 지소 등 총 3개 센터를 구축할 예정이다. 예산안에는 센터의 물리적 구축과 관련하여 본소 사무실 임차 비용 1억 4,100만원, KDI, 서강대 지소 전용회선 사용료 1,100만원, 센터 내 사무용 기기 비용 1억 1,700만원, 인건비 및 고용부담금 6,000만원 등이 편성되어 있다.

그러나 ① 2018년도 예산을 통해 데이터센터 서비스 시스템 구축이 시작되는 등 사업 추진이 초기 단계인 상황에서 2개 지소는 순차적으로 개소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인다. ② 통계데이터센터에 대한 수요 역시 명확하지 않다. 통계청은 2016년 10월부터 통계데이터센터를 본청과 판교 데이터이용센터에 시범적으로 운영하였는데, 2016년 10월~2017년 6월(9개월) 간 본청 33건, 판교 3건의 저조한 이용 실적을 보였다. 센터 개소 초기이며 홍보가 부족했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월 평균 이용자 수가 급격하게 증가할 것이라 예측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²⁾

또한 통계청 본소는 대전에, KDI 지소는 세종에 위치하고 있어 두 센터 간 지리적인 거리 역시 가깝다는 점을 고려하면 충분한 수요가 뒷받침되지 않은 상황에서 두 센터를 동시에 개소할 필요성에 대하여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³⁾ 따라서 통계청은 2018년 개소 예정인 지소에 대한 정확한 수요조사를 거쳐 권역별 지소를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인다. 이 과정에서 통계데이터센터에 대한 홍보 방안을 함께 마련할 필요가 있다.

2) 통계청은 이용자의 평균 이용기간(1개월 이상 2명), 이용가능 좌석 수(본청 10석, 판교 2석), 이용대상자(행정기관 및 MOU기관 한정)를 고려할 때 단순히 이용 건수로 이용 실적을 판단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또한 현재는 이용대상자를 행정기관 및 MOU기관으로 한정하여 운영하고 있으나, 통계빅데이터센터 오픈과 동시에 이용대상자를 일반이용자까지 확대할 예정이며, 잠재적 수요가 있는 곳에 센터가 설치되면 이용 건수도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다.

3) 통계청은 대전 본소의 경우 통계빅데이터센터의 전반적인 운영 관리와 통계청 내부이용자, 대전정부청사 행정기관, 영호남권 연구기관 등의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며, 세종지소를 세종정부청사에 위치한 행정기관 및 국책연구기관의 수요를 감안하여 설치하는 것으로 설치 목적이 다르다고 설명한다.

둘째, MDIS와 제공하는 서비스가 중복될 우려가 있으므로, 장기적으로 기능 통합·연계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MDIS(MicroData Integrated Service)란 통계조사 원자료에서 조사·입력오류 등을 수정한 개별단위(개인, 가구, 사업체 등) 자료를 의미한다. 통계청은 통계청에서 작성하는 마이크로데이터 뿐만 아니라 정부 각 부처, 지자체, 연구기관 등 타 통계작성기관의 마이크로데이터를 한 곳에 모아 MDIS를 통해 국민들이 다양한 통계자료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하고 있다.

이용자는 ① 원하는 공공용 마이크로데이터를 개인 PC에 직접 다운로드받아 분석·활용하거나, ② 원격접근서비스(RAS)를 통해 승인용 마이크로데이터를 분석할 수 있으며, ③ 필요한 경우 통계망이 차단된 마이크로데이터 이용센터(RDC)를 방문하여 승인용 또는 특수목적용 마이크로데이터를 이용할 수 있다. 이용센터는 통계청 본청(대전), 한국통계진흥원(서울), KDI(세종), 판교 이용센터(성남), 서강대학교(서울)에 위치하고 있다.

이는 지정된 장소 혹은 원격접근을 통해 조사통계에 대한 원데이터를 제공하여 이용자의 통계작성 및 활용을 지원한다는 측면에서 통계데이터센터와 제공 서비스가 중복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효율적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장기적으로 MDIS와의 기능 통합·연계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셋째, 민간자료의 제3자 제공에 대한 법적 근거가 미흡하여 자료 수집 및 이용이 제한될 가능성이 있다.

통계청은 통계데이터센터 구축을 통해 다음과 같이 조사자료와 행정자료, 민간자료를 연계·제공하고자 한다.



자료: 통계청

그러나 민간자료의 경우 이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가 미비한 상황이다. 「개인정보보호법」⁴⁾에서는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을 제한하고 있으며,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통계법」에서 개인정보를 수집·제공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하고 있지 않아 민간자료의 수집에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높다.

특히 「통계법」에서는 개인정보가 개인을 식별할 수 없는 형태로 제공될 것을 규정하고 있으며 행정자료 및 조사자료에 대한 이용 근거만을 규정⁵⁾하고 있어, 향후 통계데이터 센터 운영에 있어 자료 제공의 범위가 제한될 우려가 있다.

4)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제공 제한)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을 때를 제외하고는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다만, 제5호부터 제9호까지의 경우는 공공기관의 경우로 한정한다.

4. 통계작성 및 학술연구 등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제19조(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의 이용·제공 제한) 개인정보처리자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은 경우

2.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5) 「통계법」

제24조(행정자료의 제공)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통계의 작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공기관의 장에게 행정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② 공공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행정자료의 제공을 요청받은 때에는 국가기밀, 개인과 기업의 중대한 비밀의 침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라 공공기관으로부터 제공받은 행정자료는 이를 통계작성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다른 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5조(자료제출명령)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정통계의 작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등에 관계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제30조(통계자료의 제공) ① 통계작성기관의 장은 통계의 작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른 통계작성기관에 통계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통계작성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② 통계작성기관의 장은 다른 통계작성기관의 장에게 제1항에 따라 통계자료를 제공하는 때에는 특정의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등을 식별할 수 없는 형태로 통계자료를 처리한 후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통계작성기관의 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사의 표본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제1항에 따른 요청을 하는 때에는 **특정의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등이 식별되는 형태로 통계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

1. 제18조제1항 또는 제20조제1항에 따라 승인을 받거나 협의를 거친 통계의 작성을 위하여 실시하는 조사

2. 제18조제1항에 따른 승인을 신청하거나 제20조제1항에 따른 협의를 요청한 후 그 통계의 작성을 위하여 예비적으로 실시하는 조사

③ 제2항에 따라 통계작성기관으로부터 제공받은 통계자료는 이를 제공받은 목적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다른 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현 황

통계생산대행 수입대체경비 사업¹⁾은 국가통계의 균형발전을 위해 자체 통계조직이 없거나 취약한 기관에서 필요로 하는 고품질 통계를 작성·개발 및 제공하여, 정부의 정책 수립 및 평가와 각종 의사결정 등에 활용토록 하는 사업이다. 2018년도 예산안은 전년 대비 5억원 감소한 4억원이 편성되었다.

[2018년도 통계생산대행 수입대체경비 사업 예산안 현황]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16 결산	2017		2018 예산안(B)	증감	
		본예산	추경(A)		B-A	(B-A)/A
통계생산대행 수입대체경비	810	900	900	400	△500	△55.6

자료: 통계청

나. 분석의견

통계생산대행 수입대체경비 사업은 대행이 예정된 일부 조사에 대한 예산이 편성되지 않는 등 과소편성된 것으로 보인다.

2018년도 예산안은 전년 대비 5억원 감소한 4억원만이 반영되었는데, 이는 전국다문화가족실태조사(17억원 예상), 유아사교육비조사(20억원 예상)와 관련된 예산이 미반영된 금액이다. 통계청은 당초 다문화가족실태조사와 기타대행조사 예산을 포함한 21억원을 요구하였으며, 기재부 심의 과정(5월)에서 유아사교육비조사 예산 20억원을 추가로 요구하였으나, 동 사업이 통합재정사업평가 결과 ‘미흡’을 받았다는 사유로 정부안에는 4억원만이 반영되었다는 입장이다.

전국다문화가족실태조사는 「다문화가족지원법」 제4조2)에 따라 3년마다 실시되는 조

정수현 예산분석관(shjcong@assembly.go.kr, 788-3736)

1) 코드: 일반회계 3036-652

2) 「다문화가족지원법」

제4조(실태조사 등) ① 여성가족부장관은 다문화가족의 현황 및 실태를 파악하고 다문화가족 지원을 위한 정책수립에 활용하기 위하여 3년마다 다문화가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사로서 통계생산대행 수입대체경비 사업을 통해 2017년 시험조사가 대행되고 있으며, 2018년 본조사 역시 대행될 예정이다.³⁾

유아사교육비조사는 우리나라 유아들의 사교육비 실태를 조사하여 사교육비 경감 대책 및 공교육 내실화 등 교육정책 추진에 필요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조사이다. 2017년 통계생산대행 수입대체경비 사업으로 시험조사가 실시되었으며, 2018년 본조사 예산은 교육부의 국가시책특별교부금 예산으로 편성될 예정이다.

이와 같은 상황을 고려할 경우 2018년도에 편성된 예산안 4억원은 과소하여 집행 과정에서 약 37억원의 대규모 초과지출승인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수입대체경비는 「국가재정법」 제53조⁴⁾에 근거한 예산총계주의 원칙의 예외로서 국가가 용역 또는 시설을 제공함에 따라 직접적인 수입이 발생하는 경우 해당 용역과 시설의 생산·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을 수입대체경비로 지정하고, 그 수입의 범위 내에서 초과지출을 예산 외로 운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초과지출 승인분은 부처의 확정예산 외로 운영되어 실질적으로 확정예산을 확장시키는 효과가 있으므로, 예산의 투명성 강화를 위해 예산을 적정 수준으로 반영할 필요가 있다.

3) 여성가족부의 전국다문화가족실태조사 사업에 일반연구비 예산으로 편성되어있다.

4) 「국가재정법」

제53조(예산총계주의 원칙의 예외) ① 각 중앙관서의 장은 용역 또는 시설을 제공하여 발생하는 수입과 관련되는 경비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비(이하 “수입대체경비”라 한다)에 있어 수입이 예산을 초과하거나 초과할 것이 예상되는 때에는 그 초과수입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초과수입에 직접 관련되는 경비 및 이에 수반되는 경비에 초과지출할 수 있다.

집 필

총괄 | 조용복 예산분석실장

심의 | 고기석 사업평가심의관
상지원 예산분석총괄과장
서세욱 산업예산분석과장
임종수 사회예산분석과장
박혜진 행정예산분석과장
정연수 경제산업사업평가과장
김수옥 사회행정사업평가과장
박홍엽 공공기관평가과장

작성 | 심지현 예산분석관
이강구 예산분석관
정수현 예산분석관
이은경 예산분석관
안옥진 예산분석관

지원 | 인정은 행정실무원

예산안분석시리즈 I 2018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

발간일 2017년 10월

발행처 국회예산정책처

이 책은 국회예산정책처 홈페이지(www.nabo.go.kr)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ISBN 978-89-6073-563-7 93350

© 국회예산정책처, 2017